V. 갑신정변

- 1. 갑신정변의 배경
- 2. 갑신정변의 주도세력과 외세
- 3. 갑신정변의 전개
-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V. 갑신정변

1. 갑신정변의 배경

1) 구미열강과의 외교

開化黨 인사들은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보다 외국사정에 밝았으며 국제사정에 민감하였다.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적절한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19세기 후반기 국제관계에서 널리 통행되고 있던 均勢 즉 세력균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균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번역된 국제법 서적인《萬國公法》을 통해 일찍부터 이에 대해 지식을 얻고 있었다.1) 즉 개화지식인들은 공법 중에서도 "이른바 均勢之法이란 강국들간에 세력균형을 이루어 서로 침범하지 않게 되면 弱國은 이에 의뢰하여 安寧을 얻는다"는 데에주목하고 이 균세법이야말로 약소국 조선이 당시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주위의 열강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믿고있었다.2)

개화당 요인 중 외교담당 기관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는 閔泳翊・金玉 均・洪英植은 협판으로 尹致昊는 주사로 근무하였다. 邊燧도 주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즉 그들은 외교문제에 대해 국왕에게 상주할 수도 있고 외국시 찰 등을 통해 각국 외교사절과 폭넓게 접촉할 수도 있는 자리를 점하고 있

李光麟,〈開化黨의 形成〉(《省谷論叢》3,1972;《開化黨研究》,一潮閣,1973), 46等.

²⁾ 만국공법의 수용에 대해서는 李光麟,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東亞研究》1, 西江大, 1982;《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참조.

었으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외교활동을 펼치는 데 유리하였다.

개화지식인들은 壬午軍亂 뒤 조선의 정치에 대한 청국의 간섭이 노골화되면서 조선의 독립에 위협을 가해오자 외국 특히 구미세력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의 국교수교를 갈망하고 있었다. 《朝鮮策略》이 들어온 이후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미국은 영토에 야심이 없는 공평무사한 나라이므로 맘놓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대단히 호의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런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은임오군란이일어나기 전인 1882년(고종 19) 5월 22일 李鴻章의 주선으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열강을 한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러일 양국의 한국침투를 막는다는 이홍장의 以夷制夷정책의 산물이었다.

朝美修好通商條約은 1883년 1월 미국의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소식을 일본에서 유학중에 있던 윤치호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로부터 듣고 당 시 동경에 체류중인 김옥균에게 달려가 전하였더니 김옥균은 뛸듯이 기뻐하 였으며 때마침 그 곳에 온 徐光範과 함께 바로 주일미국공사를 방문하여 사 의를 표할3) 정도로 개화당 인사들은 미국과의 국교수립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홍장은 자신의 주선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성립된 지 2주 뒤인 1882년 6월 6일 역시 이이제이정책의 하나로 조영·조독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성사시켰다.4) 그러나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이 너무 높다는 아시아주재 영국상인들의 불평으로 영국정부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독일정부에도 종용하여 비준을 거부케 하면서 조약을 개정할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한편 임오군란 뒤 일본에 파견된 박영효·김옥균 등 개화파 일행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1883년 10월 13일 동경에 도착한 이후 일본 외무성의 주선으로 주일영국공사 파아크스(Harry S. Parkes)와 가진 면담에서 그에게 청국의 간섭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청국의 파병은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³⁾ 尹致昊, 〈壬午日記〉(《開闢》속간 1호, 1934), 1883년 1월 13일.

⁴⁾ 한영수교에 대해서는 崔文衡, 〈韓英修交외 그 歷史的 意義〉(《韓英修交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4) 참조.

청국의 무력개입정책으로 급증한 청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치적 현실을 개탄하였다. 아울러 만약 영국이 조약수정의 제의를 중국을 통하지 않고 조선정부에 직접 해온다면 영국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락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즉 당시 개화파들은 구미세력을 끌어들여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에만 사로잡혀 조약의 내용이 한국에 유리한지 어떤지를 따지기에 앞서 구미제국과의 조약체결이라는 그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파아크스공사는 이 때가 바로 자국에 유리하게 조약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파아크스는 1883년 3월 고베(神戶)주재 영국영사 애스턴(William G. Aston)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약개정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종래의 관세율에서 거의 절반으로 인하된 내용으로 11월 26일 조영·조독수호 통상조약을 다시 조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4년 4월부터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애스턴을 총영사로 상주시켰으며 독일은 6월부터 영사가 주재하였다.

개화당 인사들은 미국·영국·독일뿐만 아니라 조선과 수교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공포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던 러시아·프랑스까지도 수교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고종 또한 이러한 개화당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1883년 10월 16일에 고종은 주한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

英·獨 양국은 이제 새로운 조약을 체결코자 全權委員을 조선에 파견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귀하의 가장 좋은 조언을 구하고 싶다. 나는 이 양국과의 조약이 우리 정부를 강력하게 해줄 것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러시아와 프랑스에게도 우리와 조약을 교섭하도록 미국정부가 권고해 주기 바란다(George M. McCune and John A. Harrison ed.,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pp. 53~54, No. 32.).

러시아는 이미 조미조약체결 소식을 듣고 곧 이홍장에게 알선을 부탁하였

으나 거절당한 바 있었다. 청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수교를 알선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또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다가 黃遵憲의 《조선책략》이 전해진 이래 조선에서는 영토에 야심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러시아측에서는 달라진 조선 국내의 분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교교섭에 나섰다. 1884년 6월 24일 러시아의 대표 웨베르(K. I. Waeber)가 조약체결차 내한하자 김옥균은 인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였다. 러시아는 개화당 인사뿐만 아니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 묄렌도르프(P. G. Mölendorff)와도 교섭을 벌였다. 그리하여 1884년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청의 세력강화를 위해 청에 의해서 파견된 묄렌도르프의 알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묄렌도르프는 청일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 3세력으로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러시아세력을 유치하려고 한 것이었다. 개화당 인사들은 이 러시아와의 조약체결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도 청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는 데에 보템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된 것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난 1885년 10월이었다. 이 때 웨베르가 총영사 자격으로 내한하여 비준서의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5)

프랑스는 1836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잠입한 이래 1866년의 丙寅洋 擾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쳐 천주교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에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되어 있던 나라였다. 따라서 쉽게 수교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임오군란 뒤에는 사정이 바뀌어 개화당 요인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와도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1883년 말 이래 안남문제로 청불간의 관계가 험악하여 중국은 역경에 처해 있었는데 개화당 요인들은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

⁵⁾ 李光麟,《韓國史講座》 V, 近代篇(一潮閣, 1981), 118~119\.

장하였다.6) 예컨대 윤치호가 劉大致의 교시에 따라서 고종한테 "안남문제로 프랑스와 안남 사이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며, 또한 프랑스는 청국이 망령되이 조선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조약을 맺어 청국의 기를 누르고자 크게 바라고 있다. 그런데 조선이 만약에 청국의 위협과 강압을 두려워하여 조약체결을 주저한다면 조선의 국체를 손상시키게 된다"고 상주하는 등7) 개화당 인사들은 조불조약체결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남문제로 인한 청불간의 험악한 관계, 천주교 포교문제 등으로 프랑스와의 조약은 1886년에 가서야 조인되었다.

이리하여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직전 서울에는 외국공관으로 일본·청국·미국의 공사관 그리고 영국·독일의 총영사관이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청국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청국공사관과의 접촉은 끊고 있었다. 일본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는 1883년 1월 부임한 이래 시종 개화당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가 1884년 10월 말 휴가에서 귀임한 이후에 갑자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그 동안은 개화당이 일본공사관에 접근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미국 및 영국공사관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미국공사관을 빈번히 출입하면서 푸트공사와 포크(George C. Foulk)무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은 영국과 독일보다 1년이나 앞선 1883년 5월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1883년 5월 초대 주한특명전권공사 푸트가 부임하여 조선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한다는 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밝혔다. 그리하여 고종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과의 국교수립이야말로 적어도 정치적으로 청국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의 부임을 환영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 청국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빈번히 미국공사관을 출입하면서 푸트공사와 포크무관과 접촉하였다. 푸트공사는 부임한 이래 비교적 개화당 요인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포크무관은 보빙사가 미국과 유럽을 순방할 때에 안내역을 담당하여 일

⁶⁾ 李光麟, 앞의 책(1973), 47~49쪽.

⁷⁾ 尹致昊,《尹致昊日記》1, 1884년 (양력)1월 18일(國史編纂委員會, 1973).

행과 여행을 함께 하고 한국에 와서 공사관의 무관이 된 사람으로서 한국어에도 능하였다. 그러므로 개화당 요인 가운데 보빙사의 수행원이었던 서광범·변수 등과는 8개월간 같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8) 그는 숙소를 공사관내에 두지 않고 수표교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화당 인사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또 당시 미국공사관에는 통역으로 개화당에 속해 있던 윤치호가 있었다. 따라서 개화당 요인들은 수시로 푸트공사나 포크무관을 찾아가서 협의하거나 도움을 청하였다.

아시아에 진출이 영국 등 유럽제국보다 늦었던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유지가 자기 나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비준당시인 임오군란 직후만 해도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조선에 대하여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주일본영국공사 파아크스의 끈질긴 방해공작을 물리쳤으며, 미국공사의 격을 동경이나북경주재와 동격인 특명전권공사로 높여 파격적인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조선에 대해 점차 흥미를 잃어 가고 있었다. 예컨대 1883년 10월 고종이 군사교관 파견을 요청하고 몇 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지만 1년이 경과한 뒤에야 겨우 미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방장관에게 조회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공식적 회답을 미국정부로부터 받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또 1884년 7월 재가된 외교 및 영사법에의해 미국무장관은 주한공사의 지위를 전권특명공사에서 총영사급인 辦理公使로 강등시켰던 것이다.9)

당시 미국정부가 이처럼 조선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어 있었으므로 조선 주재원들이 개화당을 지지하고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도 본국정부의 태도에 따라 그들의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푸트공사나 포크무관은 개화당에 확실한 지지세력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

⁸⁾ Ensign George C. Foulk,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the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Corea, December 4~7, 1884,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closure in No. 128(朴日根 편,《近代韓國關係英・美外交資料集》 1866~1886, 新文堂, 1984, 995季).

⁹⁾ 崔文衡, 〈한미수교와 友誼 변화〉(《제국주의시대의 列强과 韓國》, 民音社, 1990), 44~48·58~63쪽.

니었다. 그들은 우선 집권파와 개화당 양파간의 화해를 종용해 보았다. 그러나 이 두 파 사이의 대립이 극도에 달하여 도저히 화합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을 예감하였을 뿐이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푸트공사 등은 개화당의 계획을 최대한 늦추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는 김옥군에게 잠시 한성을 떠나 上海・長崎 등지를 유람하고 돌아올 것을 간곡히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함께 여 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해오기까지 하였다.

내가 평양 등지로 유람하고자 한 지가 오래였으나 미처 여가가 없었다. 지금은 비록 추운 계절이기는 하나 내가 공을 위해 춥고 더운 것을 불구하고 잠시 가서 둘러볼까 합니다. 長崎에 있는 우리 군함을 이미 일본우편선 편에 급히 인천에 來泊하도록 하였으니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와 함께 잠시 평양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金玉均,〈甲申日錄〉,《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1979, 11월 24일).

이처럼 개화당은 미국공사나 무관 등 주재원들로부터 개인적인 지지와 호의를 얻어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정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은 정변 직전까지 미국공사 등을 방문하여 극비에 속하는 정변의 계획까지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공사나 무관은 예컨대 "동지를 모으면서 조용히 시기를 관망하고 과격한 행동을 삼가야 될 것이며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도리어 개화운동에 해가 될 것"11)이라 충고하여 개화과의 정변계획을 뒤로 미루어 보고자 하였을 뿐이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애스턴 영국총영사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한국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까지 하였기 때 문에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주한공사의 격을 총영사급으로 하여 주청공사에 예속시킴으로써 청의 對韓宗主權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애스턴 역시 개화당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

¹⁰⁾ George C. Foulk, 앞의 글.

^{11) 《}尹致昊日記》1, 1884년 11월 29일.

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김옥균이 "조선 내정이 날로 위급해지니 내가 청국과 프랑스가 싸우는 틈을 타서 한 번 내정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다"고 애스턴의 의견을 묻자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¹²⁾고 하여 애스턴 역시 미국공사관측과 마찬가지로 개화당에게 계획을 뒤로 미루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개화파들은 구미열강을 끌어들여 국내에서 구미열강이 세력균형을 이룬 가운데에서 조선은 청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유지할수 있다고 믿어, 구미열강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개화당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개화당 요인들은 집권파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상에 따라 내정개혁을 하기 위해 정변을 계획하고 미국·영국등 구미열강의 세력을 이용하여 보고자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개화당은 자신들을 불신하여 냉랭하게 대하면서 방해를 일삼던 태도를 청불전쟁 이후 갑자기 바꾸고 적극적으로 접근한 다케조에공사 등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2) 차관교섭

임오군란 직후 '國無一月之儲'^[3]라는 金弘集의 탄식에서 보듯이 1880년대 조선의 재정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국가 의 재정지출은 날로 늘어났으나 수입을 증대시킬 만한 재원이 별로 없어 정 부에서는 그 미봉책으로 화폐를 찍어 내는 것을 일삼고 있었다.^[4] 개화당 요 인들은 이러한 국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 보려 고 하였다.^[5] 물론 여기에는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도 관련이

¹²⁾ 金玉均、〈甲申日錄〉、11월 24일(《金玉均全集》、亞細亞文化社版、1979).

^{13)《}清季中日韓關係史料》3, 光緒 10년 9월 8일(臺北;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72), 910쪽.

¹⁴⁾ 당오전 주조에 관해 元裕漢, 〈當五錢攷〉(《歷史學報》35·36, 1967) 참조.

¹⁵⁾ 김옥균의 대일차관교섭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이 참조된다. 李光麟, 앞의 책(1973), 57~65쪽.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이 차관의 도입을 주장하자 고종도 이에 동조하였다.

개화당 인사들은 일본에서 쉽게 차관을 얻어 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임오군란 직전 1882년(고종 19) 3월 김옥균이 첫 번째 일본시찰 때부터 차관 교섭이 있었으나16) 일본차관이 처음 도입되는 것은 임오군란 직후 김옥균이 두 번째 파견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임오군란 뒤 1882년 10월 박영효를 정사 로 하는 수신사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김옥균도 수행하여 이 때 일 본정부의 주선으로 일본의 국책외환은행인 橫濱正金銀行으로부터 17만 원의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차관의 조건이었다. 17만 원에 대한 이자는 년 8分이고, 그 상환조건은 2년 거치 후 10년 동안에 매년 원금 1만 7천 원씩 상환키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약정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산해관의 수입금과 함경도 端川金鑛에서 공동으로 채굴하여 거두어들인 금으로 상환케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금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조선관리와 공동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조건도 붙여 놓았다.17) 이 것은 조선해관의 자주권과 금광채굴권을 침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자만 보더라도 갑신정변 뒤 청국정부와 체결한 전신공채차관이 무이자였고 淸商 同順泰로부터의 차관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월 6리였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김옥균 등은 그 조건이 불리함을 알고 있었으나 사절 일행의 여비도 궁색한 형편인데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려면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여유를 갖고 교섭을 벌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이러한 김옥균 등의 사정을 이용하여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을 것이다. 더욱이 차관 17만 원 중 제물포조약에서 약정한 배상금의 제1회 분할금조로 5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넘겨받은 실제 금액은 12만 원이었다. 그리하여 17만원차관은 수신사절의 경비,《漢城旬報》의 간행비, 당시 50여 명에 달했던 일본유학생의교육비 등에 충당되었다.18) 따라서 이 차관은 개화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적

趙璣濬,《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고려대 출판부, 1973), 142쪽

^{16) 《}朝鮮新報》, 1882년 3월 25일.

¹⁷⁾ 日本外務省、《日本外交文書》15, No. 157, 明治 15년 12월 18일, 287쪽.

인 사업에 사용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수신사 박영효 등은 3개월간 동경에 체류한 뒤 귀국하였다. 그러나 김옥 균과 서광범은 계속 남아 일본정부 요인들과 접촉하면서 또 다른 차관의 도 입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결과 조선정부의 국채위임장만 있으면 차관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다음해 3월에 일단 귀국하였다.

당시의 국내재정은 여전히 궁핍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므로 집권층인 민씨측에서는 協辦交涉通商事務 묄렌도르프의 조언에 따라 當五錢 발행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김옥균은 당오전과 같은 惡貨의 주조는 국가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물가고로 국민생활에 큰 해독을 주게 된다고 반대하면서 차관도입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개화당 요인들이 내세우는 차관도입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에또 17만원차관의 경우처럼 불리한 조건으로 차관이 도입된다면 도리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한편으로는 민씨측의 요구대로 3월 16일 당오전의 주조령을 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옥균에게 300만 원 국채모집의 위임장을 부여하여 일본에다시 파견하였다.

김옥균이 국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883년 6월 이었다. 그로서는 세 번째의 일본방문이었다. 그의 사명인 300만 원의 국채 모집은 꼭 성공해야만 하였다. 그만한 돈을 끌어들인다면 개화당 요인들은 국왕으로부터 확고한 신임을 얻어 정부내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계획해 온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마련되기 때문이었다.

김옥균은 일본에 가기 전인 1883년 4월 18일 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로 임명되었다.¹⁹⁾ 당시 울릉도·제주도 지역에는 일인들이 난입하여 벌목과 漁 採를 일삼고 있어서 일본측에 여러 차례 항의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18)《}漢城旬報》, 개국 492년 11월 21일, 〈駐日生徒〉. 李光麟, 〈開化初期 韓國人의 日本留學〉(《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54쪽 참조.

¹⁹⁾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겸관포경사로 활동한 데에 대해서는 李光麟,〈金玉均의「東南諸島開拓使 兼 管捕鯨事」任命에 대하여〉(위의 책) 참조.

는 17세기 말 이래 網取法과 擲鉢法 등의 기술로 고래잡이가 성하였는데 개항 이후에는 고래가 많이 출몰하는 조선해안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을 파악한 김옥균은 외국인의 투자로 그것을 개발해 볼 생각도 했지만, 그것을 담보로 하면 거액의 외채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일본측이 차관을 제공할 때 필시 담보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이 때를 대비해서 담보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이나 포경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국왕에게 이 실정을 상주하였고 한편 국왕은 김옥균에게 차관을 교섭할 수 있는 실권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라는 벼슬을 내렸던 것이다.

김옥균은 白春培와 卓挺埴을 수원으로 李允杲를 從人으로 그리고 일인 가이군지(甲斐軍治)를 고용하여 일본에 건너갔다. 그러나 곧 일본에서 30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한다는 것이 용이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김옥균의 주장처럼 그 동안에 일본정부의 태도가 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임오군란 이후 부임한 일본공사 다케조에는 부임 초 김옥균의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고 조선정계에서 개화당의 지위가 무력하다고 보아 이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개화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노우에(井上馨) 외무경에게 보고함으로써 차관교섭을 방해하여 결국 차관도입은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당시의 일본정부나 민간재계에서 300만 원이란 거액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액수는 당시 일본의 1년간 조세수입의 22분의 1에 해당되었고, 또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인플레이션정책을 감행하고 있었으며, 한편 민간의 기업체들은 정부의 절대적인 후원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정부나 민간에게는 그만한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부터의 300만 원 차관도입을 기대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자 모오스(James R. Morse)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모색하였다. 모오스가 사장으로 있는 미국무역상사(American Trading Company)는 한때 동양에서 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 중 가장 규모가 컸었다. 또한 모오스는 한국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옥균과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진바 있었다.

모오스는 김옥균의 제의를 받아들여 차관교섭을 위해 직접 뉴욕으로 갔다. 김옥균은 푸트공사와 주일미국공사 빙햄(John A. Bingham)의 측면 지원도 얻어내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김옥균은 직접 미국으로 가서 교섭을 벌여 볼 생각까지도 하였으나 푸트공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미국행을 단념하였다. 그 뒤 일본 第一銀行의 시부자와 에이치(澁澤榮一)와 교섭하여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도 대부를 받아 보려고 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역시 실패하였다.

김옥균이 세 번째 도일하여 10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차관을 얻어 보려던 노력은 전부 수포로 돌아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이 되었다. 이때 그는 귀국하기에 앞서 자신의 심정을 후쿠자와 유키치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자금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빈손으로 귀국하면 집권 사대당은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것임을 알고 있다. 어쨌든 우리 개화당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개혁안도 없어질 것이며 조선은 청국의 영구적 속국이 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우리 당과 사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택할 지도 모르겠다(石河幹明,《福澤諭吉傳》3, 岩波書店, 1943, 302쪽).

김옥균은 1883년 6월에 서울을 떠나 만 10개월간 동경에 머무르고, 다음해 1884년 5월 2일 제물포에 도착하여 다음날 입경하였다. 예기했던 차관도입이 실패함으로써 정치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개화당의 개화정책 추진과 그들의 정치적 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집권파와의 대립 속에서 개화파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위기의식은 커져만 갔다.

3) 집권파와의 대립과 위기의식

강화도조약체결 이후 조선에서는 일본의 세력침투가 켜져 독점적 지위가 구축되어 가는 반면 청국은 전통적인 종주국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어 갔다. 임오군란은 청국으로서는 실추된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였 다. 군란이 일어나자 청국은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세력을 침투시켰다. 청국의 계획된 무력개입정책과 그들이 대원군을 유인하여 강제 납치한 사건으로 임오군란이 일단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고종은 그 해 9월 趙寧夏・金弘集・魚允中 등 陳奏使 일행을 청국에, 濟物補條約에 따라 다음달에 박영효・김옥 균・서광범・민영익 등 개화당으로 구성된 修信使 일행을 일본에 각각 파견하였다. 이들 양파는 혼미한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를 수습하려는 태도와 방법만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양파간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20)

조영하 등 진주사 일행은 대원군의 납치와 관련하여 청나라 조정에 그의석방을 청원하는 본래의 임무를 관철하기보다 오히려 馬建忠이 제의한 차관도입문제와 선후6조를 협의하는 등, 양국간의 기존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친청책을 강화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청국의 대조선간섭정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자초한데 반하여, 박영효·김옥균·서광범 등 개화파는 도일할 때 처음으로 국기를 사용하여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과시하고청군의 조선주둔이 국체와 독립국가의 면모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증가된 청의 세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협력이나 구미세력을이용하여 자주권을 회복하여 중단된 개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대파 조영하 등은 9월 중순부터 그들 나름대로 천진에서 이홍장과의 몇 차례 회담에 의한 교섭 끝에 외국인 묄렌도르프을 고문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조선의 금광·세관 및 홍삼수입을 담보로 연리 8리에 12년 기한내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50만 량 문은차관이란 재정적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때 진주사 일행인 조영하·김홍집·어윤중과 周馥·마건 충 등 청국대표 사이에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며, 조선내에서 청국이 종주국으로서의 특권을 명문화한〈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함으로써 조선내에서 열국을 제치고 청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정치·군사·경제 등 조선 내정에 대한 청국의 적극적인 간섭

²⁰⁾ 개화당의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李光麟, 앞의 책(1973), 140~146쪽 참조.

이 있게 되었다. 즉 군사는 吳長慶 휘하의 袁世凱 등이, 외교·재정상의 사항은 馬建常·묄렌도르프를 통하여 조선의 전권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권파 관료들의 외교적 교섭행위는 분명히 청국이 조선의 정치적·경제적 자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속방정책을 제도화할 수있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개화당의 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일본·미국 양국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1880년 전반기에는 閔台鎬를 위시한 민씨들, 그리고 이들에 밀착되어 있던 尹泰駿・韓圭稷・李祖淵 등이 정계를 좌우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급급하였고, 그리하여 임오군란 뒤 청군을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룩해보려는 개화당의 이상과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개화당 요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집권파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였다. 차츰 상호간에 불신과 대립이 날카로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불신과 대립은 1881년경부터 나타났지만 1883・84년에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883년 4월 한성판윤 박영효가 광주유수로 좌천된 것, 그리고 6개월 만에 광주유수직에서도 물러나야만 되었던 일, 또 화폐주조문제를 둘러싼 의견충돌등의 예는 당시의 실정을 말해준다

개화당 인사들은 집권파 요인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윤치호일기》에서 찾아보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날 밤 入侍하여 들으니 李左佞·尹右狐·左贊姦 및 金輔國이 淸人 張□□ 와 회동하여 30만원을 借金한다고 한다(《尹致昊日記》1, 1883년 11월 2일).

李祖淵을 아첨꾼, 尹泰駿을 여우, 좌찬성 민태호는 간신이라 부르면서 이들이 고종의 주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통탄을 하였다. 민영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음흉하고 간사한 늙은 간신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민씨의 마음에는 음흉하고 간사하고 편벽된 것으로 가득 차서 일찍이 나라

의 이해에는 관심이 없음을 가히 알겠다(《尹致昊日記》1, 1884년 1월 1일).

老奸하는 바는 남이 예측하기 어렵다. 도시 利計가 배에 가득차서 국사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尹致昊日記》1, 1884년 5월 12일).

집권파와 개화파간의 불신과 대립은 특히 민영익이 報聘使의 정사로 미국과 유럽을 遊歷하고 귀국한 뒤로 더욱 격화되었다. 민비의 조카로 1877년 과거에 급제한 뒤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왕과 왕비가 그의 말이라면 듣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의 집에는 항상 벼슬하려는 손님들로 들끓었다고!)고 할 만큼 당대의 세도가였던 그를 김옥균 등은 개화당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그는 개화에 열심이었으므로 개화당으로서는 이러한인물을 포섭하였다는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민영익은 미국을 다녀온 뒤 개화당에서 이탈하고 집권파에 가담하여 개화당과 상반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대립하게 되었다. 그가 돌아온 것은 1884년 5월 말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미국공사관 무관 포크는 갑신정변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놓았다.

1884년 9월경에 민영익은 완전히 개화당과 손을 끊었다. 그의 동료는 청국인과 강력한 친청당의 멤버들뿐이었다. 그는 낮 동안에는 서구인들을 접견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때때로 그들을 면전에서 경멸하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George C. Foulk, 앞의 글, 996쪽).

즉 민영익이 개화당과 손을 끊고 완전히 집권파로 넘어간 것은 9월경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가 일본의 문명진보의 수준을 아직 낮다고 보아 그 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²²⁾ 민씨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이해와 상반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을 것이다.²³⁾ 이후로 민영익은 개화당에 있을 때와는 달리 조선의 독립과 개화에

²¹⁾ 黄 玹、《梅泉野錄》 상(國史編纂委員會, 1955), 43쪽,

^{22) 《}東京日日新聞》,明治 18년(1885) 1월 21일(《新聞集成明治編年史》6,財政經濟學會,1926,29等).

²³⁾ 李光麟, 〈甲申政變에 대한 一考察〉(앞의 책, 1973), 142쪽.

대해 회의를 품고 개화당에 대해 적대되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1884년 8월 親軍營制의 실시와 더불어 한규직이 전영사, 이조연이 좌영사, 윤태준이 후영사가 되는 동시에 민영익은 우영사로 임명되었다. 곧 이어 그 는 協辦軍國事務도 겸임하게 되었다. 민영익은 군대훈련을 위해 청국군 장교 를 부르는 조치를 취하는 등 청국의 힘을 빌리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 냈다.²⁴⁾

이미 고종은 1883년 10월 16일 푸트 미국공사를 통해서 군사교관을 미국에 요청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이 전에 대하여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들이 오게 되면 우선 徐載弼 등 사관생도들을 그들밑에서 좀더 훈련을 받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상사를 통해 4,000정의 미국제 소총도 구입해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영토에 관심이 없는 공평무사한 나라 미국에서 군사교관을 초빙하여 일본에서 귀국한 사관생도들을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군대를 교련시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개화당에서는 조선이 청의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영익이 미국군사교관 대신에 청국교관을 고빙한다는 것은 개화당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포크무관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본국으로 보냈다.

얼마 있지 않아 민영익은 조선군대 훈련을 위해 청국으로부터 5명의 교관을 부르게 되었다 이 조치는 개화당 요인들을 크게 자극하였고 한편 14명의 사관생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니, 그 까닭은 청국군 교관을 고빙하게 됨으로써 자리를 유지할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규직)장군의 군영에 채용된 3명을 제외하고 사관생도들은 군에서 떨려나 개화당 인사들에 의하여 반자선책으로 홍영식이 책임자로 있는 우정국에 옮겨져 일을 하게 되었다(George C. Foulk, 앞의 글).

즉 민영익이 청국교관을 초빙함으로써 김옥균의 알선으로 일본의 戶山學校에서 수학하고 1884년 4월 귀국한 서재필 등 14명의 사관생도들 대부분이

^{24) 《}尹致昊日記》1, 1884년 8월 26일.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84년 8월 尹雄烈이 상주한 사관학교 설립계획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집권파와 이들과 결탁한 서울주둔청국군의 지휘관 袁世凱 등 청의 손아귀에 군사권을 완전히 넘겨주었으므로개화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민영익에 이어서 또 1884년 10월에는 윤치호가 "우리 개화당 幹事重位의한 사람이다"25)라고 할 정도로 개화당의 주요인사였던 내시 柳在賢이 개화당에서 이탈하여 집권파에 가담하였다. 이것 또한 개화당으로서는 큰 타격이었다.26)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국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개화당에 유리하게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또 국왕을 둘러싸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들을 알아낼 수도 있어 개화당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처럼 국왕의 측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던 인물이반대파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개화당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이었다. 또 유재현은 개화당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개화당의 불안은 가증되었다. 그러므로 개화당은 행동대로 하여금 정변을 일으키자마자 유재현을 景祐宮에서 무참히 살해해 버릴 만큼 유재현의 배반은 개화당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국내의 정치상황은 갈수록 개화당에게 불리해져 갔다. 개화당들이 모여서 한탄하기를 "지금의 국사를 돌아보니 벼랑 끝에 걸려있다. 奸臣이 권력을 농간하고 財用을 탕진하면서 개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화의 실효가 없다…실로 개화당은 몇 사람 안 된다. 모두가 頑固黨이니 개화의 실효가 언제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27)고 할 정도로 집권파들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정권을 주도하는 반면에 개화당의 세력은 약해지고 이들에 의한 개화정책의 추진은 갈수록 힘들어져 갔던 것이다. 개화당은 이미 언제 집권파에 의해서 제거당할지 모른다²⁸⁾는 위기감과 아울러 조선의 장래도 더없이 암담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25) 《}尹致昊日記》 1. 1884년 9월 17일.

²⁶⁾ 李光麟, 앞의 책(1973), 144~145쪽.

^{27)《}推案及鞫案》324型,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亞細亞文化社版 30型,1978,585 等).

^{28) 《}尹致昊日記》1, 1884년 6월 18일.

개화당이 자신들의 처지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도 이처럼 암담하게 느껴 졌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홍영식은 미 국공사 푸트에게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등잔불이 있어서 불이 심히 밝은데 밖에 있는 물건이 가리고 있어서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비출 수 없어 밖의 물건은 밝은 빛을 받지 못해서 사람이 그 가린 것을 제거하고 그 빛을 방출하려고 시도하나, 그 가리고 있는 물건이 너무 뜨거워 순순히 제거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그 가린 것을 깨뜨려 제거한 즉 사방으로 그 밝음이 전해지는 것을 곁에서 본다면 이것이 유쾌한 일이겠는가. 도리어 망령된 일이 되겠는가(《尹致昊日記》1, 1884년 11월 19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화당은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종 주위의 집권파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 고 결국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이다.

〈尹炳喜〉

2. 갑신정변의 주도세력

갑신정변은 1884년(고종 21) 12월 4일에 일어났다. 이 때 신정권이 수립되었고 정강도 공포되었으나 청국 군대의 출병으로 '3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피살되었거나 체포되어 처형당하였으며 그 일부는 일본으로 망명하여 목숨을 부지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규합해서 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는가.1)

¹⁾ 이 글의 작성에는 아래의 글이 참고되었다.

李光麟、〈開化黨의 形成〉(《省谷論叢》3.1972;《開化黨研究》.一潮閣.1973).

^{----· (}甲申政變에 대한 一考察)(《開化黨硏究》, 一潮閣, 1973).

^{——,〈}甲申政變과 褓負商〉(《東方學志》49, 1985;《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鄭玉子、〈開化派外 甲申政變〉(《國史館論叢》14. 國史編纂委員會, 1990).

1) 정변의 핵심세력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정변을 계획하고 주도해 나간 핵심인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정변에 연루되어 체포당한 李允相의 국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9월부터 玉均・英植・泳孝・光範・載弼이 가끔 모임을 가졌으며 때로는 劉鴻基의 집에서 모였다…광범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竹洞行監과 사이가 나빠 항상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옥균・영효・영식과 더불어 매번 의논하여 함께 개화를 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죽동부자를 제거한 연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하고 또 늘 옥균가에 가서 劉大痴(致)・朴怡順・邊樹와 항상 일을 의논하였다(〈李允相鞫案〉²).

9월경부터 김옥균을 비롯하여 박영효·홍영식·서광범·서재필 등이 유대 치·박제경·변수 등과 함께 개화를 하자는 의논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태호·민영익 부자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화당 요인들은 1884년 4월 말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을 시찰하고 유럽을 거쳐 귀국한 뒤 개화당 요인들과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완전히 개화당에서 이탈하여 집권파로 넘어간 9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정변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甲申日錄〉에도 이들이 자주 회동한 기록이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이 정변을 주도해 갔던 핵심인물이었던 것이다. 이 핵심인물 가운데 양반출신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金玉均(1851~1894)은 金炳台의 아들로 태어나서 襄陽府使 金炳基의 양자가되었으며 1872년(고종 9)에 21세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司憲府의 持平, 弘文館의 校理 등을 거쳐 統理機務衙門의 參議交涉通商事務, 東南諸島開拓使棄管捕鯨事를 거쳐서 吏曹參議에 올랐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2)《}推案及鞫案》324책,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亞細亞文化社版 30책, 1978), 이 국안에는 이희정 이외에 1884년 12월에 체포된 金鳳均・申重模・李昌奎・李允相・徐載昌・李點乭・車弘植・崔英植・南興喆・高興宗 등 11인의 국안이 개인별로 들어 있다. 따라서 개인별 국안을 〈李允相鞫案〉등의 형식으로 표기하겠다.

까지 1882년 3월과 10월, 1883년 6월 등 모두 3차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주요 목적은 차관교섭이었다.³⁾

김옥균은 박영효로부터 "金玉均의 長處는 交遊요. 교유가 참 능하고, 글 잘하고, 말 잘하고, 詩文書畵 다 잘하오"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또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유대치가 국가개혁 등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출중한 인물임을 간과하고 특별히 지도하였던 젊은이들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동지를 규합하고 거사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즉 갑신정변의 전과 정을 전면에 나서서 이끌어간 사람은 김옥균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劉大致는…北村방면에 교제를 넓혀 노소를 불문하고 인물을 물색하고 동지를 모으고 있었다. 때마침 청년 金玉均과 만나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청년의 비범함을 알고 사상・인격・학재가 뛰어나게 출중하여 장래 반드시 대사를 계획함에 족한 인물임을 통찰하고…세계 각국의 지리・역사 번역본과 기타 신간서적을 모두 김옥균에게 주어 읽도록 하였다. 또한 열심히 천하의 대세를 설명하고 조선개조의 긴박성을 역설하였다(古筠記念會 編,《金玉均傳》, 東京, 1944, 49쪽).

洪英植(1855~1884)은 영의정 洪淳穆의 아들이었다. 1873년 19세로 식년문 과에 급제하였고 명문가의 출신이었으므로 출세가 빨랐다. 1881년에는 紳士 遊覽團의 朝土로 일본을 시찰하였고, 1883년 7월부터 12월까지 報聘使의 부사로 40여 일 동안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 뒤부터 개화당 요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 해에 兵曹參判으로 郵征局 總辦이 되어 정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국 군대가 궁궐로 들어왔을 때에도 끝까지 고종을 호종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朴泳孝(1861~1939)는 朴元陽의 아들로 1871년 11세로 永惠翁主와 결혼하여 철종의 부마가 됨으로써 錦陵尉에 올랐다. 判義禁府事를 거쳐 1882년 修信使 로 서광범과 함께 일본에 다녀와서 漢城府 判尹이 되었다. 1883년 4월 廣州

³⁾ 앞의 장 참조.

⁴⁾ 李光洙,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東光》, 1931;《李光洙全集》17, 三中堂, 1962).

府 留守가 되어 개화당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南漢教鍊兵隊를 조직하여 병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권파 민씨의 방해 등으로 인하여 10월에 남한교련병대는 親軍前營으로 이속되고 말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행동대원의 다수를 점하였다.

徐光範(1859~1897)⁵⁾은 조상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출신이었다. 참 판 徐相翊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1880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待教・副修撰을 거쳐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가서 김옥균과함께 6개월간 체류하고 귀국하였다. 1883년 7월 보빙사를 파견하였을 때 서광범은 이 사절의 종사관이 되어 미국시찰과 유럽을 거쳐 11개월 남짓 세계를 일주하고 귀국하였다. 돌아와서 그는 승정원 동부승지와 참의군국사무를 맡았다.

徐載弼(1864~1951)6)은 개화파 핵심 중에서 가장 연소하였다. 부친 徐光彦은 별다른 벼슬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었다. 서재필은 7촌 아저씨 徐光夏의 양자로 가서 도승지·전라도관찰사·탁지부대신 등을 지낸 외숙 金聲根의 집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1882년 20세의 최연소자로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883년 5월 일본으로 건너가 6개월 정도 慶應義塾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동행했던 17명 중 14명과 함께 동경 陸軍戶山學校에 들어갔다. 이 곳에서 신식 군사기술을 배우고 1884년 4월 말 서울에 돌아와 1884년 6월 操鍊局의 士官長으로 등용되었다. 갑신정변 당시 행동대의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7)

정변이 실패한 뒤 5賊으로 규정되어 체포령이 내려진 위에 열거한 5명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상소가 있었다.

저 영식·영효·옥균·광범·재필 등은 모두 簪纓之裔로 아직 털도 나지

⁵⁾ 金源模,〈徐光範 研究〉(《東洋學》15, 檀國大, 1985) 참조.

⁶⁾ 서재필에 대해서는 李光麟,〈徐載弼의 開化思想〉(《東方學志》18, 1978;《韓國開化思想研究》, 1979, 一潮閣) 참조.

⁷⁾ 李光麟, 위의 글, 96~103쪽.

^{8)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10월 22일.

않았는데 家勢에 힘입어 일찍이 仙籍에 올랐다(《承政院日記》, 고종 21년 12월 16일).

홍영식·박영효·김옥균·서광범·서재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두 명문가의 자제였다. 또한 부마였던 박영효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일찍이 문과에급제하여 관계에 나아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정변이일어난 1884년 갑신년에 김옥균은 34살, 홍영식은 30살, 박영효는 24살, 서광범은 26살, 서재필은 20살의 젊은 나이였다. 따라서 이들은 명문가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은 아니었지만 모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던 인물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끝까지 고종을 호종하다가 죽음을 당한 홍영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단 목숨은 부지하였다.

이들 이외에 앙반출신의 개화사상가로서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으로는 다음의 두 사람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정변 직후 체포되어 知情不告罪로 처형당한 徐載昌(19살)이 있다. 그는 서재필의 동생으로 1883년 6월 남홍철과 함께 김옥균을 수행하고 일본에 갔다가 요코하마에 머물면서 양잠과 영어를 배우고 돌아와서 개화당에 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정변 직후 貫鐵橋 부근에서 민중들에 의해 살해된 吳鑑이 있었다.9) 그는 南原幼學으로서 서양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던 경찰과 재판에 관한 제도를 채택할 것을 상소한 바 있었다.10) 그러므로 그는 양반출신의 개화사상가로서 정변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핵심에 서 있던 인물 가운데에는 김옥균 등 양반출신들 이외에 앞서의 〈이윤상국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과 함께 정변의계획을 논의하였던 유대치·박제경·변수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중인출신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劉大致(1831~1884?)11)는 중인의 대표적인 직업의 하나인 漢醫였다. 그의 집은 중인층의 거주지역인 서울의 광교부근 관철동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⁹⁾ 古筠記念會 編,《金玉均傳》, 420\.

^{10)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7월 24일.

¹¹⁾ 유대치에 대해서는 李光麟, 〈숨은 開化思想家 劉大致〉(앞의 책, 1973) 참조.

다음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식한 학자이자 폭넓은 행동가였고 개화당의 지도자로서, 막후에서 김옥균 등 개화당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변의 계획에도 깊숙이 간여하고 있었다.

一白衣로 시정에 은거하여《海國圖志》·《瀛環志略》등으로써 세계의 사정을 卜察하면서 뜻을 내정의 국면 전환에 두고 가만히 귀족 중의 英俊을 규합하여 방략을 가르치고 志氣를 고무하여 준 이가 있으니 당시 知人의 사이에 白衣政丞의 이름을 얻은 劉大致가 그라. 박영효·김옥균·홍영식·서광범과 귀족이아닌 이로 白春培·鄭秉夏 등은 다 大致 문하의 俊髦로…박영효·김옥균 등이연래로 일본교섭의 선두에 선 것은 실상 대치의 指劃 중에서 나온 것이요. 세상이 開化黨으로 지목하는 이는 대개 대치의 문인을 이름하였다(崔南善,《古事通》, 三中堂, 1943, 218쪽).

朴齊絅12)은 유대치의 제자였다. 그는 일찍이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으며 일본인들과 친분도 두터웠던 것 같다. 임오군란 뒤 정사 박영효가 이끄는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김옥균・민영익・서광범・유혁로 등과 함께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는 《近世朝鮮政鑑》의 필자이기도 하다. 정변 당시 별궁을 방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정변중에 淸溪川 水標橋上에서 피살되었다.13)

邊燧(1861~1891)¹⁴⁾는 조선 중기로부터 역관이나 의관에 종사하였던 중인집 안 출신이었다. 즉 조부와 부친은 모두 역과시험에 합격하여 역관으로 활약하였다. 변수는 광교 부근의 중인층이 秋琴 姜瑋를 맹주로 하여 맺은 吟社인 六橋詩社의 동인이었다. 육교 즉 광교 부근에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역관・의원 등 기술직의 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변수의 부친 邊晉桓도 그 중의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를 잘하여 그의 집 서재인 海棠樓는 육교시사의 중심처로서 강위를 비롯하여 당대의 이름높은 시인들이 자주 찾아와 같이 시를 짓던 곳이었다.¹⁵⁾ 강위는 또 변수의 집에 머무르면서 5년 동안 변수를 가르

¹²⁾ 박제경에 대해서는 李光麟, 〈「近世朝鮮政鑑」에 대한 몇 가지 問題〉(《改訂版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9), 253~258쪽 참조,

^{13)《}金玉均傳》, 420쪽.

¹⁴⁾ 변수에 대해서는 李光麟、〈韓國 最初의 美國大學 卒業生 邊燧〉(《新東亞》, 1982 년 10월호 ; 앞의 책, 1986) 참조.

쳐 주기도 하였다.

그 후 변수는 김옥균·서광범과 친교를 맺고 1882년 3월 김옥균이 첫 번째로 일본을 시찰할 때 그를 수행하여 김옥균의 권유에 의해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학교에서 양잠술과 화학을 배웠다. 그 해 7월 즉 학업을 시작한지 4개월 뒤 임오군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1883년 5월에는 보빙사의 수원으로 가게 되어 미국시찰과 유럽을 거쳐 10여 개월 만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1884년 7월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外衙門)의 주사로 임명되었다가 바로 軍國事務衙門(內衙門)의주사로 자리를 옮겼다. 변수가 이 자리에 임용되어 국왕을 매우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거사 당시에는 국왕 및 궐내의 사정을 정탐하는임무를 수행하였다. 정변이 실패한 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런데〈갑신일록〉에 개화당이 정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회동하고 있는 인물로 유혁로가 보인다. 그는 그 때 오위장이었으므로 중인계층 출신이었다. 그도 정변의 계획 때부터 참여하였으며 거사할 때 연락·정탐·통신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부친인 柳相五는 개화당 초기부터 박영효·서광범과 동지 중의 동지¹⁶⁾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으로 정변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어 옥사하였다.¹⁷⁾ 또 오위장이었던 梁鴻在가 있었다. 그는 민영익의 심복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김옥균 등과 뜻을 같이하여 민영익의 동정을 김옥균에게 알려주던 인물이었다.¹⁸⁾

갑신정변이 일어날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정변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묄렌도르프가 '김옥균의 黨'¹⁹⁾이라 칭한 白春培가 있었다. 그는 김옥균이 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로 임명되자 그의 종사관으로 몇차례 울릉도를 왕래한 일이 있었으며 김옥균이 일본으로 300만 원 차관교섭

¹⁵⁾ 鄭玉子、〈詩社를 통해서 본 朝鮮末期 中人層〉(《韓祐劤博士停年紀念論叢》,知 識産業社, 1981), 510零

¹⁶⁾ 閔泰瑗, 《甲申政變과 金玉均》(國際文化協會, 1947), 37쪽.

¹⁷⁾ 柳赫魯, 〈甲申年 亡命에 對해서 생각나는 것〉(三城景明, 《韓末을 말한다》, 朝 鮮研究社, 1930), 14~17쪽.

李光麟, 앞의 책(1973), 16쪽.

^{18) 〈}甲申日錄〉, 11월 18일.

¹⁹⁾ 日本外務省、《日本外交文書》18, No. 112, 1885년 7월 7일, 機密 96호.

을 하러 갔을 때 수행한 인물이다. 그는 갑신정변 직후 일본으로 망명하는 김옥균 일행을 고베(神戶)에서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기도 하였다. 그 후 1885년 8월에 김옥균의 밀령을 받고 정보수집차 국내에 잡입하였다가 체포되어 희생된 인물이다.²⁰⁾ 백춘배는 육교시사의 동인으로 해당루 9君子에 끼어있던 인물이며 강위의 4友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²¹⁾ 뿐만아니라 귀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유대치 문하의 俊髦로 꼽히던 중인계층에서도 출중한 인물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화당의 지도자로서 막후에서 정변의 계획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하였던 유대치를 비롯하여 박제경·변수·유혁로·양홍재·백춘배 등 중인출신들도 적어도 정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정변을 주도해 나간 개화당의 중요한 인물에 넣을 수 있겠다.

2) 정변의 행동대원

정변을 일으키는 데에는 전면에 나서서 거사를 이끌어 가는 행동대원들이 있다. 그러면 갑신정변에는 행동대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거사 당일인 1884년 12월 4일 밤 국왕을 景祐宮으로 옮겨 놓고 그 正殿을 중심으로 행동대들이 다음과 같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영 소대장 尹景(啓)完은 당직 병졸을 거느리고 殿庭 안팎에 늘어서 있고 徐載弼은 사관생도 鄭蘭教·朴應學·鄭行徵·林殷明·申重模·尹泳觀·李圭宅(完)·河應善·李秉虎·申應熙·李建英·鄭鍾振·白(樂)雲 등 13인을 거느리고 殿上에 시립하고, 李寅鐘·李昌奎·李奎禎(喜貞)은 李殷鑑(種)·黃龍澤·金鳳均·尹景純·崔殷童(恩同)·高永錫·車弘植을 거느리고 殿門 밖에 시립하였으니…(〈甲申日錄〉, 12월 4일).

정전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던 행동대 가운데 국왕에 가장 가까이 전상에 시립하여 있었던 사람들은 서재필을 비롯하여 14명의 사관생도들이었다.

^{20)《}舊韓國外交文書》1, 日案 1, No. 621附 金玉均隨員白春培供辭(高麗大 亞細亞 問題研究所, 1965), 298쪽.

²¹⁾ 李光麟, 〈姜瑋의 學問과 交友關係〉(앞의 책, 1979).

이 14명의 사관생도 가운데 박응학·정행정·윤영관·하응선·이병호·이건 영·백낙운 등 7명은 청군의 공격을 받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국왕 을 호종하다가 피살되었다. 서재필·이규완·정난교·신응희·임은명 등은 일본에 망명함으로써 목숨만은 건졌다. 이들 가운데 체포되어 처형된 사람은 신중모 단 한 사람이었다.²²⁾

이 사관생도들은 1883년 5월에 박영효가 신문을 발간해 보고자 초청하였던 우시바 다쿠조(牛場卓藏)와 미쓰오 미요타로(松尾三代太郎)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할 때 따라서 유학을 갔던 17명 중에 14명이다. 이들은 처음 6개월 정도는 후쿠자와가 경영하는 慶應義塾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그 해 10월 3일 陸軍戶山學校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정규 사관학교가 아니라 하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이들은 1884년 5월에 졸업하고 7월 말에 귀국하였다. 23)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일본의 사관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었을까. 당시 문과에 급제하여 校書館의 副正字의 벼슬을 하고 있었던 서재필은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에게 제일 강한 인상을 끼친 이는 김옥균이었다…하루는 그가 나에게 國防을 충실히 하자면 정예한 군대 밖에 없는데 현하 우리의 급무로 그 右에 出할때 무엇이냐 하며 日本으로 건너가 무예를 배우라고 권하였다(徐載弼,《回顧甲申政變》(閔泰瑗, 앞의 책, 부록, 84쪽).

즉 서재필은 국방을 충실히 하는 데에는 정예한 군대밖에는 없으므로 일 본으로 건너가 무예를 배우라는 김옥균의 권고에 의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²²⁾ 정종진에 대해서는 단지〈甲申日錄〉에 정변이 일어난 날 경우궁 정전에 시립하였다는 14명의 사관생도 중 그 이름이 들어 있을 뿐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망명한 자, 피살된 자, 체포된 자, 체포령이 내린 자, 1908년 이후 정변으로 희생된 자들에 대한 追贈이 있을 때 등 어느 기록에서도 그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정변에 참여하였다면 이 기록들 가운데에서 그이름을 적어도 한 번은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종진이 과연 갑신정 변에 참여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1972, 252쪽)에 보면 1865년생으로 갑오경장 이전의 경력은 생략된 채 그이후 學部・軍部・武官學校의 主事를 역임한 정종진이 있는데 동일인인지 모르겠다.

²³⁾ 李光麟, 〈開化初期 韓國人의 日本留學〉(앞의 책, 1986), 53쪽.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중모는 유길준의 권고에 의해서 일본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²⁴⁾ 이규완의 경우는 자격이 미달하였지만 박영효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선발시험관이었던 박영효에게 강청하여 그의 주선에 의해서 가까스로 이 유학생 일행에 끼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몇 사람의 예로 미루어 보아 이 일본유학생들 중 다수는 유학생으로 선발되기 이전부터 개화당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서 일본유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규완을 제외하고는 한문의 실력과 소양이 있는 명문가의 자제였다는 것이다.26) 또 박응학·윤영관·이건영은 과거급제자이며 그 밖에 생도들은 閑良이라는 것이다.27) 박응학은 전 목사 朴鼎和의 아들이었으며, 윤영관은 慶尙左兵使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사관생도 가운데 서재필을 비롯하여 박응학·윤영관·이건영은 분명히 양반출신이었다. 그런데이규완은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박영효의 겸인이었다.28) 신중모는 이미 호산학교에서 수학하고 갑신정변에서 행동대의 지휘관 역할을 한 申福模의 동생으로 常漢이었다. 임은명은 강원도 홍천사람으로 체력이 매우 강해서 10여명을 능히 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재필의 문하에 있었다는 것이다.29) 이세 사람은 뒤에 언급하겠지만 거사 때 평민 이하 천민출신들과 함께 정부대

^{24) 〈}申重模鞫案〉.

²⁵⁾ 박영효의 집에서 사환으로 있던 이규완은 일본유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선발 시험관이 박영효라는 사실을 알고 박영효에게 강청하여 겨우 유학생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행 중에는 이규완의 신분이 천인이라 하 여 같이 가는 데에 불만이 있는 자가 있었으나 이규완이 시종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여 줌으로써 융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李圭 完翁百年史》, 批判新聞社, 1958, 42~44쪽).

²⁶⁾ 위의 책, 42쪽.

^{27) 《}高宗實錄》, 고종 21년 8월 28일. 여기서의 한량은 단지 과거급제자와 구분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²⁸⁾ 이규완은 臨瀛大君의 15대손이었다고 하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폐가상태에 이르러 숙부집에서 풀베기, 가축 돌보기 등 아주 비참하게 지내다가 상경하여 박영효의 집에 사환으로 있게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李圭完翁百年史》, 28~29쪽), 또 蠶島의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택견(脚蹴)의 명선수였으며 박영효의 청직이로 있었다고 한다(金振九、〈甲申變亂의 急先鋒〉、《別乾坤》4-4, 1929).

^{29) 〈}甲申大變亂의 回想〉(《韓國近世史論著集》2, 太學社, 1982, 484쪽).

신을 제거하는 자객으로서의 임무가 부여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평 민 이하의 신분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 도들은 대부분 양반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사관생도들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김옥균과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었다. 사관생도 중에서 유일하게 체포된 신중모를 국문하는 가운데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몸은 원래 常漢으로서 愈吉濬의 권고로 일찍이 일본에 가서 어학을 배우다 귀국하였다. 그 때 일본에 간 20여 명 중 나를 비롯한 14명은 1년 반 士官 공부를 배웠다. 그 후 김옥균이 왔다. 매 7일에 한 번씩 만났으므로 자주 가서 상종하였다. 따르며 얻은 것을 말하면 서양 각국은 모두 독립국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가 독립한 연후에 가히 친교를 할 수 있는데 조선은 홀로 중국의 속국이니 심히 부끄럽다. 조선은 언제나 독립하여 서양 여러 나라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는가(〈申重模鞫案〉).

즉 김옥균이 300만 원 차관교섭을 위해 세 번째로 도일하였을 때 서재필 등 사관생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가 만났던 것이다. 그 때마다 김 옥균은 조선은 청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여러 나라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관생도들은 김옥균을 추종하게 되어 개화당의 핵심세력을 이루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들이 귀국한 직후 국내의 상황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펼쳐져 가고 있었다. 서재필은 1884년 7월 귀국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우리가 戶山學校를 마치니 朝鮮士官들에게 신전술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귀환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1884년 4월에 서울로 돌아와 보니 정계는 떠나기 전보다 가일층 험악한데 조정 내외가 우리를 호의와 적의를 가지고 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종께서는 우리 일행을 인견하시어 일신한 군복에 창검을 꼬진 총을 메고 御前에 나타났다. 禁掖(闕內內庭)으로 들어가서 柔軟體操와 다른 운동을 해보라고 하명하신 것으로 보아 확실히 고종께서는 우리들의 복장과 모든 것에 怡悅을 느끼신 것이었다. 그 때 새 兵學校가 韓圭稷大將 지휘로 조직된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그 실현을 학수고대하였으나 徒勞이었었다. 六七朔의 뒤에야 그 신학교 설립의 기회를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그리하여 사

관훈련의 꿈도 따라서 사라져 버리었다(徐載弼, 〈回顧甲申政變〉, 85쪽).

이 회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은 신식 군사기술을 배우고 돌아온이들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새로이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이들을 교관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 사관학교 설립을 고종한테 상주한 사람은 尹致昊였다. 하지만 윤치호를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의 뒤에서 작용한 사람은 김옥균인 것으로 보인다.30) 그러나 사관학교 설립계획은 청군의 압력과 집권파 민씨측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들은 군에서 밀려나야만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민영익은 조선군대 훈련을 위해 청국으로부터 5명의 교관을 부르게 되었다. 이 조치는 개화당 요인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그러나 가장 불행하게 된 것은 14명의 사관생도들이었다. 그들은 청국군 교관을 고빙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한국인으로서 그들의 계급에 걸맞는 군관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할기회를 완전히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규직)장군의 군영에 채용된 3명을 제외하고 사관생도들은 군에서 떨려나 개화당 인사들에 의하여 반자선책으로 홍영식 밑에 있는 우정국의 하위직이 주어졌다(Ensign George C. Foulk,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the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Corea, December 4~7, 1884,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closure in No. 128; 朴日根 編、《近代韓國關係英・美外交資料集》1866~1886, 新文堂, 1984, 996쪽).

민영익이 청국교관을 부르게 됨으로써 사관생도들이 대부분 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옥균을 추종하고 있던 이들은 집권파에 대해 불만은 점점 더 커져 갔을 것이며 마침내 정변에서 행동대원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앞서 정변 당일 밤 경우궁에서 행동대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정전 문밖에는 李寅鐘·李昌奎·李奎禎(喜貞)이, 李殷鑑(種)·黃龍澤·金鳳均·尹景純·崔殷童(恩同)·高永錫·車弘植을 거느리고 포진하여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갑신일록〉에 보면 정변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1884년 12월 1일

³⁰⁾ 尹致昊, 《尹致昊日記》1, 1884년 8월 9일(國史編纂委員會, 1973). 李光麟, 앞의 책(1979), 102쪽.

⟨표 1⟩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관생도

이 름	나이	신분/지위	정변시 임무	정변후 상황	비고
徐載弼	20살	兩班/領官	행동대 지휘	일본망명	과거급제
鄭蘭教	21살	閑良		"	
朴應學		兩班		피살	과거급제
					前牧使 朴鼎和의 아들
鄭行徵		閑良		"	
林殷明		"	營使암살	일본망명	
申重模	23살	″,常漢	"	謀反大逆不道	申福模의 형
尹泳觀		兩班		피살	과거급제
					慶尙左兵使의 아들
李圭完		閑良, 常漢	별궁 방화, 營使암살	일본망명	朴泳孝의 傔人
河應善		"		피살	
李秉虎		"		"	
申應熙	26살	″/副領官		일본망명	
李建英		兩班		피살	과거급제
鄭鍾振		閑良			정변에 참여?
白樂雲		"		피살	

박영효의 집에서 거사 때의 임무 분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날에 이인종 으로 하여금 일본인 4명과 각각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압구정의 박영효 별 장에 가서 사냥을 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다. 당시 압구정으로 갈 때까지 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윤경순)가 인종의 집에 가보니 인종과 은종·황용택·최은동·김봉균·이 규완·신중모 모두 있었다. 나한테 함께 놀러가자고 하였으므로 같이 갔다. 水口門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步轎 2대에 일본인이 타고 있었다. 또 한 사내가 장총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옥균가의 床奴 永石이라 하였다. 왜인 또한 각각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 일행은 함께 압구정으로 갔다(〈尹景純鞫案〉31)).

^{31) 〈}尹景純鞫案〉에는 윤경순 이외에 이응호·전흥용·윤계완·김창기·민창수· 최성욱·이상록·신흥모 등 1886년 체포된 9명의 국안이 들어 있다.

즉 이인종의 집에 모였던 이은종·황용택·최은동·김봉균·이규완·신중 모·윤경순·이희정·박삼룡32) 등과 수구문 근처에서 합류한 고영석과 일본 인들이 함께 鴨鷗亨에 있는 박영효의 별장으로 가고 있었다. 이들은 사냥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일본인 자객 4명과 서로 얼굴을 익히면 서 거사의 예행연습을 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4영사 등 정부요인을 살해할 때 호령 즉 지휘를 맡은 이인종·이희정과 직 접 살해하는 임무가 부여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압구정에서 정부 요인들을 살해하는 예행연습을 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거사 당일 박영효의 집에 모여서 우정국으로 함께 가 그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정국에서 민영익이 나오자 일본인이 해를 입히고 연이어 이인종·윤경순 등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왕십리에 거주하는 河포교 등 30여 명이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이들은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시 박영효의 집에 모였다가 변수를 따라 경우궁으로 가서 대신들을 제거하게 되었던 것이었다.33)

이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별궁에 방화를 하여 우정국 연회에 모였던 4영사 등이 별궁의 화재를 끄러 나타났을 때 이들을 제거하기로 하고 영사 한사람당 두 사람씩 자객을 배정하였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놓친 영사들을 일본인 자객이 뒤에서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³⁴⁾ 그러나 계획한그대로 실행하는 못하였다. 거사 첫날인 12월 4일에 4영사 등 정부요인을 암살한 상황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32) 〈}申重模鞫案〉에 보면 12월 2일(음력 10월 15일)에 신중모가 이규완과 함께 이 인종의 집에 가보니 이인종·이은종·이희정·최은동·윤경순·박삼룡이 모여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희정·박삼룡도 압구정모임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람에게도 영사의 암살 임무가 주어졌다.

^{33)〈}尹景純鞫案〉.

^{34) 〈}甲申日錄〉을 보면 12월 1일에 거사시 각각의 임무를 분담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때 4명의 영사를 모두 살해하기로 하고, 영사 한 사람당 두 사람씩 맡기로 하였던 것이다. 즉 민영익은 윤경순·이은종, 윤태준은 박삼룡·황용택, 이조연은 최은동·신중모, 한규직은 이규완·임은명이 맡기로 하고 별도로 일본인 4명으로 배수를 치기로 하였으며 이인종·이희정의 신호에 맞추어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나(김봉균)와 이규완이 함께 李(조연)營使를 해쳤다. 황용택·윤경순이 함께 한(규직)영사를 해치고 최은동·고영석이 함께 윤(태준)영사를 해쳤다. 민(영목) 판서는 이규완·황용택·윤경순·고영석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필시 여기에서 해쳤을 것이다. 조(영하)보국·민(태호)보국 또한 4漢과 최은동이 세문 사이에서 下手하였다(〈金鳳均鞫案〉).

계획에서 짜여진 그대로 자객들이 배정된 영사를 각각 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압구정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4영사와 민영목·민태호·유재현 등 정부요인들을 살해하였던 것이다.35)

지휘의 임무를 부여받은 이인종은 종5품직인 判官을 지냈으며 4년 전에 박영효의 집에 賣菘業을 하는 윤경순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 그는 상당 기간 박영효의 집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찍부터 거사 모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6) 역시 지휘의 임무가 부여되었던 이희정은 59세의 연장자였는데 군인이었으며 僉使를 지냈다. 거사 당시에는 부영관을 제수받았다. 그는 이인종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으며 함께 충의계37) 계원이기도 하였던 그에 의해서 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변 직후 체포되어 국문을 받는 도중에 사망한 吳昌模(34살)도 충의계에 가입한 사람이었다. 그는 兵使를 지낸 吳晋泳의 庶子였다.

그러면 이인종과 이희정의 지휘하에 정부대신들을 살해하는 임무가 부여

^{35) 4}명의 영사를 암살하는 임무를 분담하였을 때 영사마다 짝지워진 계획 그대로 암살이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으며 또 국안마다 그 내용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압구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암살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甲申日錄〉・〈尹景純鞫案〉・〈申重模鞫案〉 참조).

³⁶⁾ 매숭업을 하는 윤경순이 박영효 집에 4년간 배추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인 종에 의해서였다고 하였으며 또 그 대금을 이인종이 주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인종이 박영효의 겸종으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軍伍之賤・常漢下流라는 이희정·이창규와 결의형제를 맺었던 것으로 보아 이인종의 신분도 평민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³⁷⁾ 충의계는 忠義隊 즉 보부상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다(李光麟, 앞의 책, 1986, 106~107쪽). 북한 사학에서는 충의계를 개화파의 모태이며 부르조아혁명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비밀결사요 개화파의 핵심조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빈약하다(申福龍,〈北韓史學에 나타난 甲申政變의 吟味〉,韓國政治外交史學會 編,《甲申政變研究》,평민사, 1985, 87~88쪽 참조).

되었던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尹景純(慶淳)(29세)은 동대문 밖에서 배추장사를 하면서 사는 常漢이었다. 그는 이인종과 동대문밖 같은 동리에서 거주하였던 적이 있었으며 이인종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 정도 이인종의 집에 기식하기도 하였던 사람이었다. 이인종의 소개로 박영효의 집에 4년간이나 배추 등을 팔았으며 1884년 10월에는 이인종이 자기 집으로 배추값을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갔다가 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윤경순은 이인종으로 인하여 거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崔恩同(殷童)은 윤경순・윤계완 형제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과의 인연으로 인하여 거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金奉(鳳)均(26살)은 박영효의 傔從이었다. 賤人출신으로 1880년부터 박영효의 집에서 지냈다. 1882년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그를 따라 일본에 갔다 온 적도 있었다. 그는 정변 당시에 仁政殿을 방화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38) 그리고 高永錫(石)은 김옥균 집의 床奴였다.

그런데 압구정에서 사냥을 하러 나가면서 윤경순은 이인종과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閑生들이 만약 관직에 오르게 된다면 우리들만 원통하지 않은가 하고 내(윤 경순)가 물었더니 (이인종이) 대답하기를 장차 큰일이 있으면 마땅히 世道人을 모두 제거하고 박영효가 好官이 되면 너희들 또한 마땅히 好任을 얻게 될 것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尹景純鞫案〉).

정변에 똑같이 참여하였으면서도 '한생'들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압구정에 모였던 윤경순 등은 관직에 오르지 못할 것이므로 원통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서 압구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관직에 오를 만한 신분이 되지 못하는 천한 신분출신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생'은 아마 사관생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상한 또는 천인출신으로 부상·군인·겸종·상노로서 신분이 밝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평민 이하의 신분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8) 〈}甲申日錄〉, 12월 1일・4일.

이규완·신중모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관생도였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관생도들과는 달리 자객으로서 평민 이하 천민까지 포함된 사람들과 함께 정부대신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규완은 박영효의 겸인으로 명문자제들로 구성된 일본유학생으로의 자격이 미달되어 박영효의 주선으로 가까스로 유학생에 합류하게 된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다. 신중모는 상한출신이었다. 당초의 계획에는 자객으로 사관생도 임은명도 끼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규완·신중모·임은명 등의 사관생도들은 대부분 명문자제로 구성되었던 일본 육군호산학교 유학생 중에서 신분이 처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볼 수 있겠다.

경우궁 전문 밖에서 시립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사람들, 즉 정부대신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 이외에 이창규·차홍식이 있었다. 李昌奎(43살)는 정변 당시 영관의 지위를 제수받았던 사람이었으며, 상한으로 1883년 4월에 사관생도 신복모·이은돌과 함께 무과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정변 당시에는 負商의 統領으로 각처의 부상들을 모아 이끌고 경우궁에서 시위하였다. 이 때 부상 백학진도 행동을 같이하였던 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이창규는 이인종·이희정과 함께 結義兄弟를 맺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세 사람 모두 상한출신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창규도 이희정과 마찬가지로 이인종으로 인하여 정변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車弘植(18살)은 본래 華溪寺의 승려였다. 김옥균이 1882년 화계사에서 10일 정도 묶었을 때 그의 권유로 김옥균 집에 머물고 있다가 김옥균이 동남개척 사로 일본에 갈 때 炊飯作饌의 임무를 띠고 수행하여 일본에 갔다온 적이 있었다. 거사 직전에는 서재필의 집에서 집안일을 보고 있다가 정변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차홍식도 평민 이하의 신분출신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밖에 정변 직후 체포령이 내려져 있던 東萊水使의 동생 李熙德도 김옥균의 부름을 받고 경우궁에서 함께 시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변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 중에서 정부대신 등을 암살하는데 가담하였던 사람들과 부영관을 제수받은 이창규에게는 謀反大逆不道罪의 극형에 처해졌으며 차홍식에게는 知情不告罪를 적용하였다. 이 밖에 이인종·이은종·

황용택·최은동·고영석·박삼룡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그 중 이 인종은 정변중에 피살당하였다고 한다.39)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표 2〉 와 같다.

〈표 2〉 갑신정변에 참여한 주요인사 암살자 및 부상 등

이 름	나이	신분/직업	정변시 임무	처 벌	н]	고
李寅鐘		判官	營使암살 지휘	체포령(피살)		忠義契
李昌奎	43살	常漢下流 負商統領	副領官	謀反大逆不道	의형제	무과급제
李喜貞	59살	軍伍之賤 僉使	營使암살 지휘 領官	"		忠義契
李殷種				체포령		
黃龍澤			營使암살	"		
金鳳均	26살	蟣蝨之賤 박영효 겸종	″ 仁政殿 방화	謀反大逆不道	박영효 수행 도일	
尹景純	28살	常漢 賣菘業	別宮방화 營使암살	"	이인종 집에 3년간 기 식	
崔恩同			別宮방화 營使암살	체포령		
高永錫		김옥균 상노	營使암살 방화	"		
車弘植	18살	승려 서재필 겸종		知情不告	김옥균을 수행 도일	
朴三龍			營使암살	체포령		
吳昌模	34살	庶子 蟣蝨之流		鞠問중 사망	前兵使 吳晉泳의 서자 忠義契	
白學鎭		負商		체포령		
李熙德				"	東萊水使의	이 아우

또 다른 무리가 거사에 참여하였다. 다음과 같은 국문 내용에서 알 수 있 듯이 거사 당일 閔昌洙의 집에 모였다가 가담한 무리가 있었다.

^{39)〈}罪人申箕善鞫案〉.

問. 閔昌洙의 집에 모였을 때 몇 사람이었으며 이름은 누구였나. 供. 13인이었다. 申福模・浪昌寬・張明煥・全興龍・金昌基・尹啓完・申聖模・ 車壽鉉・李上祿・張聖寬・任鎭圭・崔聖郁 그리고 나(李應浩)였다(〈李應浩鞫案〉).

민창수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집주인 민창수를 포함하여 모두 14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전영군인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張明煥・申錫(聖)模・車壽鉉・張聖寬・任鎭圭(奎)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민창수・전흥룡・김창기・윤계완・최성욱・이응호 등은 1885년 1월 체포되어 국문을 받고 처형당하였으며 이상록은 智島로 정배되었다. 낭창관은 1886년 10월 말에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따라서 국안을 통해서 이들의 신분 등을 살펴볼 수있다.

閔昌洙(27살)는 부상(饌商・賣酒)이었다가 1883년 남한산성군에 입대하여 정변 당시에는 전영의 隊首였다. 金興龍(28살)은 산성군인으로 있다가 전영에편입된 자이다. 金昌基(25살)는 산성병이었다가 신복모와 함께 부평으로부터와서 정변에 참여하였다. 尹啓完(24살)은 미천한 신분으로 靑根商을 하다가남한산성군에 들어갔으며 그 뒤 상경하여 전영의 대장이 된 사람이다. 그는형인 윤경순에 의해 개화당과 관계를 맺게 되어 거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당직일자를 거사날에 맞추어 조정하고 당일 병졸 50명을 거느리고 경우궁을숙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崔聖郁(32살)은 萊營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신복모의 권유에 의해 거사에 참가하였다. 李應浩(33세)는 미천한 신분출신으로 남한산성에서 훈련을 받다가 상경하여 前營敎長이 되었으며, 거사 당일參領官을 제수받았다. 李上祿(31살)은 전영의 병졸로 신복모의 명령에 따라서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浪昌煥(寬)(29살)은 천인출신으로 정변중에 영관으로제수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營門執事였다.40)

이 전영군인들의 지휘관인 申福模는 일본 육군호산학교 출신 사관생도였다. 거사 당시에는 전영의 교장으로 總管畿沿海防事務(海防使) 閔泳穆 밑에서 교관으로 있다가 정변에 참가하여 부영관의 직책을 제수받아 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신복모의 형인 신홍모(29살)는 御營校의 집사로 있다가 동생 신복

^{40)〈}謀反大逆不道罪人仁默等鞫案〉.

모의 권유로 정변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이처럼 신흥모· 신복모, 사관생도 신중모 3형제가 모두 정변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 변에 가담한 인물로 신복모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하여 陸軍敎導團에서 나팔 을 전공하고 박영효 밑에서 교련을 담당했던 李銀乭이 있었다.

정변에 참가했던 전영군인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갑신정변에 참여한 전영군인

이 름	나이	지 위 전영/(정변 중)	신분 및 전직	처 벌	비고
申福模		教長/(副領官)	常漢 山城軍 教官	체포령	戶山學校 사관 무과급제 興模·重模와 형제
李銀乭			"	(피살)	陸軍敎導團서 나팔전공 무과급제
閔昌洙	26살	隊首	負商(饌商・賣酒) 山城軍	知情不告	
浪昌寬	27살	병사/(領官)	蟣蝨之賤	謀反不道	
張明煥				체포령	
全興龍	27살	병사	山城軍	謀反不道	
金昌基	24살		"	知情不告	
尹啓完	23살	대장	菁根商・山城軍	謀反不道	尹景純의 아우
中錫模				체포령	
車壽鉉				"	
李上祿	30살	병사	至微至賤之流	定配	
張聖寬				체포령	
任鎭圭				"	
崔聖郁	31살			"	萊營에서 훈련
李應浩	32살	教長/(參領官)	微賤之流・山城軍	謀反不道	

이들 중 신분이 밝혀진 사람들은 거의 모두 미천하고 군인이 되기 이전의 직업을 보면 야채나 찬거리를 팔았거나 술을 팔았던 장사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영군인을 다음의 글에서 보듯이 부상에서 선발하였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부상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전영 560인은 모두 부상에서 선발된 병사로서 4영 중 가장 유력한 자이다. 또한 후영의 500인도 그 절반은 역시 부상에서 선발된 자이다(《東京經濟雜誌》, 1885 2월 7일, 負商褓商の勢力).

그런데 정변 후 체포되어 국문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한산성병으로 있다가 상경하여 전영군인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남한산성병과 전영군인의 관계에 대해 박영효는 갑신정변을 회상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幸히 廣州留守가 守禦使兼職으로 병권을 가지게 된 것을 다행으로 後日之計를 위하여 양병을 할 터이니 金玉均은 得債중 수만금을 군자로 밀송하여 주기를 斷斷相約하고 나는 광주로 金은 일본으로 各散하였었다. 기다리는 군자금은 아니오고 곤군한 중에 겨우 천여의 병을 교련하니 당시 日本士官學校 출신인 申福模와 나팔수 李銀乭은 나의 股肱으로 일본식 교련에 진력하든 難忘之人이었다. 그렇저렇 1년이 지남에 광주유수의 精兵 양성이 이상히도 민일파에게 위험시하게 되야 閔妃의 일언으로 나는 곧 면관되고 내가 양성한 일본식 군병은 곧 京城으로 徵上되야 전후 御營에 속하야 前營使 韓圭稷,後營使 尹泰駿의 영솔하에 돌아가고 말았다(朴泳孝,〈甲申政變〉,《新民》14, 1926. 6).

1883년(고종 20) 3월 광주유수로 부임한 박영효는 守禦使를 겸직하여 군권을 지니게 된 것을 기회로 개화당의 계획을 위해 병력의 양성에 착수한 것이었다. 즉 이 군대가 南漢敎鍊兵隊 즉 남한산성병이었던 것이다. 이 군인양성에 필요한 자금은 김옥균이 일본에서 교섭하여 차관을 얻어 오게 되면 그 일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옥균의 차관교섭이 실패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권파 민씨의 질시로 박영효도 1883년 10월에 수어사직에서 면직되었다. 그리고 박영효가 양성한 남한교련병대는 일단 御營廳으로소속이 변경되었으며,41) 곧 이어서 이들을 훈련시킬 교련소를 신설함과 동시

^{41) 《}高宗實錄》, 고종 20년 10월 1일.

에 이를 親軍前營이란 부대명칭을 붙이고 御營大將 한규직에게 감독을 겸하 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친군전영의 군인은 박영효가 광주에서 교육시킨 병력이었다. 이들을 훈련시킨 교관은 박영효의 측근 심복인 신복모와 이은돌이었다. 신복모·이은돌은 1881년 11월에 張大鏞과 함께 하사관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에 유학하였다. 이 유학은 通商章程 체결차 도일하였던 수신사 趙秉鎬가 일본정부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장대용은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지만 신복모는 1882년 5월 육군호산학교보병과를 졸업하고 다시 교도단에 들어가 대·중·소대학을 연습하고 일본에 간 지 1년 2개월 만에 박영효 일행과 같이 귀국하였다. 이은돌은 육군교도단에 입학하여 나팔을 전공하였다. 유학한 지 1년 만인 1882년 10월에 졸업하고 귀국하였다.42)이 두 사람은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83년 4월에 이창규와 함께 무과에 拜賜되었다.43)

박영효가 양성한 남한교련병대의 군인을 흡수하여 만들어진 전영은 다음의 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좌·우영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지금 좌·우영과 전영은 서로가 보기를 仇敵처럼 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유사시 어찌 힘을 내어 나라를 위한다 할 것인가(《尹致昊日記》1, 1884년 1월 4일).

친군좌·우영은 청국의 강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치 운영되었으며 청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청국식 부대였다. 반면에 전영은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관생도들이 교관으로 훈련을 시킨 일본식 부대였다. 이러한 다른 성격의 두 부대는 서로 적대시할 정도로 반목·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⁴⁾ 따라서 전영군인들은 친청적 성향을 띠고 있던 집권파보다는 박영효 등 개화당 편에 서서 이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은 당연하였다.

⁴²⁾ 李光麟, 앞의 책(1986), 50~51쪽 참조.

^{43)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4월 7일.

⁴⁴⁾ 崔炳鈺、〈壬午軍亂後 親軍制의 成立과 그 矛盾〉(《軍史》26, 國防軍史研究所, 1993), 101~103等.

372 V. 갑신정변

그런데 민창수의 집에서 모였던 전영군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가 있다.

나(민창수)는 병정이다. 敎長之會에는 감히 참석할 수 없다(〈閔昌洙鞫案〉).

17일 저녁 신복모가 나(李上祿)에게 윤계완을 불러 함께 閔昌洙의 집에 오라는 명령을 하였으므로 나는 명령에 따라 갔더니 敎長・什長 등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李上祿鞫案〉).

이 모임은 일반 병사는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교장들의 모임이었다고 하고 또 교장·십장 등이 모두 모였던 모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창수 집에서 의 모임은 전영군인 가운데에서도 지휘관급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신복모·이응호는 교장, 윤계완은 대장, 민창수는 대수로 밝혀졌 지만 그 이외에도 다수가 전영내에서 지휘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날 민창수의 집에서 가졌던 전영군인들의 모임에서 대표격인 신복모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오늘 저녁 二橋경 불이 나면 마땅히 난리가 있을 것이다…청국과 일본이 교 전할 것이며 영효·옥균 등이 이 일을 한다…우리들은 開化之世事가 만약 이루 어진다면 마땅히 好官을 얻을 것이다(〈李應浩鞫案〉).

이 글에서 보이듯이 이들은 정변이 성공하면 '好官'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유혹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전영군인은 총 500명 정도였다. 이 중에서 14명이 민창수의 집에 모였으며 또한 이들은 전영군인 가운데에서도 지휘관급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박영효의 밑에 있던 군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순히 보다 나은 직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때문에 정변에 참가하게 되었던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이미 개화당이 추구하던 정변의 목표에 대하여 적극 동조하고 있던 개화당 인사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갑신정변에는 개화당 요인들의 겸종 및 노자들이 다수 연루되어 처형당하

였다. 앞서의 박영효의 겸종인 김봉균, 김옥균의 상노인 고영석 이외에 정변에 연루되어 처형을 당한 자로는 이점돌·이윤상·남흥철·고흥철·최영석·운 이 등이 있었다.

李點乭(27살)은 김옥균의 겸종이었다. 그는 천민출신으로 김옥균의 鄕人이었으며 김옥균의 집에서 3년간 지내다가 김옥균을 따라 일본에 갔다가 1884년 4월 귀환하였다. 거사 당시 사관생도 2명과 함께 민가를 방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高興宗(41살)은 용렬하고 미련한 하류출신으로 역시 김옥균의 겸종이었다. 李允相(33살)은 4·5년간 서광범의 겸종으로 있었다. 그는 별감을 지냈으며 시정에서 苧廛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별군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변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南興喆(30살)은 궁방의 일을 하던 천인출신으로서 김옥균의 겸종이었다. 그는 1883년 6월 김옥균이 차관교섭을 위해 세 번째로 도일할 때 수행하여 일본에 갔다가 牛痘法을 배우고 돌아온 후 諫洞에서 貨賣洋物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거사에 참여하였다는 사람이었다. 이 밖에 박영효의 사랑 奴子 崔英植(42살)은 체포되어 처형당하였으며 서재필의 家僮 雲伊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갑신정변에 참여한 겸종 및 노자

이 름	나이	직	업	신	분	처	벌	刊	卫
金鳳均	26살	박영효의	겸종					*〈丑 2〉	참조
李點乭	27살	김옥균의	겸종	皂隷賤品	『之流	謀反不	道	김옥균을	수행 도일
高興宗	41살	"		庸頑下況	Ĺ	知情不	告		
李允相 33	33살	서광범의	겸종			謀反不道			
	99.필	別監, 苧廖	E						
南興喆	30살	김옥균의	겸종	椋宮之賤	ė.	知情不告	김옥균을	수행 도일	
用夾吅	30 z	洋物賣		你呂之贱		邓阳小百		우두법을	배워오다
高永錫		김옥균의	床奴					* 〈丑 2〉	참조
崔英植	42살	박영효의	舍廊奴子	宮家蒼頭	Į	知情不	告		
雲 伊		서재필의	家僮			체포령]		

이들이 체포되어 국문을 통해서 밝혀진 신분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평

374 V. 갑신정변

민 중에서도 하류출신 내지는 천민출신이었다. 또 이들의 국안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외조부의 이름을 모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친조부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천한 신분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따라서 이들은 개화당 인사의 충복으로서 자연스럽게 정변에 연루되었다가 희생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갑신일록〉에 보면 개화당 인사들은 궐내의 종사자들에게도 손을 뻗쳐서 이들 중에도 정변에 가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6) 이들 중에는 궐내의 사정을 정탐하여 알려주던 朴大榮 閣監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환관 2명이 있었다. 또 顧大嫂(42살)라는 궁녀는 10여 년 전부터 개화당에들어와 궁중의 비밀을 통보해 주었으며 정변 당시에는 通明殿을 방화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李錫伊는 김봉균과 함께 仁政殿을 방화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한 자로서 궁녀로 보인다.47) 李禹石은 궁녀로서 궁궐내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 1886년 1월 26일 처형되었다.48) 정변이 일어난 당일 金虎門을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어 준 김옥균의 심복 수문장도 있었다. 이들을 표로정리해 보면〈표 5〉와 같다.

⟨丑 5⟩	갑신정변에	참여하	궁궐내의	종사자

이 름	나 이	직 업	임 무	처 벌
朴大榮		閣監	궐내 염탐	
\triangle \triangle \triangle		宦官	"	
\triangle \triangle \triangle		"	"	
顧大嫂	42살	宮女	通明殿 放火	
李 錫 伊		"	仁政殿 "	
李禹石		"		처 형
\triangle \triangle \triangle		守門將	金虎門 開門	

⁴⁵⁾ 鞫案에 보면 이점돌·최영식은 조부·외조부의 이름, 고흥종·이윤상·남흥철 은 외조부의 이름만을 모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6) 〈}甲申日錄〉. 11월 19일 및 12월 1일 · 3일 · 4일.

⁴⁷⁾ 인정전을 방화할 때 미리 그 아래 화약을 묻어 놓았다고 하므로 그 임무를 수행한 이석이는 궁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甲申日錄〉, 12월 4일).

^{48) 《}備邊司謄錄》 266책, 고종 22년 12월 22일.

이처럼 갑신정변의 행동대는 일본 육군호산학교 출신 사관생도들과 전영 군인의 지휘관급들, 개화당의 인사들의 심복 장사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전영소속의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가담하였다. 한편 개화당의 인사들의 겸인·가동들이 가담하였다. 또한 궁내의 종사자들 중에서도 가담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소수의 양반출신인 사관생도들을 제외하고는 중인 이하 천민에 이르는 신분출신의 사관생도·군인·부상·겸인·가동·승려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개화파의 이상에 적극 동조하여 정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담한 자가 있었으며, 또 이들과 연결되어 보다 나은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자들도 있었다. 반면에 단지하인의 신분으로서 상전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자연히 정변에 연루되어 희생된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尹炳喜〉

3. 갑신정변의 전개

1) 정변 주도세력의 목표

초기 개화파 중에서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파 개화당의 목표는 당시 세계대세에 뒤떨어져서 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조선왕국을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갑신정변 주도세력의 핵심인

¹⁾ 다음과 같은 글들이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

閔泰瑗,《甲申政變斗 金玉均》(國際文化協會, 1947).

姜在彦、〈開化思想・開化派・甲申政變〉(《朝鮮近代史研究》, 1970).

Harold F. Cook. The Korea's 1884 Incident, 1972.

李光麟、〈金玉均의 '甲申日錄'에 대하여〉(《震檀學報》33, 1972).

^{----, 〈}舍은 開化思想家 劉大致〉(《開化黨研究》, 一潮閣, 1973).

^{----, 〈}甲申政變에 대한 一考察〉(위의 책, 1973).

金榮作,〈初期開化派의 民族主義思想과 甲申政變의 現代的 意義〉(《思想과 政策》1-4, 1984).

慎鏞廈、〈甲申政變에 社會經濟的 背景과 開化思想〉(《思想과 政策》1-4, 1984).

물의 하나였던 徐載弼은 갑신정변의 지도자 金玉均의 목표는 '조선도 힘있는 현대적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金玉均은 현대적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시대의 추이를 통찰하고 朝鮮도 힘있는 現代的 國家로 만들려고 절실히 바랐었다. 그리하여 신지식을 주입하고 신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정부나 일반사회의 奮鬪因習을 一變시켜야 할 필요를 확고히 깨달았다(徐載弼,〈回顧甲申政變〉, 閔泰瑗 著《甲申政變과 金玉均》, 1947, 82쪽).

갑신정변의 주도세력의 하나로 김옥균이 일본에 유학시킨 사관생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김옥균은 사관생도들에게 "일본이 동방의 영국노릇을 하려 하니 우리는 우리 나라를 아시아의 불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 다.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甲申政變의 改革思想〉(《韓國學報》36, 1984).

^{-----、〈}金玉均의 開化思想〉(《東方學志》46·47·48, 1985).

^{-----, 〈19}세기 한국의 近代國家 형성문제와 立憲共和國 수립운동〉(《韓國社 會史研究會論文集》1, 1986).

^{———,〈}甲申政變의 主體勢力과 開化黨의 北青·廣州養兵〉(《韓國學報》95, 1999).

韓國政治外交史學會、《甲申政變研究》、1985、

安秉治、〈1884年 甲申政變の社會經濟的基礎〉(《朝鮮近代經濟史研究》, 1975).

裵成東、〈朝鮮末期의 政治體制〉(《韓國政治學會報》10, 1976).

金達中, 〈1880年代 韓國國內政治의 外交政策〉(《韓國政治學會報》10, 1976).

吳世昌、〈開化思想과 開化黨의 形成〉(《韓國史學》1,1980).

山邊健太郎、〈甲申事變について〉(《歷史學研究》 244・247, 1960).

朴宗根,〈朝鮮における近代的改革の推移-1884(甲申)年と1894年の改革をめぐって->(《歷史學研究》300, 1965).

糟谷憲一、〈甲申政變・開化派研究の課題〉(《朝鮮史研究會論文集》22. 1985).

朴明圭、〈開化派外 討幕派의 社會經濟的背景과 近代指向性에 관한 비교연구〉 (《韓國社會史研究會論文集》42, 1994).

康珍子,〈甲申政變の問題點-甲申日錄の檢討を通じて一〉(《朝鮮史研究會論文集》22. 1985).

Shin Yong-Ha, The Coup d'État of 1884 and Pukchong Army of the Progressive Party, *Korea Journal* 33-2, 1993.

姜昌一, 〈初期開化派의 近代化구상-甲申政變에 대한 비관적 검토-〉(《韓國文化》15, 1994).

金雲泰,〈韓末開化思想과 그 運動의 展開〉(《朝鮮政治思想研究》, 1985).

崔震植, 〈甲申政變을 전후한 開化派의 外交인식〉(《釜山史學》32, 1997).

매 일요일이면 우리는 반드시 金玉均을 築地 寓居로 심방하였다. 그러는 때마다 그는 우리를 친동생과 같이 대접하고 숨김없고 남김없는 폐·간 속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祖國刷新에 대한 우리의 중차대한 임무를 말하는 동시에 나라에 돌아가 우리가 빛나는 대공훈을 세울 것을 믿어 마지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는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日本이 東方의 英國노릇을 하려 하니 우리는 우리 나라를 亞細亞의 佛蘭西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고 또 유일한 야심이었다. 우리는 김씨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의 전도에 무엇이 닥쳐오던지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윗점 – 인용자)(徐載弼, 〈回顧甲申政變〉, 앞의 책, 84~85쪽).

조국인 조선왕국을 '힘있는 현대적 국가'로 쇄신하고, 조선을 '아시아의 불란서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 '외국의 침략'2)을 막아내려는 김옥균 등 개화당의 목표는 '임오군란' 후 조선에 진주한 청군의 간섭과 방해로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임오군란 직후 청국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서울에 주둔시키고 집권자이며 국왕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을 군함에 초청해 놓고는 그대로 납치하여 청국에 실어다가 保定府에 유폐해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청국은 민비정권을 재수립해 놓은 다음에도 철군하지 아니하고 청군을 서울에 장기 주둔시킨 채 이 무력을 배경으로 허구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조선을 屬邦化하기 위한 적극 간섭정책을 자행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크게 침해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청국 장수 吳長慶과 袁世凱는 병권을 장악하고 총판조선각국통상사무(재정고문)로 파견된 陳樹棠은 재정권을 장악했으며, 李鴻章이 파견한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는 해관을 장악했을 뿐아니라 외교까지 장악하려 하였다.

청국은 뿐만 아니라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의 개화운동이 궁극적으로 청국으로부터의 조선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보고 온갖 방법으로 개화당을 탄압하고 개화운동을 저해하였다. 그러므로 임오군란 이후의 개화정책은 청군의 탄압과 방해를 받아 가면서 추진된 것이었으며, 개화당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당시 임오군란에 의하여 정권이 한 번 붕괴되었다가 청국의 구원으로 재

²⁾ 金玉均、<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版, 146쪽). 이하《金玉均全集》은 全集으로 생략 표기하기로 함.

집권하게 된 閔妃守舊派들은 청국의 속방화정책에 순종하여, 나라의 독립이 크게 침해되고 자주근대화가 저지되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일가일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당시 청국이 조선의 독립을 얼마나 침해했는가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청국은 임오군란 직후 민비정권에 압력을 가하여, 그 동안 조선왕조가 각 국과 체결한 불평등조약들 중에서도 가장 불평등하고 청국의 특권을 일방 적으로 허여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1882년 8월 23일 체결하고, 그 前文에 조선을 청국의 '屬邦'이라고 문자로 써넣었다. 진수당은 방자하게도 '조선은 중국의 屬國'이라는 문귀를 넣은 방문을 공공연히 남대문에 써붙이 기까지 하였다.3) 그는 강제로 한국인의 집을 사들이고자 하여 이에 항의한 正言 李範晋을 청군의 군영에 잡아다가 어지러이 매를 때리는 만행까지 자 행하였다.4)

또한 청국조정은 조선조정에 대해 "무릇 外憂에 관한 일은 일체를 청국에 문의하라"5)고 지시했다. 청국 장수 오장경은 조선국왕에게 맞대놓고 "내가 3천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에 와 있으므로 매사에 皇朝(청국)를 배반해서는 안된다"6)고 협박하였다. 그는 조선국왕에게 "내년 봄에는 청국의 군대가 증파될 것이라"7)고 위협하였다.

서울에 주둔한 청군의 행패도 극심하였다. 하나의 예만 들면, 청군이 광통교 부근의 한 약국에서 무료로 약품을 빼앗으려 하다가 약값을 요구하는 주인 최씨의 아들을 사살하고 최씨에게도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8) 개화당신문인《漢城旬報》가 이를 보도하자, 청군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한성순보》를 발행하는 통리기무아문의 博文局을 습격하기까지 하였다.9) 그러나민비 수구파정권은 청군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항의조차 제대로 한 번 하지

^{3) 《}尹致昊日記》, 1883년 (음력) 10월 3일 · 5일.

^{4) 《}尹致昊日記》, 1884년 5월 28일.

^{5) 《}尹致昊日記》, 1883년 10월 3일.

⁶⁾ 위와 같음.

^{7) 《}尹致昊日記》, 1883년 12월 4일.

^{8) 《}尹致昊日記》, 1884년 1월 3일.

^{9) 《}漢城旬報》 10호, 1884년 1월 3일, 〈革兵犯罪〉.

못하는 형편이었다.

개화당은 임오군란 후의 청국의 이러한 속방화정책 및 만행과 개화정책에 대한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저항하고 조선을 서양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때 김옥균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淸나라 세력을 꺾어버리는 동시에 그에 추종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빼앗은 후에 우리 나라의 完全自主獨立政治를 수립하자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고 실현의 최고 목적이었다.

더욱이 淸나라에서 大院君을 납치했다는 것은 우리로서 참을 수 없는 수치라 하여 분개함을 참을 수 없어 그 세력구축과 귀족타파의 깃발을 둘러메고 나서려 한 것이다(金道泰 編,《徐載弼博士自敍傳》,首善社, 1949, 86~87쪽).

또한 사관생도로서 갑신정변에 참가했다가 후에 심문을 받은 申重模는 김 옥균의 목표에 대해 당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따라서 김옥균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서양 각국은 모두 독립국가이다. 어떠한 국가든지 독립한 연후에야 비로소 타국과 화친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은 오직 청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朝鮮도 언젠가는 독립국가가 되어서 西洋諸國과 同列에 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推案及鞫案》324책, 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중 申重模의 供述, 亞細亞文化社 영인 판 30책, 588쪽).

서재필도 당시 김옥균의 사상과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여 기록하였다.

김옥균은 조국이 청국의 종주권하에 있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여 어찌하면 이 수치를 벗어나 조선도 세계 각국 중에 평등과 자유의 일원이 될까 주주야야로 노심초사했던 것이다(〈回顧甲申政變〉, 앞의 책, 82쪽).

갑신정변 주도세력의 영수인 김옥균은 정변 직전에 일본인 정치가에 보낸 편지에서도, 조선이 振作의 희망이 없는 것은 청국이 조선을 속국으로 멍에 를 씌우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조선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멍에를 철폐하 고 특히 獨全自主之國을 수립하는 일이다"10)라고 명료하게 밝히었다. 갑신정 변 주도세력의 목표는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조선 '속방화정책'의 멍에를 철폐하고,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동열 에 서도록 나라를 발전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개화당에 대하여 청국측과 민비 수구파는 결탁하여 탄압하고 개화당 요인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정계에서 제거시켜 나갔다. 김 옥균은 갑신정변 직전에 박영효의 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수년래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각고진력해 왔으나, 그 공효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금일 이미 死地에 들어가게 되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人을 制하여 策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세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들의 결심에는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伊藤博文編,《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상, 朴泳孝邸ニ於テ洪英植・金玉均・徐光範ト島村久談話筆記要略, 271쪽).

개화당은 결국 임오군란 후 청국의 '조선속방화'정책을 정변의 방법으로 집권하여 물리치고, 위로부터의 급속한 자주 근대화정책을 실시해서 조선을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로 건설하여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완전 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정변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¹¹⁾

2) 갑신정변의 준비

(1) 개화당의 정변 무력문제

개화당들이 청국의 조선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일거에 물리치고 청국에 야합한 민비 수구파정권을 타도한 후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봄부터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그들이 아직 정변의 구체적 계획을 설계한 것은 아니었다.

개화당의 영수 김옥균은 일찍이 청국세력을 몰아내고 수구 고식배를 소제하여 '大更張改革'을 단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파했었다. 그하나는 김옥균의 표현에 의하면 '平和行事'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국왕의 칙

¹⁰⁾ 金玉均、〈朝鮮改革意見書〉(《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版, 110~111零).

¹¹⁾ 愼鏞廈, 앞의 글(앞의 책, 1985; 《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一志社, 1987) 참조.

령을 빌려서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사업에 종사하는 방법이었다. 다른 하나는 김옥균의 표현을 빌리면 '武力行事'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국왕의 밀의에 의탁하면서 무력으로 정변이나 혁명을 일으켜 먼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급진적으로 개혁사업을 신속히 단행하는 방법이었다. 12) 개화당은 김옥균이 말한 두 번째의 방법을 택하여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개화당이 구상한 정변은 군사무력을 수단으로 택한 것이었으므로, 개화당은 4개의 흐름으로 정변 무력을 준비하였다.

첫째, 개화당 요인 朴泳孝가 한성판윤으로부터 1883년 3월 경기도 廣州留守로 좌천되어 가자, 경기도 광주가 수도방위를 위한 4都의 하나로서 광주유수가 군대양성의 권한을 가진 직책임을 활용하여 바로 500명의 장정을 모집해서 서양식 군대를 의미하는 신식 군대양성을 시작하였다.13) 이 광주군대의훈련대장에는 개화당 군인장교 申福模를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수개월간의강훈련 결과 박영효의 휘하에 500명의 강력한 신식 군대가 새로이 양성되었는데, 이것은 개화당의 군대였으며, 겸하여 유사시에는 정변의 무력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나 수구파들은 개화당 요인 박영효의 휘하에 500명의 강력한 신식 군대가 있는 것을 위험시해서 국왕에게 진언하여, 마침내 국왕은 1883년 10월 1일(양력 10월 31일) 광주군대를 御營廳으로 이속시키라고 명령하였다.14) 어영청은 당시의 왕궁수비대 관리기관의 명칭이었다. 그 결과 박영효가 뽑아서훈련시킨 광주군대는 서울로 불러 올려서 어영청에 속하게 되었다.15)

수구파는 국왕을 움직여 계속해서 1883년 11월 6일 박영효를 광주유수에서 해임시켰을 뿐만 아니라 11월 22일에는 광주군대로 만들어진 신설 敎鍊所를 '親軍營前營'이라 호칭하도록 하고, 어영대장 韓圭稷이 친군영 前營使(처음 호칭 監督)를 겸임케 하였다.¹⁶⁾ 한규직은 민비 수구파 요인의 한 사람으

¹²⁾ 金玉均、〈朝鮮改革意見書〉(111~112쪽 참조).

^{13) 《}漢城旬報》 3호, 1883년 10월 21일, 〈廣留狀啓〉.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10월 1일.

^{14) 《}高宗實錄》, 고종 20년 (음력) 10월 초1일.

^{15) 《}漢城旬報》 3호. 1883년 10월 1일 〈廣留狀啓〉.

^{16) 《}高宗實錄》, 고종 20년 10월 23일.

로서 이것은 광주군대의 지휘권을 민비 수구파가 개화당으로부터 빼앗아 가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김옥균·박영효 등이 친군영 전영의 장교들을 개화당 의 비밀결사인 忠義契에 가입시켜 지휘하고 있었고, 병사들도 일찍이 광주에 서 박영효·신복모가 뽑아 훈련시킨 군대였기 때문에 친군영 전영의 무력은 비밀리에 개화당의 지휘를 받는 무력이었다.

국왕은 1883년 11월 29일(양력 12월 28일) 春塘臺에서 친군영 전영군대(광주군대)를 친히 관람하였다.17) 당시《한성순보》는 이 같은 사정을 다음과 같이기록 보도하였다.

29일 국왕께서 춘당대(창경궁 안에 있었음-인용자)에 거둥하여 親軍의 練式을 관람했으므로 삼가 기록한다. 이 날 친군영 전영감독 한규직이, 광주에서 조련한 일본식 기예의 신식 군대인 전영병정 5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국왕께서 친히 임석하여 사열하셨다. 500명 군사가 각각 등에 황색 가죽배낭을 메고, 손에는 後膛式 총을 들고 대장의 지휘에 하나인 것같이 따랐다. 그 운동하여 진퇴하는 제식훈련과 공격하여 찌르는 병술훈련이 學成되고 숙련되어 조금도 차질이 없어 일본군사의 기예에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이로써 보건대강병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교련에 있는 것이다. 또 훈련을 시작한 지 몇달이 되지 않아 이미 기예가 이처럼 告成되었으니 隊長의 열심한 교련이 더욱가상하다 하겠다(《漢城旬報》7호, 1883년 음력 12월 1일, 諭旨恭錄).

이 친군영 전영군대(광주군대)는 개화당에 의해 양성되어 갑신정변의 무력준비의 하나가 된 것이었다.

둘째, 개화당은 尹雄烈을 1883년 4월에 함경남병사로 임명케 해서 함경남병영이 있는 北靑에서 개화당의 무관인 윤웅렬의 주관 아래 약 500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신식 군대를 양성하였다. 18) 윤웅렬이 1883년 3월 17일 함경남병사에 임명된 데에는 김옥균이 관련되어 있었다. 19) 또한 《윤치호일기》에는 윤웅렬의 함경남병영에서의 양병은 김옥균이 나라를 위해 크게 遠慮해서 추

^{17) 《}高宗實錄》, 고종 20년 11월 29일.

¹⁸⁾ 愼鏞廈,〈甲申政變의 主體勢力과 開化黨의 北青・廣州養兵〉(《韓國學報》95, 1999).

[《]漢城旬報》12호, 1884년 1월 21일,〈咸鏡南道兵馬節度使 尹雄烈狀啓〉.

^{19) 《}南兵營啓錄》, 고종 20년 3월 초2일.

진하는 사업이라고 기록했고,²⁰⁾ 또한 윤웅렬의 북청양병을 '개화와 진보를 위한 큰 기관'²¹⁾이라고 기록하였다. 윤웅렬의 함경남병사 임명과 500명의 북청양병은 개화당의 계획에 의한 양병이었음이 명백한 것이다.

윤웅렬은 4월 17일 국왕을 알현하고 북청에 도착한 후 5월 24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500명의 장정을 뽑아 신식(서양식) 군사훈련을 실행하였다.²²⁾ 윤웅렬의 500명 북청의 신식 군대양성은 성공적이었다. 윤웅렬은 이를 스스로평가하여 "技藝를 연습함이 날로 나아가고 隊伍를 이룬 모양이 모두 볼 만한 것이 있다"²³⁾고 보고한 정도였다.

함경도 북청에서 개화당의 군대 500명이 창설되어 강력한 신식 군대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민비 수구파는 이것을 매우 위험시하여 본격적 견제를 시작하였다. 수구파 영수 閔台鎬는 배후에서 교사하여 함경관찰사 林翰洙로 하여금 함경남병사 윤웅렬이 인화를 잃었고 가렴주구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국왕에게 윤웅렬의 파면을 상신케 하였다.²⁴⁾ 이를 받아서 민비 수구파가 지배하는 의정부에서도 윤웅렬의 파면과 정죄를 건의하였다.²⁵⁾ 개화당에서는 왕실의 부마인 박영효를 북청에 내려보내 북청양병의 실태를 직접 시찰케한 후 북방 변경의 방어를 위해서도 신식 군대가 잘 양성되고 있음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수구파의 공격을 물리쳤다.

민비 수구파에서는 다시 수구파 거물 尹泰駿이 배후에서 교사하여 함경도 지방유생들을 다수 동원해서 윤웅렬이 이 지방 鄕憲碑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웅렬의 파면을 청원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하게 하였다.26) 한편 개화당 에서는 박영효를 함경남병영에 파견하여 혐지에서도 대책을 수립케 하고,27)

^{20) 《}尹致昊日記》, 1883년 10월 5일.

^{21) 《}尹致昊日記》, 1884년 5월 21일.

^{22) 《}南兵營啓錄》, 고종 20년 11월 25일 및 12월 29일.

^{23) 《}南兵營啓錄》, 고종 20년 12월 29일.

^{24) 《}尹致昊日記》, 1884년 5월 8~11일.

[《]高宗實錄》. 고종 21년 5월 14일.

^{25) 《}高宗實錄》, 고종 21년 5월 21일.

^{26) 《}高宗實錄》, 고종 21년 5월 28일. 《尹致昊日記》, 1884년 5월 23·24일.

^{27) 《}尹致昊日記》, 1884년 윤5월 15일.

서울에서는 윤웅렬의 아들 尹致昊가 국왕의 측근에서 출입하면서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아버지 윤웅렬을 옹호하였다.²⁸⁾ 결국 국왕은 수구파들의 윤웅렬 파면요청을 윤허하지 않았다.²⁹⁾

그러나 수구파들도 이 문제에서만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중앙의 관리들을 다수 동원하여 윤웅렬 파면상소를 올리게 하였고,³⁰⁾ 함경도 지방유생들에게 도 배후 조종하면서 윤웅렬 파면과 정죄요청의 상소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³¹⁾ 민비 수구파가 이와 같이 집요하게 윤웅렬 파면운동을 전개한 것은 개화당의 북청양병을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윤융렬의 아들 윤치호가 국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김 옥균을 비롯한 개화당 요인들과 거의 매일 협의해 가면서 국왕에게 수구파 들의 윤치호 파면요청의 부당성과 윤웅렬의 양병의 정당성을 국왕 측근에서 매우 잘 설명했기 때문에, 국왕은 수구파의 집요한 윤웅렬 파면요구를 일축 하여 거절하고 계속 양병과 북방경비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개화당은 정변 준비의 한 요소도 되는 북청에서의 500명 신식 군대의 양성에 성공하게 되었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 500명 북청군대를 서울로 불러 올려 왕실호위의 임무를 맡기느냐의 과제만 남게 되었다.32)

셋째, 김옥균 등이 일본의 陸軍戶山學校에 파견해서 유학시킨 사관생도들이었다. 일본에서는 아직 대학급 사관학교는 설립하지 못하고 육군호산학교를 설립하여 서양교관들도 초빙해서 일본 신식 육군의 장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김옥균은 徐載弼・鄭蘭教・朴應學・鄭行徵・林殷明・申重模・尹泳觀・李圭完・河應善・李秉虎・申應熙・李建英・鄭鍾振・白樂雲 등 14명을 선발하여 1883년 이른 봄에 일본 육군호산학교에 유학시켰다.33) 이들 사관생도의대표는 서재필이었으며, 김옥균은 일본에 건너갔을 때마다 이 사관생도들을 매주 1회 불러서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설명하고 결속을 다졌다.34)

^{28) 《}高宗實錄》, 고종 21년 윤5월 초5일.

^{29) 《}尹致昊日記》, 1884년 윤5월 초2일,

^{30) 《}高宗實錄》. 고종 21년 윤5월 초10일.

^{31) 《}高宗實錄》, 고종 21년 윤5월 초10일 및 6월 초6일.

³²⁾ Shin, Yong-Ha, 앞의 글(1993).

³³⁾ 金玉均, 〈甲申日錄〉, 1884년 양력 12월 4일(全集, 86쪽).

또한 사관생도 신중모도 갑신정변 후 체포되어 심문에 공술할 때, 서양 각국은 모두 독립국가이며 독립국가이어야 다른 나라와 화친할 수 있다. 조선도 독립국가가 되어 서양 여러 나라와 같은 대열에 서야 한다고 김옥균이말하였다는 것이다. (35) 김옥균 등 개화당이 유학시킨 사관생도 14명은 약 1년 6개월의 신식 사관교육을 받았을 때, 정변 단행이 결의된 후인 1884년 6월에 모두 귀국하여 갑신정변의 중요한 무력이 되었다.

넷째, 개화당이 조직한 비밀결사 '충의계'의 장사와 군인 장교들이다. 김옥 균은 정변을 준비하기 위한 비밀무력조직으로 '충의계'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서 신복모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충의계'의 결사대원은 장사 30명과 친군영 전영군인 13명 등 43명이었다고 한다.36) '충의계'에는 13명의 친군영 전영장교들이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신복모의 지휘하에 친군영 전영은 심지어 민비 수구파 전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도 실제로는 개화당이 지휘하는 개화당의 군대였다.

'충의계'는 죽음을 각오한 계원들의 철저한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당시 민비 수구파들은 '충의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친군영 전영의 장교들이 '충의계'에 가입하여 개화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충의계'의 장사와 군인들은 정변의 중요한 무력이 되었다. 김옥균을 지도자로 한 개화당은 1883년 봄부터 정변의 무력 준비로서 광주군대 500명 (친군영 전영군대), 북청군대 500명, 사관생도 14명, '충의계' 43명 등 약 1,050명의 개화당의 무력을 양성해 둔 것이었다.

(2) 정변 단행의 결정

김옥균 등 개화당은 정변의 방법을 예견하여 무력을 준비하고 개화당세력의 확장을 위해 진력하면서도 1883년 말까지는 정변 단행을 확정하지는 않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개혁을 집요하게 추진했었다. 김옥균 등 개화당이 '정변'을 단행하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1884년 음력 7~8월(양력 8~9월)

³⁴⁾ 徐載弼、〈回顧甲申政變〉(閔泰瑗 著、《甲申政變과 金玉均》, 84~85쪽 참조).

^{35)《}推案及鞫案》324型,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そ의 申重模供述.

³⁶⁾ 金玉均, 〈甲申日錄〉, 1884년 12월 1일(全集, 72쪽).

이었다. 국제정세가 '정변' 단행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청국과 프랑스 사이에 안남문제를 둘러싸고 '청·불전쟁'의 조짐이 보이자, 청국은 이에 대한 대비로 서울에 주둔시킨 3,000명의 청군병력 중에서 1884년 5월 23일 절반인 1,500명을 빼내어 안남전선에 이동시키고, 서울에는 이제 청군이 1,500명만 남게 되었다.37) 이것은 청군을 조선에서 몰아내어 청국의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에서 벗어나려고 노리는 김옥균 등 개화당에게 유리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어서 1884년 8월에 마침내청・불전쟁이 발발하여 프랑스함대가 청국의 福建함대를 격파하였다. 김옥균등 개화당은 이 때가 정변을 일으킬 시기의 도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국이 안남전선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면서 또 조선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하여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만들 여력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옥균은 이 무렵인 1884년 8월 2일 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를 방문하여 '정변'을 단행하고자 한 결정과 배경적으로 연결된 듯한 말을 하고 돌아갔다.

저녁 때 古愚(김옥균의 호)가 미국공사를 방문하여 淸·佛戰爭에 대해 이야 기했는데 '우리 나라의 獨立할 기회가 어찌 이 때에 있다 하지 않겠는가'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갔다(《尹致昊日記》, 1884년 8월 3일).

김옥균 등은 이 무렵에 민비 수구파로부터 극도의 위협을 받고 더 물러서 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 윤치호는 이에 대해 "古愚 金玉均도 만났는데 들으니 여러 민씨들이 古愚를 집어 삼키려 하여 마지않는다고 한다. 한 탄스럽고 한탄스럽다"38)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옥균 등 개화당의 정변 단행의 결정이 '개화당의 독자적 결정'이며, 일본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개화당이 정변단행을 결정한 것은 5월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7·8월에 확정된 것이었고, 일본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가 일본에 휴가갔다가 서울에 귀임한 것은 1884년 음력 9월 12일이었다. 갑신정변의 거사 결정은 일본측과는 전혀 관계없이조선 개화당이 주체적으로 단독 결정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옥균 등 조

^{37) 《}尹致昊日記》, 1884년 4월 23일 참조.

^{38) 《}尹致昊日記》, 1884년 5월 25일 참조.

선 개화당이 정변을 단행하려는 결정을 내릴 시기에는 일본공사관측은 민비수구파에게 호의적이었고 개화당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 형편을 김옥균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사세로 볼지면 잠시를 弛緩할 수 없는 터이다. (日本)公使가 오기 전에 우리 당에서는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원조 여부는 본래 생각지 못했을 뿐 아니라 公使가 다시 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도리어 걱정을 했다(〈甲申日錄〉, 1884년 11월 25일).

밤에 朴泳孝・洪英植・徐光範 3君이 내회하였다.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상의하여 말하되, 우리들의 一擧할 계획이 결정된 후에 竹添의 適來로 우려하였더니 돌아와서는 거동이 크게 변하여 도리어 우리의 세력에 찬성하는 기색을 보이니 전일의 疑憂에 비하여 그 변화가 어떠한가(〈甲申日錄〉, 1884년 11월 1일).

김옥균 등 개화당이 갑신정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변 단행의 결정'을 완전히 개화당 단독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했으며, 일본측과는 전혀 관계없이, 도리어 일본측의 방해를 우려하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갑신정변의 주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며, 갑신정변에 대한 오해를 일부 해소시켜 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3) 북청군대의 상경과 일부 유경

개화당은 정변 단행의 결정을 내린 전후에 준비한 정변 무력을 서울에 집중시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개화당은 1884년 6월 8일(양력 7월 29일) 일본에 유학시킨 서재필 등 14명의 사관생도들을 귀국시켰다.

개화당은 이와 동시에 윤웅렬이 함경남병영에서 양성한 북청군대를 서울로 불러올려 정변 무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옥균이 1884년 6월 19일(양력 8월 9일) 윤치호를 불러 모종의 밀의를 한 후, 윤치호는 바로 궁궐로 들어가 국왕에게 "가친(윤웅렬)이 技藝가 精研한 병대 100명을 뽑아 상경 입감시킨 뒤 환송시키거나 諸營에 分置코자 하는데 청허하심이 어떠하옵니까"39)라고 요청하여 "뽑아 올리게 하라"는 윤허를 받았다. 또 이자리에서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귀국한 사관생도를 수용하는 일도 건의하였

다. 국왕이 북청군대의 선발과 상경을 윤허했으므로 윤치호는 이를 함경남병 영의 부친 윤웅렬에게 알렸다.⁴⁰⁾

윤치호가 7월 23일(양력 9월 12일) 입궐했을 때에는 국왕으로부터 '장차 너의 아버지를 시켜 北兵(북청군대)을 거느리고 상경케 할 계획이라'41)는 말을들었다. 윤치호는 이튿날 북청의 윤웅렬에게 긴급히 소식을 알리고, 김옥균을 방문해 보고하면서 이 날 밤에는 김옥균의 집에서 잤다.42) 국왕이 북청군대의 상경을 결정한 약속을 지키자 김옥균과 윤치호는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왕은 나흘 뒤인 7월 27일 윤웅렬을 摠戎中軍에 임명하여,43) 친군영 전영 正領官의 직책을 주고, 함경남병영에서 새로 조련한 북청군대를 상번시키도록 인솔하여 상경할 것을 명령하였다.44) 마침내 북청군대 상경의 국왕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국왕에게 예궐했다가 이 명령을 받은 윤치호는 흥분하여 그 길로 김옥균의 집으로 달려가서 보고하고 또 하룻밤을 김옥균의 집에서 묵으며 밀의하였다.45)

윤웅렬은 마침내 470명의 북청군대를 인솔하고 1884년 9월 5일(양력 10월 23일) 서울에 도착하여 우선 친군영 전영에다 주둔시켰다.46) 드디어 개화당은 북청군대를 양성하여 서울로 데려오는 지난한 일까지 성공한 것이었다. 국왕은 9월 10일에는 북청군대의 군사훈련을 친히 관람하고 그 씩씩함에 칭찬과 경탄을 마지않았고 윤웅렬의 노고를 치하하였다.47) 여기까지는 김옥균등 개화당이 크게 성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낀 수구파들은 북청군대를 모두 돌려보내고 빼앗기

^{39) 《}尹致昊日記》, 1884년 6월 19일(양력 8월 9일).

^{40) 《}尹致昊日記》, 1884년 6월 19・21일.

^{41) 《}尹致昊日記》, 1884년 7월 23일.

^{42) 《}尹致昊日記》, 1884년 7월 24일,

^{43)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년) 음력 7월 27일.

^{44)《}承政院日記》, 고종 21년 7월 27일.《漢城旬報》34호, 1884년 8월 초1일, 〈諭旨恭錄〉.

^{45) 《}尹致昊日記》, 1884년 7월 27일.

^{46) 《}尹致昊日記》, 1884년 9월 5일.

^{47) 《}尹致昊日記》, 1884년 9월 10일.

위한 반격활동을 비밀리에 맹렬히 전개하였다. 실제로 수구파들은 민비를 배경으로 하여 이 무렵 공식적으로는 이미 중앙의 군사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민비 수구파의 활동에 의해 국왕은 1884년 8월 26일 친군영의 전영ㆍ후영 2영을 전・후・좌・우의 4영으로 확충 개편하고 종래 지휘관의 명칭인 '監 督'을 '營使'로 바꿈과 동시에 '군무당상'까지 겸하게 하고. 전영사에 韓圭稷. 후영사에 尹泰駿, 좌영사에 李祖淵, 우영사에 閔泳翊을 임명하여 군권을 모두 민비 수구파가 지휘하도록 하였다.48) 정계의 실권은 민비를 정점으로 하여 閔 台鎬・閔泳穆・閔泳翊・閔泳韶・閔應植 등 5閔과 이에 야합한 이조연・한규 직·유태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개화당으로서 1884년 봄 이후 기용된 경우는 우정국 총판에 洪英植(3월), 승정원 동부승지에 徐光範(6월), 귀국한 사관생도장 徐載弼이 조련국 士官長(6월)에 임명된 정도였다. 민비 수 구파들은 이와 같이 군권에 이르기까지 실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청군대를 돌려보내기 위해 국왕의 신임이 매우 두터우며 개화당에 가담해 있던 환관 柳 在腎을 포섭하였다. 유재현은 당시까지 개화당의 요인의 하나로서 김옥균・유 치호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던 인사였다.49) 그러나 유재혂이 수구파의 공 작으로 그 사이에 결국 변절하여 한규직에게 조종당해서 국왕에게 "지방의 軍心은 측량하기 어렵고 또 들으니 유웅렬은 총 메고 탄알 장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치호가 내응한다면 일이 매우 염려되니 북병의 조련을 보지 않음 만 같지 못하다"50)고 마치 북청군대ㆍ윤웅렬ㆍ윤치호의 국왕 암살 가능성까 지 망상하면서 모략 참소하였다. 《유치호일기》에서는 이것이 한규직(친구영 전영사)ㆍ이조연(친군영 좌영사)ㆍ윤태준(친군영 후영사)ㆍ민영익(친군영 우영사) 등 4영사가 비밀리에 작간하여 개화당과 윤웅렬의 진로를 저지하려고 배후 조종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왕은 처음에는 환관 유재현과 수구파의 참소를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왕은 북청군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70명을 선발하여 모두 武科를 내리

^{48) 《}高宗實錄》, 고종 21년 8월 26일.

^{49) 《}尹致昊日記》, 1884년 7월 28일.

^{50) 《}尹致昊日記》, 1884년 9월 11일.

고 상을 주었다.51)

그러나 수구파의 참소와 특히 신임하는 환판 유재현이 매일 시종하면서 모략하고 설득하므로 국왕은 마침내 동요하게 되었다. 국왕은 9월 15일 명령 하기를 "前南兵營 병정들이 모두가 오래 주둔하는 것은 심히 민망한 일이므 로 그들을 輪回하여 상번시켜라"52)는 전교를 내리었다. 이것은 상경한 470명 의 북청군대 중에서 일부만 서울에 남게 하고 일부는 북청으로 돌려보내 교 대로 상번케 하라는 명령이었다. 국왕의 이 명령은 개화당에게 매우 큰 타격 을 준 명령이었다.

개화당은 천신만고 끝에 북청에서 군대를 양성하여 470명을 서울로 불러올렸는데 국왕이 갑자기 일부만 서울에 남게 하고 북청으로 돌려보내라니, 정변의 무력 준비에 결정적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개화당 중에서도 윤웅렬은 매우 당황하였다. 국왕의 교대 상번명령이 내려진 이튿날인 9월 16일 윤웅렬은 아들 윤치호를 불러 밀의한 결과, 국왕의 정변 지지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옥균 개화당의 급진정변은 시기상조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합의하였다.53)이에 윤웅렬은 9월 17일 서울에 데려온 470명의 북청군대 중에서 70명만 서울에 남겨 놓고 무려 400명을 북청으로 돌려보냈다.54) 250명만 북청으로 돌려보내도 될 것을 윤웅렬이 400명이나 돌려보낸 것은 정변의 실패를 내다보고 보신을 위해 정변 준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55)

김옥균 개화당은 동지라고 믿었던 환관 유재현에게 배신당하여 470명의 북청군대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고, 이어서 윤웅렬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51) 《}尹致昊日記》, 1884년 9월 14일.

^{52) 《}高宗實錄》, 고종 21년 9월 15일.

^{53) 《}尹致昊日記》, 1884년 9월 16일.

^{54) 《}尹致吴日記》, 1884년 9월 17일,

^{55) 《}尹致吴日記》, 1884년 10월 10일.

뿐만 아니라 尹雄젰은 정변 1주일 전에 親軍營前營 正領官 직책을 스스로 자퇴하였으므로 前營使 韓丰稷이 이를 수리하였다.

[《]尹致昊日記》, 1884년 10월 21일에는 정변 도중에 開化黨이 尹雄烈부자를 배신자로 간주하여 처단하려 하다가 尹致昊가 미국공사관 主事로 근무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보류했었다고 高宗이 尹致昊에게 말해주고 있다.

70명만을 서울에서 갖게 되었다.56) 국왕으로부터 무과 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고 상을 받은 북청군대의 성적 우수한 정예가 70명이었는데, 이들을 서울에 남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개화당이 500명의 북청군대를 양성하여 그 중 470명을 서울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해 놓고서도, 유재현의 배신과 윤웅렬의 이탈로 마지막 순간에 400명을 돌려보내고 70명의 북청군대만을 정변에 활용하게 된 사실은 국왕을 둘러싼 신임 경쟁에서 수구파가 승리하고 개화당이 패배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나 개화당은 70명의 북청군대 최정예 군인을 정변에 투입했으므로 북청군대 양성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 남게 된 북청군대 70명이 어디에 배속되었는지 기록상으로는 명료하지 않다. 친군영 후영을 신설하라는 국왕의 명령이 정변 얼마 전인 7월 22일 처음 나왔고, 갑신정변 도중에 후영 병정이 정변을 수호하기 위한 外衛를 담당했으며,57) 북청군대의 보호와 상경에 깊숙히 관여하여 북청 남병영에 두번이나 내려갔던 박영효가 정변 도중에 친군영 전영사 겸 후영사가 되어 이를 지휘한 것을 보면,58) 이 70명의 북청군대는 친군영 후영에 배속된 것으로보인다. 박영효는 그 후 회고담에서 개화당이 준비한 무력이 친군영 전·후영 1,000명이라고 하였다.59) 당시 1영의 병력은 500명이었다.

개화당은 친군영 전영 500명 전원을 스스로 양성하여 완전히 장악하였고, 친군영 후영 500명은 그 중 70명의 북청군대를 양성하여 이를 중핵으로 하 고 신설 편입한 430명의 다른 조선군을 장악해서 합하여 지휘한 것이었다.

(4) 일본공사관 호위용 일본군의 차병

개화당이 정변 단행을 결정하여 정변 준비에 박차를 가한 약 1개월여 후 인 1884년 9월 12일 그 동안 일본에 장기휴가를 갔던 일본공사 다케조에(竹 添進一郎)가 서울에 귀임하였다. 다케조에는 이전에는 김옥균 등 개화당에 매

⁵⁶⁾ 柳在賢은 정변 직후 北靑軍隊를 돌려보내도록 참소한 배신자로 지목되어 徐 載弼에 의해 정변 현장에서 斬殺되었다.

^{57) 《}尹致昊日記》, 1884년 10월 17일.

^{58) 〈}甲申日錄〉, 1884년 양력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⁵⁹⁾ 朴泳孝,《東亞日報》, 1930년 1월 5일,〈韓末政客의 回顧談〉.

우 적대적이었으며, 민비 수구파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다케조에는 서울에 귀임하자마자 종래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어 친청사대 수구파와 청국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김옥균 등 개화당에게 호의를 보였다. 김옥균이 다케조에에게 "그대의 이유없는 의심으로 우리의 大計가 모두 실패했다"고 낱낱이 설파하며 비판해도, 다케조에는 일국의 정략은 수 시 응변하는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응답하며 앞으로는 귀측의 '개혁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접근해 왔다.60)

김옥균은 처음에는 다케조에의 접근과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수신사 박영효와 함께 김옥균이 1882년 일본에 갔을 때 일본정부는 여러 가지호의를 보이며 조선국왕의 國債委任狀을 가져오면 300만 엔의 차관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김옥균이 귀국하여 국왕의 국채위임장을 받아갖고 1882년 7월 다시 일본에 갔더니 몇 달 사이에 일본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바뀌어 이를 거절하고 이노우에(非上馨)는 김옥균을 냉대하였다.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의 군비확장에만 총력을 기울일 뿐 조선 개화당과의 약속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김옥균은 조선국왕의 국채위임장을 갖고 일본주재 미국공사관과 영국공사관을 통하여 세관수입을 담보로 미·영금융기관으로부터라도 개혁자금으로 사용할 차관을 빌리려고 접촉했더니, 1883년 12월부터 본국에 장기휴가로 와 있던 다케조에가 김옥균의 국채위임장을 위조품이라고중상하고 방해하여 모두 실패했었다.(61) 김옥균이 1884년 3월 빈손으로 완전실패하여 귀국하자 민비 수구파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개화당을 핍박하였다.다케조에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접근해 오더라도 김옥균은 이를 신뢰할 수 없어서 박영효에게 다케조에를 만나 보도록 하였다.

다케조에는 박영효에게 "청국이 장차 망할 것이니 귀국의 개혁지사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⁶²⁾고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일본공사의 이러한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일본에서 이전에 정한론자였던 고토(後藤象次郎) 등의 自由黨은 청국과 프랑스가 갈등하는

^{60) 〈}甲申日錄〉, 1884년 10월 31일(全集, 33쪽).

^{61)〈}甲申日錄〉, 前文,

^{62) 〈}甲申日錄〉, 1884년 11월 1일(全集, 36쪽).

시기에 일본은 조선에서 개화당을 지원하여 청국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자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1884년 8월에 안남문제로 청·불전쟁이 일어나자일본 외무대신 이노우에가 이 정책을 채택하여 정책전환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노우에는 다케조에의 서울 귀임을 독촉하면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청국에 대항하는 개화당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다케조에는 9월 15일(양력 11월 2일) 입궐하여 국왕 알현 때에는 '제물포조약'에서 정한 임오군란 때의 '손해배상금' 잔액 40만 원을 환납하는 호의를 보이면서, 조선의 내정개혁 자금으로 전용해 달라는 일본정부의 의사를 상주하였다. 또 국왕에게 국제정세를 설명하면서 이번 청·불전쟁에서는 청국이반드시 패배할 것이니 이 기회에 조선은 국정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상주하였다. 다케조에는 이튿날 일본공사관에서 연회를 열고는 참석한 청국영사 陳樹棠을 외교관들과 귀빈들 면전에서 '무골해삼'이라고 모욕하는 경망스러운 언동을 하여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63) 또한 그는 수구파 거물 윤태준의 면전에서 그와 친청 수구파 거물들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개화당은 9월 17일 밤 박영효의 집에서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 등이 모여서 일본측의 정책·태도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일본의 개화당 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이 사실이면 이를 수용하여 활용하기로 합의해서, 우선 시마무라(島村久)공사대리를 박영효의 집으로 불러 일본의 정책을 상세히 들었다. 이어서 9월 20일(양력 11월 7일)에는 바둑대회를 구실로 김옥균과 다케조에가 직접 만나 조선 개화당이 거사를 하는 경우에 일본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⁶⁴⁾ 다케조에가 서울에 귀임한 지 8일 만에 조선 개화당과 주한일본공사관이 결탁한 것이었다.

김옥균 등 개화당이 일본측으로부터 지원받으려 한 것은 주한일본공사관 호위병으로 와 있는 일본군 150명과 약간의 자금이었다. 개화당의 전략전술로서는 정변에 일본군을 끌어들여 국왕 호위의 임무를 주면, 남방에서 청·불전쟁을 하고 있는 청국으로서는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1,500명의 청군으로 조선국왕 호위 중의 일본군을 공격해서 청·일전쟁이나 청·일충돌을 일으

^{63) 〈}甲申日錄〉, 1884년 11월 2일(全集, 38쪽).

^{64) 〈}甲申日錄〉, 1884년 11월 7일(全集, 42쪽).

킬 수 없게 되어, '以夷制夷'로서 외세 청군은 외세 일본군으로 방어하고 국내 수구파는 국내 개화당이 맡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개화당은 청군과 수구파에 대항키 위해 다시 1,050명의 조선군을 비밀리에 장악했으니 정변은이 기회를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옥균과 다케조에는 10월 8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① 김옥균이 일본군(공사관 호위병 150명)을 국왕 호위에 투입하고자 하는데 결정 후 變作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다케조에는 호위 요청의 국왕 친서가 있으면 투입하겠다고 합의했다. 친서 전달자는 박영효로 하기로 내약하였다. 다케조에는 청군 1,000명이 공격해 들어와도 일본군 1개 중대가북악에 의거하면 2주간, 남산에 의거하면 2개월간 수비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② 김옥균이 약간의 자금차용을 제의한 데 대하여, 다케조에는 '300만원'의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옥균이 수백만원은 불요하고 수십만원의 차용이면 당장은 족하다고 하니, 다케조에는 그 정도는 재한일본상인으로부터라도 당장 현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甲申日錄〉, 1884년 11월 25일, 全集, 58~63쪽)

또한 김옥균은 일본군의 역할은 청군에 대항하여 국왕을 호위하는 일뿐이요, 개화당이 조선 내정이나 수구파 처리문제를 담당한다고 하여 일본공사의 합의 를 얻었다.⁶⁵⁾ 정변 후의 일본측의 만일의 간섭에 대한 예비를 위한 것이었다.

개화당과 주한일본공사관이 결탁한 후 개화당은 이를 비밀리에 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본공사 다케조에는 경솔경망한 자로서 기회있을 때마다 청국측과 수구파를 매도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다녔다. 심지어 9월 24일(양력 11월 11일) 밤에는 조선정부에 아무런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일본군이 남산밑에서 포성을 울리게 야간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조선조정·서울시민·청군측을 모두 놀라게 하였다.66) 국왕의 조사명령을 받은 김옥균이 다케조에를 힐문했더니, 다케조에는 "청국인과 조선인이 놀랐다니 의외이다"고 하면서야간 비상훈련은 사전 보고가 어렵다고 방자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청

^{65) 〈}甲申日錄〉, 1884년 11월 25일(全集, 62쪽).

^{66) 〈}甲申日錄〉, 1884년 11월 12일(全集, 44쪽).

군측은 그 이후 긴장하여 원세개의 지휘하에 야간에도 군장을 하고 취침시키는 등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상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서울 시내에서는 일본군과 청군의 대립과 긴장이 더욱 격화되었다. 개화파로서는 거사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5) 국왕의 밀칙 획득

김옥균 등 개화당으로서는 정변을 일으킴에 당하여 국왕의 승인과 가능하면 '密勅'·'密書'를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군주제하에서 그래야만 '정변의 정당성'이 확고히 백성들에게 설명되기 때문이었다. 김옥균은 이를 잘알고, 〈朝鮮改革意見書〉에서 '평화행사'의 방법과 '무력행사'의 방법을 거론하면서, 무력행사의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왕의 密意에 의탁'하면서 무력행사를 해야 함을 일찍이 설파한 적이 있었다.67)

김옥균은 1884년 10월 12일(양력 11월 29일) 국왕과 독대한 기회를 포착하여 국제정세의 급박성에 대해 청·불전쟁 발발, 러시아의 극동침략, 청·일 전쟁 발발, 조선의 급박한 위기 등을 긴박하게 설명하고, 나라를 보전하기위해 청의 간섭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과 과감한 개혁단행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주상한 후에 마침내 국왕의 '밀칙'을 문서로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甲申日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청·불의 교전으로부터 아뢰되 청국은 아직 러시아의 침략(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또 벌써 십수년 이래로 여러 나라의 동양에 대한 정책이 급변해서 동양 여러 나라들은 오직 舊規를 지켜서만은 편안히 숨어 自守의책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뢰고…통절하게 一論하였다. 그 때 뜻밖에 곤전(민비)께서 내실에서 나오시며, '내 경의 말을 처음부터 다 들었다. 사세의 절박함이 이미 이러할지면 그 대책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국왕께서도 또한 간절히하문하셨다. 나는 아뢰되, '다케조에가 처음에는 신과 의론이 맞지 아니하와 그저해를 많이 받았사음은 이미 통촉하시는 바이나, 다케조에가 다시 온 후로부터는 도리어 신에게 친절히 접근해 와 터놓고 의사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신은이것이 일본의 政略이 전날과는 갑자기 변한 까닭인가 하옵니다. 따라서 청·

⁶⁷⁾ 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全集, 111~112\).

일의 擧兵이 머지않은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선은 청・일전쟁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무슨 모책으로 이것을 면하겠나이까' 국왕과 곤전께서도 깊이 동의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부로, '만약 청국과 일본이 교전한다면 그 승패 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아뢰되. '그 최후의 승패는 지금 예측할 수 없사오나 만 약 불란서와 합체하게 되면 그 승리는 단연 일본에 있다 하겠나이다' 국왕은 가로되, '그러면 우리 나라의 독립책도 역시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나는 아뢰 되, '聖敎와 같사옵니다. 그러나 폐하의 측근 신하들이 모두 청국을 우러러보아 그 주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일본이 비록 독립에 돕고자 하들 어찌할 도리가 있겠나이까. 신의 말에는 생사가 달렸사오나 나라의 위망이 조석에 달린 이 때 신의 일신의 안위는 돌아볼 틈이 없나이다' 폭포같은 아룀이 여기에 이름에 곤 전께서, '경의 말은 아마 나를 의심하는 듯 하나 그러나 일이 나라의 존망에 관 계되는지라 나는 일 부인으로써 어찌 大計를 그르치게 할까보냐. 경은 숨기지 마라'(나는 實과 虛를 알 수 없다) 국왕께서 가로되. '경의 마음을 나는 잘 알 고 있다. 무릇 나라의 大計와 위급한 때를 당하여 경의 籌謀에 일임할 터이니 다시 의심치 말지어다' (이것은 實心이고 實語이다) 나는 아뢰되, '신으로서는 감히 당할 수 없사오나 오늘 이 밤의 聖敎는 정녕 귀에 있사오니 어찌 감히 어 기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친서의 密勅을 내려주시오면 신의 신상에 항 상 모시겠습니다'(국왕께서) 즉시 勅書를 쓰시어 수결하시고 옥새를 찍어서 내 려 주시었다(〈甲申日錄〉, 1884년 11월 29일, 全集, 64~67쪽).

김옥균이 국왕의 '친서의 밀칙'을 받았다는 이 기록은 김옥균 자신이 쓴〈갑신일록〉의 기사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변 실패 후 국왕이 청군과 수구파대신들에게 받은 대접이나 개화당의 일관된 주장으로 보아서 '국왕의 친서의 밀칙'을 이 때 김옥균이 획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단지 국왕의 '친서의 밀칙'의 내용이 직접 '정변'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김옥균이 과장하여 아뢴 청・일전쟁 발발 때의 '임기응변의 대권'을 위임한 추상적내용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김옥균은 국왕으로부터 '친서의 밀칙'을 받아 몸에 지녔으므로, 정변에 일 단 성공하기만 하면 온 나라에 정변의 정당성을 국왕의 '밀칙'을 빌려 설득 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6) 행동계획의 최종 정리

김옥균 등 개화당은 1884년 10월 11일에서 10월 14일에 걸쳐 정변의 거사

에 대한 행동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여 점검했는데, 이를 〈갑신일록〉에서 추려 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洪英植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국 건물 낙성식 날을 擧事日로 한다. 홍영식은 수구파 4營使(韓圭稷・尹泰駿・李祖淵・閔泳翊)의 유고 유무를 탐지하여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회 일자를 정하되 3일 이내로 한다(후에 10월 17일 오후 시로 정했음).
- ②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 도중 別宮에 불을 질러서 거사의 신호로 한다. 別宮에 불이 나면 4營使는 직책상 불을 끄러 화재현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때 4영사 등 수구파 요인을 처단한다. 수구파 1인에게 하수인 2인씩을 배정하되, 하수인은 각각 단검 1자루와 단총 1자루씩을 휴대한다.
- ③ 別宮에 불지르는 일은 李寅鍾이 총책임을 맡고, 李圭完·林殷明·尹景純·崔殷童 등이 함께 석유를 뿌려 수행한다.
- ④ 수구파 4영사의 처단에 대해서는 閔泳翊을 尹景純·李殷種이, 尹泰駿을 朴三龍·黃龍澤이, 李祖淵을 崔殷童·申重模가 담당한다. 만일 이들이 실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일본인 3명에게 조선옷을 입혀 예비로서 수구파 1명에게 1명씩 배정한다.
- ⑤ 별궁 발화 후 수구파의 도래를 기다려 개화파 장사들을 지휘 호령하는 임무는 연장자인 李寅鍾과 李喜禎이 맡는다. 이들의 통신연락과 왕래정찰은 柳赫魯와 高永錫이 담당한다.
- ⑥ 대신들과 別入侍가 출입하는 金虎門 밖에는 申福模가 지휘하는 개화당동 지 장사(忠義契) 43명을 매복시켰다가 閔台鎬・閔泳穆・趙寧夏 등이 화재에 대한 문안차 입궐하면 즉시 처치한다.
- ⑦ 대궐 안의 내용으로는 친군영 전영소대장 尹景完이 청병하여 당번을 천연시키다가 거사 당일 밤에 숙직을 자청한 후, 대궐 밖의 거사에 호응하여 친군영 전영 병사 50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비상선을 넘어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자가 있으면 처치한다.
- ⑧ 顧大嫂(42세의 중년부인으로 신체의 건대함이 남자 이상이요, 완력이 남자 5·6명을 당할 수 있는 궁녀로서 10년 전부터 개화당에 궁궐내 정보를 알려주던 궁녀)라는 별명을 가진 궁녀로 하여금 준비해 준 폭발약을 대궐 밖의 火光을 신호로 하여 通明殿에서 폭발시켜 폭음과 섬광을 내게 한다.68)
- ⑨ 金奉均과 李錫伊이로 하여금 준비해 준 화약을 갖고 仁政殿 행랑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다가 개화당 요인들이 입궐할 때 폭발시켜 폭음으로 성세를 돕

⁶⁸⁾ 李光麟, 앞의 책(1973) 30쪽에 의하면, 顧大嫂는 정변 후에 희생되었다는 궁녀 李禹石이라고 추정되고 있다(《金玉均傳》상, 古筠記念會, 421쪽 참조).

게 하다.

- ⑩ 別宮에 불이 난 뒤 일본공사관으로부터 일본군 30명을 빌려 景祐宮과 金虎門 사이를 왕래하며 의외의 사고를 방지케 한다.
- ① 일이 일어나서 혼잡하게 되면 자기편끼리 또는 일본인과 서로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암호로 '天'자와 일본어 '요로시'를 모든 장사들에게 알린다.
- ② 정변 성공 즉시 국왕은 景祐宮으로 옮겨 모시고 삼중으로 호위하되, 內衛는 개화당 장사(충의계)와 사관생도가, 中衛는 일본군이, 外衛는 조선군(친군영전영과 후영군인)이 담당한다.

(〈甲申日錄〉, 1884년 12월 1일, 全集, 67~74쪽 기타 참조)

김옥균 등은 이상과 같은 순서로 정변을 실행에 옮기는 최종 점검을 한후 일찍이 거사일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로 정하고서도 다케조에와 일본 측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우편선 千歲丸이 인천을 출항한 뒤인 16일에야 일본측에 알려주었다. 김옥균은 다케조에가 경솔하며 변덕스러운 성품을 가졌고, 일본정부의 정책은 수시 변하므로, 일본측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정변을 누설 실패케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김옥균은 劉大致를 방문하여 거사를 독촉 받았을 때에도 일본은 '확실히 신뢰할 수는 없다'고 응답했었다. 김옥균은 천세환이 일본에 갔다가 다케조에의 보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훈령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일이 10월 20일이므로, 그 이전인 17일에 정변을 일으켜서 20일에는 이미 정변을 완결지으려고 하였다.69)

3) 개화정권의 수립

(1) 1884년 10월 17일 밤의 거사

마침내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의 거사일이 왔다. 축하연 시작 시간인 오후 7시가 가까워 오자 초청받은 축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 였다.

외국인 축하객으로는 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 미국공사관 서기관 스커더(Charles L. Scudder), 영국총영사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 청국총

^{69) 〈}甲申日錄〉, 1884년 12월 1일(全集, 68~69쪽).

판조선상무(청국영사) 陳樹棠, 봉판상무(서기관) 譚賡堯, 일본공사관 서기관 島村久, 통역관 川上立一郎, 해관 세무사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등이 참석하였다. 일본공사 竹添進一郎과 독일총영사 젬부쉬(Zembsch)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다.

내국인 참석자로는 초청자인 홍영식을 비롯하여, 錦陵尉 박영효, 독판 김홍집, 친군영 전영사 한규직, 우영사 민영익, 좌영사 이조연, 김옥균, 승지 서광범·민병석, 주사 윤치호, 司事 申樂均 등이 참석하였다. 후영사 윤태준은이 날 밤 궁중 숙직이었기 때문에 빠져서 참석자가 모두 18명이었다.70)

점옥균은 이 날 오후 4시에 우정국으로 가서 홍영식과 함께 연회준비를 점검하였다. 김옥균이 집에 돌아오니 국왕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있는 邊樹가 와서 국왕께서는 날이 밝은 뒤부터 공사를 재결하기 위해 계속 침실로가지 않았고 承候官은 2시에 入對했는데 일찍 물러가게 해서 공무를 끝내었다고 국왕의 동태를 보고하였다. 김옥균은 변수에게 계속 국왕과 궁궐의 정황을 관찰하다가 오늘밤 김옥균 자신이 대궐로 들어가는 즉시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김옥균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서재필의 집으로 가서 모여 대기하고 있는 개화당 장사들에게 행동지침을 거듭 결정하여 지시하고나니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다. 김옥균이 급히 우정국으로 달려가니 조금 늦게 도착되어서 이미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김옥균은 일본공사관 서기관시마무라(島村久)의 옆 좌석에 앉아 이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사 직전임을 알리기 위해 암호로 '그대는 天을 아는가' 하고 물으니, 시마무라는 일본 말로 '요로시' 하고 대답하였다.

이 때 김옥균에게 집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알려왔다. 김옥균이 연회장 문 밖으로 나가보니 개화당의 朴齊絅이 급히 달려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아 무리 애를 써도 별궁 방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김옥균은 다른 곳이 라도 연소되기 쉬운 초가를 골라 불을 질러서 신호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옥균이 연회장에 돌아와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신호 불빛은 없고 또 김 옥균을 찾는다고 하여 나가 보니 이번에는 유혁로가 달려와서 별궁 방화의

^{70) 〈}甲申日錄〉, 1884년 12월 4일(全集, 77~78쪽).

실패로 순라꾼들이 사방에 퍼져 다른 곳 방화도 위험하므로 여러 장사들이 연회장을 습격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옥균은 그 경우에 혼잡 속에서 외국공사를 다치게 할까 염려되니 순라꾼이 없는 곳을 아무데나 골라 불로 신호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김옥균이 긴장하여 두 번이나 출입하는 것을 민영익 등은 자못 의심하는 빛이었고, 시마무라도 매우 불안한 기색이었다. 이 때 우정국 북쪽 창문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고 떠들썩하므로 창문을 열어보니 우정국 바로 옆 거리에 불빛이 하늘에 뻗쳤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당황하여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규직이 먼저 "우리들은 장수의 소임으로 급히 달려가서 불을 끄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막 나가려는데, 민영익이 칼을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연회장 안으로 기어들어 왔다. 민영익은 김옥균이 자주 밖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눈치 빠르게 의심을 품었다가 '불이야'소리에 재빠르게 먼저 대문을 빠져 나갔는데 대기하고 있던 개화당 장사들의 칼을 맞고 돌아온 것이었다. 개화당 장사들은 서툴러 민영익을 완전히 처치하지 못하고 중상을 입힌 데 그쳤다.71) 연회장은 완전히 수라장이 되어버 됐다.

김옥균·박영효·서광범 등은 북쪽 창문으로 뛰어넘어 곧 암호로 '天'·'天'을 부르며 달리는 도중에 이인종과 서재필을 만나게 되자, 그들로 하여금 개화당 장사들을 인솔하여 경우궁 문밖에 가서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먼저 곧바로 일본공사관으로 달려갔다. 별궁 방화가 실패한 것을 보고 일본측이 변심하지 않았나 보기 위해서였다. 일본공사관에서는 시마무라가 먼저 돌아와 있다가 나오면서 "그대들은 왜 대궐로 가지 않고 이 곳으로 왔는가" 하고 물었다. 김옥균은 일본측이 변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궐로 가는 도중 운니동 어귀에 김봉균·이석이 등 개화당 장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신복모가 장사 40여 명을 여러 곳에 매복시켜 놓은 것을 보았다. 김옥균·박영효·서광범은 금호문으로 김봉균·이석이를 데리고 들어가 그들에게 인정전 아래 화약을 묻은 데로 보내서 30분 후에 폭발시키도록 하였다.

⁷¹⁾ Fred H.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pp. 23~25 참조.

김옥균 등이 앞을 막는 武監을 호령하여 물리치고 편전 앞 합문 밖으로 나아가니 윤경완이 전영 병정 5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편전 안으 로 들어가니 국왕은 이미 침실에 들었으므로 가로막는 환관 柳在腎을 시켜 국왕께서 급히 일어나시도록 청하게 되었다. 국왕이 침실로 김옥균·박영 효ㆍ서광범을 부르면서 무슨 사변이 일어났는가를 물었다. 김옥균 등이 우정 국의 사변을 아뢰고 잠시 다른 궁궐로 옮길 것을 청하였다. 민비가 김옥균에 게 "사변이 청국측에서 나왔는가. 일본측에서 나왔는가"를 묻고, 김옥균이 미 쳐 대답하기도 전에 홀연히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이 울리었다. 혼비백산한 국왕과 민비를 모시고 경우궁을 향해 달리는 도중에 김옥균 등은 국왕에게 "지금 이 때를 당하여 일본군사를 요청해서 폐하를 호위하도록 하면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하고 진언하였다. 다급한 국왕은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 였다. 김옥균이 잇따라 "親筆勅書가 없으면 (일본군사가) 하명하신 대로 오지 않을 듯합니다"하고 아뢰었다. 국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묻자. 김옥균 은 연필을 올리고 박영효는 백지를 내놓았다. 국왕은 창황중에 曜金門 안 노 상에서 친필로 "일본공사는 와서 집을 호위하라"고 써 주었다. 김옥균은 이 친필칙서를 박영효를 시켜 다케조에에게 전하게 하였다.72)

국왕과 왕비를 모시고 김옥균 일행이 경우궁 正殿 뜰에 이르렀을 때 곧 박영효와 다케조에가 일본군을 인솔하여 왔다. 김옥균·박영효·서광범 등은 국왕과 왕비를 정전에 편히 좌정케 한 후에 좌우에 시위하고, 서재필의 지휘하에 사관생도 13명과 개화당 장사들로 內衛를 시켰으며, 친군영 전영 소대장 윤경완에게 5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정전 뜰을 지키게 하고, 일본군 150명으로 하여금 대문 안팎을 경호하도록 했으며, 外衛로 친군영 전영·후영병사를 불러 경우궁을 지키도록 하였다. 국왕을 중심점으로 3중·4중의 철통같은 호위체제가 편성되었다. 정변은 일단 성공의 안정권에 들어선 것이었다?3)

김옥균은 이에 믿을 만한 무감 10여 명을 시켜서 경우궁 대문 밖에 나가

^{72)《}甲申日錄》, 1884년 12월 4일(全集, 82~85쪽).

^{73)《}日本外交文書》17권, 문서번호 125, 附記 明治 17年 甲申 朝鮮京城事變始末書. 352~362쪽 참조.

서 재상과 대신들 중에 변을 듣고 오는 자가 있으면 곧 이름을 먼저 들여보 내서 허가를 받은 다음 홍영식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조연이 우정국 축하연에서 도피했다가 국왕이 경우궁에 옮기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므로 들어오게 했더니, 이미 와 있는 한규직·윤태준 및 환관 유재현과 자주 쑥덕거렸다. 박영효가 이를 보고 3영의 영사들이 국왕 호위의 임무는 하지 않고 궁궐 안에서 왜 머뭇거리는가 하고 힐문하니, 먼저윤태준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윤태준이 손중문을 나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이규완·윤경순이 처단해 버렸다. 한규직과 이조연은 경우궁 후문을 나섰다가 기다리고 있던 황용택· 윤경순·이규완·고영석에 의해 처단되었다. 이에 친군영의 전·후·좌의 3 영사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우영사 민영익은 중상을 당하여 모두 처단된 것 이었다.

민영목·조영하·민태호가 각각 차례로 경우궁 정전 밖에 찾아와 명찰을 들이므로 들어오게 하여 이규완·고영석 등이 처단하였다. 수구파 영수들도역시 처단된 것이었다.

김옥균은 사람을 시켜 輔國 李載元(국왕의 4촌형)을 입시케 하여 정변과 대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더니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였다.

김옥균은 변수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어 정변을 알리고 우정국 축하연 참석자들을 위문케 하였다. 이에 미국공사는 해군사관 버너드와 윤치호를 경우궁으로 보냈으므로 정변의 대강을 설명해 보냈더니, 미국공사로부터 "사세가여기에 이르렀으니 오직 내정을 잘 개혁하시오"라는 회보가 왔다.

김옥균 등이 우선 급히 시행해야 할 政令을 국왕께 품하려 하는데, 민비는 대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환관과 궁녀 수백명이 한 방에 뒤섞여서 정변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떠들어대었다. 김옥균은 서재필을 시켜장사들로 하여금 환관 유재현을 경우궁 정전 위에 묶어 오게 한 다음, 궁 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재현의 죄목(북청군대 환송 책동과 모함 등…)을 낱낱이 드러내고 칼로 목을 베어 참살하였다. 이를 바로 눈에서 보게 된 궁 안의모든 사람들은 아연실색하여 이 때부터 개화당의 영을 한결같이 따랐다. 환관 유재현은 개화당에 속했었는데 후에 변절해서 개화당의 북청군대의 정변

투입을 방해하고, 수구파에 가담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74)

(2) 신정부의 수립

개화당은 이어서 이튿날인 10월 18일 이른 아침까지에 걸쳐 국왕에게 품하여 신정부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여러 단계의 인사발령이 있었으나,⁷⁵⁾ 최종적인 신정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領議政:李載元(マシ의 종형) 左議政:洪英植

前後營使兼左捕將: 朴泳孝

左右營使兼代理外務督辦·右捕將:徐光範 左贊成兼右參贊:李載冕(대원군의 嗣子)

東曹判書兼弘文館提學:申箕善 禮曹判書:金允植 兵曹判書:李載完(李載元의 아우) 刑曹判書:尹雄烈 工曹判書:洪淳馨(왕대비의 조카) 漢城判尹:金弘集 判義禁:趙敬夏(대왕대비의 조카) 藝文館提學:李建昌

戶曹參判:金玉均 兵曹參判兼正領官:徐載弼

都承旨: 朴泳教同副承旨: 趙同晃(대왕대비의 종손)同義禁: 閔肯植兵曹参議: 金文絃(順和宮의 아우)

平安監司:李載純(대원군의 至親) 水原留守:李熙善

說 書: 趙漢國(대원군의 외손)

洗 馬: 李埈鎔(대원군의 손자 즉 李載冕의 아들) (〈甲申日錄〉, 1884년 12월 4일, 全集, 89~91쪽)

신정부의 조직구성을 보면, 개화당과 국왕 종친(특히 대원군계열)의 연립내 각임을 알 수 있다. 신정부의 공식 수반인 영의정에는 대원군의 친조카이며 국왕의 사촌인 이재원을 추대하여 왕실과 종친을 높이고, 개화당의 대표로는 홍영식을 신정부의 공식 차석인 좌의정에 임명하였다. 대원군계열의 종친과 왕실에서는 그 밖에 李載晃·李載完·李載純·李埈鎔 등을 입각시키고, 척족 으로서는 민비 일파에게서 홀대 받던 인물들을 포용하여 왕실에 호의를 보 였다.

^{74) 《}尹致昊日記》, 1884년 9월 11일(양력 10월 29일) 참조.

⁷⁵⁾ 李光麟, 앞의 책(1973), 160~164쪽.

개화당의 직책 분담으로는 대표로서 좌의정 홍영식 이외에, 김옥균이 판서 없는 호조참판에 임명되어 재정을 장악하였다. 박영효는 무력의 핵심인 군사권과 경찰권을 맡았다. 서광범은 외교를 담당하고 군사권과 경찰권을 보조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서재필에게는 군사권을 맡겨 박영효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차泳敎에게는 국왕의 도승지를 담당케 하여 국왕 시종의 책임을 맡겼다.76)

이 밖에 개화당에 동조할 수 있다고 본 당시의 온건개화파로는 金允植· 金弘集·申箕善·李建昌 등을 기용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이 정치·재정·군사·외교·국왕 비서실의 실권을 장악하고, 신정부의 수반과 다른 부서에는 대원군계열 종친들을 임명했으며, 내무·학예 직책에는 온건개화파를 포용한 연합정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김옥균이었음은 물론이다. 김옥균이 권력을 탐하여 정변 을 일으켰다는 모함을 차단하기 위해 이전에 김옥균이 맡았던 적이 있는 '戶 曹參判'을 맡은 것이었다.77) 그러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국가 재정을 호조로 통일한 그 호조의 '판서'는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어 사실상 '참 판'이 판서의 일을 하도록 배치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화당은 신정부수립 직후 11월 18일 오전 8시에 미국공사·영국총영사·독일총영사에게 친군영 전영의 병정 각 30명씩을 보내어 그들을 보호해 오게 하여 국왕을 알현시켰다. 국왕은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신정부의 수립과대개혁정치의 실시를 알렸다. 국왕의 질문에 외국 공·영사들은 "세계 모든나라에는 다 크고 작은 변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판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78)는 요지의 상주를 하고 정변에 승복했으며, 다만 외국인을 보호해줄 것을 간청하고 물러갔다.79) 개화당의 이러한 절차 시행은 신정부의 수립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76) 〈}甲申日錄〉에 의하면 무관 尹雄烈에게는 刑曹判書를 맡겼다. 개화과 군대를 양성한 尹雄烈에게 軍權을 맡기지 않은 것은 갑신정변 직전에 北靑軍隊의 과다한 還送과 친군영 전영 正領官 사임으로 개화당의 신임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7) 《}高宗實錄》, 고종 20년 10월 초7일 特擢金玉均爲戶曹參判 참조.

^{78) 《}尹致昊日記》, 1884년 10월 18일.

⁷⁹⁾ 金玉均, 〈甲申日錄〉, 1884년 12월 5일(全集, 91~92쪽).

한편 개화당의 정변에 당황한 袁世凱 지휘하의 청군측은 11월 18일 아침 개화당 지지자로 위장한 경기관찰사 沈相薰을 경우궁으로 들여보내어 민비의 밥사발 밑에 서찰을 감추어서 청군과 민비 사이의 연락에 성공하였다.800 민비는 이에 신정부가 자기세력을 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경우궁은 좁은 관계로 청군이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지형상 분리하므로 넓은 창덕궁으로의 국왕을 환궁하도록 할 필요성을 느끼게되었다. 이에 민비는 청군을 돕기 위한 내심으로 경우궁은 너무 좁아 불편하다고 창덕궁으로의 환궁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창덕궁은 너무 넓어서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서는 방어에 극히 불리한 곳이었다.

김옥균 등은 이에 11월 18일 오전 10시경에 경우궁 옆의 이재원이 살고 있는 桂洞宮으로 국왕과 왕비의 거처를 옮기었다. 이 곳은 경우궁보다는 넓으나 약간 고지여서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도 방어가 유리한 곳이었다. 민비는 계동궁이 꽤 넓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좁다고 다시 창덕궁으로 환궁하자고 요청했다. 국왕은 내용도 모른 채 민비를 지지하였다. 김옥균은 이를 거절하고, 다케조에에게도 창덕궁은 방어가 어려우니 국왕이나 왕비의 분부가 있더라도 계동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으며, 국왕과 왕비에게는 이틀 만 더 기다리면 모든 일이 정리되어 환궁하게 될 것이라고 아뢰었다.

김옥균이 잠시 계책을 의논할 것이 있어서 홍영식 및 이재원과 함께 외청에 나간 사이에 국왕은 갑자기 다케조에를 불러 창덕궁으로의 환궁을 간절히 말하니, 다케조에는 준비하여 1시간 후에 환궁케 하겠다고 아뢰었다. 김옥균이 그 말을 듣고 달려와 다케조에를 꾸짖으니, 다케조에는 수비는 일본군이 한결같이 잘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큰 소리를 쳤다. 국왕도 다케조에의 허락을 얻었다고 매우 기뻐하며 김옥균을 나무라니 어찌 할 수 없었다. 김옥균 등 개화당은 할 수 없이 국왕과 왕비 등을 모시고 11월 18일 오후 5시에 창덕궁으로 환궁하였다.

개화당은 경우궁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을 중심으로 하여 내위는 약 50명

⁸⁰⁾ 朴泳孝、〈吾等一生の失策〉(《古筠》 창간호, 15쪽 참조).

의 개화파 장사들과 사관생도들이 맡도록 하고, 중위는 150명의 일본군에게 맡겼으며, 외위는 약 1,000명의 친군영 전영과 후영의 조선군이 담당하도록 배치하였다.⁸¹⁾ 이 날 밤에는 창덕궁 대궐문을 잠그려 하는데 청군의 吳兆有 진영에서 병정을 보내어 宣仁門을 잠그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이 있었을 뿐 큰 사건 없이 넘기었다.

(3) 개화파 신정부의 혁신정강 공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신정부를 수립한 개화당(급진개화파)은 신 정부가 실시할 혁신정책의 기본강령으로서 '혁신정강'을 제정 공포하였다.

혁신정강은 국왕이 이재원의 집(계동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10월 18일(양력 12월 5일) 저녁에 승정원을 進善門 안방에 설치하고, 영의정 이재원, 좌의정 홍영식, 병조판서 이재완, 좌우영사 박영효, 호조참판 김옥균,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 서광범, 도승지 박영교 등이 협의하여 결의하였다. 여기서 결의된 것을 우승지 신기선으로 하여금 정서케 한 후 홍영식이 이를 국왕께 상주하였다.82) 신기선의 공술에 의하면 혁신정강의 결의는 김옥균이 주도했다고 한다.83)

혁신정강은 10월 18일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개화당 신정부의 위의 주요대신들과 종착대신들이 식사도 굶어 가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서 국왕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후, 10월 19일 오전 9시경에 국왕의 傳敎형식을 빌려 세상에 공포되고, 서울 시내의 중요한 몇 곳에 게시되었다. 혁신정강의 조목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많아서, 당시 서울에 체류했던 일본인 중에는 80여 개 조목이 있었다고 기록한 경우도 있다.84) 그러나 그 정확성을 알 수 없다. 현재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김옥균이 그의 〈갑신일록〉에 수록한 14개 조항뿐이다. 그러나 김옥균도 "생략하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略錄如此)"라고 하여 줄여서 기록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의 혁신

^{81) 〈}甲申日錄〉, 1884년 12월 5일(全集, 94쪽),

⁸²⁾ 愼鏞廈, 앞의 글(1984) 참조.

^{83)《}推案及鞫案》328책(奎章閣圖書),罪人申箕善鞫案(亞細亞文化社版 30책,787쪽 补圣).

⁸⁴⁾ 近藤吉雄 編,《井上角五郎傳》(1943), 58~59\.

정강의 조항들이 이보다 많았음은 명백한 것이다.

김옥균이 기록해 둔 요약된 혁신정강 14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원군을 며칠 안에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의 행사를 폐지할 것.
- ②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 ③ 전국의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 ④ 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 참으로 우수하고 재능있는 자는 등용할 것.
 - ⑤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 ⑥ 각 도의 還上제도는 영구히 폐지할 것.
 - (7) 奎章閣을 폐지할 것.
 - ⑧ 巡査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 ⑨ 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 ① 그 동안 유배·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 ① 4營을 합하여 1營으로 만들고, 營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近衛隊를 시급 히 설치할 것(육군대장은 세자궁을 추대할 것).
- ② 모든 국가재정을 戶曹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모든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 ③ 大臣과 參贊(새로 임명된 6인의 이름은 생략함)은 閤門 안의 議政府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에 왕에게 품한 다음 政令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
- ④ 정부는 6曹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 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

(〈甲申日錄〉, 1884년 양력 12월 5일, 全集, 95~96쪽)

위의 14개조 혁신정강은 너무 간략히 줄여 놓았으므로 여기서 약간의 설명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완전 자주독립의 공포

혁신정강 제1조는 개화당의 신정부가 조선왕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공포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왕조의 독립의 사정은 1882년 '임오군란'을 전환점으로 청국에 의해 크게 침해되고 있었다. 청국은 임오군란을 수습한다고하면서 3,000명의 청군을 조선에 주둔시키고, 집권자인 국왕의 아버지 대원

군을 군함에 초청해 놓고서는 그대로 청국에 납치해다가 保定府에 유폐시켜 버렸다. 이것은 그 자체가 조선왕국의 자주독립을 무시하고 유린한 만행이었 다. 그리고 청국은 조선에 주둔시킨 청군의 무력의 배경으로 종주권을 주장 하면서 조선 내정에 적극 간섭하여 조선을 실질적으로 屬邦化하려고 획책하 였다.

조선왕조는 개창 후 임오군란 이전까지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 때때로 조공허례의 의식을 행해 왔으나, 이것은 주로 국가무역을 중심 내용으로 한 의례적 형식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는 조선왕조 정부의 자주적 결정에 의거하였다. 이것은 일본과 월남을 비롯한 중국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왕국은 본질적으로 자주독립국가였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썩은 양반유생들 일부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사대적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공허례의 의식은 확고한 민족주체성의 발전을 사상적으로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오군란이후에는 청국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속방화하려고 기도한 것이었다.

당시 집권한 민비 수구파들은 임오군란으로 정권이 한 번 붕괴되었다가 청국의 구원으로 재집권했기 때문에, 청국의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으로 나라 의 자주독립이 크게 침해되고 자주근대화가 크게 저지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민씨 일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1882년 7월을 전환점으 로 해서 조선왕국의 자주독립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김옥균 등 개화당(급 진개화파)은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 것이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이전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완전독립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래로 淸國이 조선을 스스로 屬國으로 생각해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조선)가 振作의 희망이 없는 것은 역시 여기에 원인이 없지 않다. 여기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羈絆(굴레)을 철퇴하고 특히 獨全自主之國을 수립하는 일이다. 독립을 바라면 정치와 외교를 自修自强해야 한다(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 全集, 110~111쪽).

개화당 영수 김옥균이 여기서 말한 '獨全自主之國'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바로 '完全自主獨立國家'를 가리킨 것이었다. 서재필은 이 사실에 대해, "김옥 균은 조국이 청국의 종주권 아래 있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여 어찌하면 이 수치를 벗어나 조선도 세계 각국 중에 평등과 자유의 일원이 될까 밤낮으로 노심초사했던 것이다"85)라고 회고했다. 서재필은 또 "그 때 김옥균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청나라세력을 꺾어 버리고 동시에 그를 추종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빼앗은 후에 우리 나라의 완전 자주독립정치를 수립하자는 것이 그의 이 상이었고 실현의 최고 목표였다"86)고 회고하였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1조는 이러한 배경에서 ① 1882년 7월 이후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거부함과 동시에, ② 1882년 이전의조공허례의 의식도 폐지할 것을 혁신정강으로 공포하여, 조선왕국의 완전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비단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속방화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허구의 종주권 주장과 조공허례 의식까지도 전면 부정하고, 조선왕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만천하에 재확인 공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중 요성을 가진 것이었다.

나. 양반신분제도 · 문벌제도의 폐지와 인재등용의 공포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2조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은, ① 양반신분제도의 폐지에 의한 국민평등권리의 제정, ② 문벌제도의 폐지, ③ 인재의 등용을 정식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주동자 김옥균은 양반신분제도의 폐해에 대해 국왕에게 다음 과 같이 상주하였다.

신이 다년 견문에 의거하여 폐하께 주상한 바 있사온대, 폐하는 이를 기억하시나이까. 그 뜻은 금일 우리 나라 이른바 양반을 芟除함에 있나이다. 우리 나라 중고 이전 국운이 융성할 때에는 일체의 기계 물산이 동양 2국(중국과 일본 - 인용자)보다 으뜸이었는데 이제 모두 폐절에 속하여 그 흔적도 없음은 다른

⁸⁵⁾ 徐載弼、〈回顧甲申政變〉(閔泰瑗、《甲申政變과 金玉均》, 1947, 82쪽).

⁸⁶⁾ 金道泰 編,《徐載弼博士自敍傳》(首善社, 1949), 86~87\.

연고가 아니옵고 양반의 발호 전횡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나이다.

인민이 一物을 제조하면 양반관리의 輩가 이를 횡탈하고, 백성이 辛苦하여 銖錙(작은 재물)를 축적하면 양반관리들이 와서 이를 약취하는 고로, 인민이 말하되 자력으로 自作하여 衣食코자 하는 때는 양반관리가 그 利를 흡수할 뿐만아니라 심함에 이르러서는 귀중한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차라리 농업·상업·공업의 여러 산업을 폐기하여 위험을 면함만 같지 못하다 하여 이에 遊食의 民이 전국에 충만하여 국력이 날로 소모에 돌아감에 이르렀나이다(金玉均, 〈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高宗에의 上疏文)〉, 全集, 146~147쪽).

김옥균의 이 상소문은 1886년에 올린 것이지만, '신이 다년간 견문에 의거하여 폐하께 주상한 바 있사온대'라고 쓴 바와 같이, 갑신정변 이전에도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옥균이 양반신분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양반신분제도·문벌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논거가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고대에 중국과 일본보다도 으뜸이었던 우리나라의 산업이 자기시대에 모두 폐절되게끔 된 원인을 양반신분제도의 폐해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①백성들이 물건을 하나 제조해 내면 양반들이 이를 황탈해 가고, ②백성들이 간신히 극소의 자본을 축적해도 양반들이 이를 약탈해 빼앗아 가버리므로, ③백성들에 의한 공업생산도 불가능하게 되고, ④백성들에 의한 자본축적도 불가능하게 되며, ⑤백성들이 자립적 생산을 하여 여유있게 생활코자 하면 양반관리들이 그 이익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⑥백성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귀중한 생명까지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⑦백성들은 농업·공업·상업 등 산업을 포기하게 되어 마침내 국력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옥균의 이러한 주장은 양반신분제도가 산업발전과 자본축적에 가장 큰 질곡이므로 이를 단칼에 삼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자본주의적 성격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재필은 김옥균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 나라의 완전 자주독립정 치의 실현과 함께 '귀족타파'87)에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갑신정변의 혁

⁸⁷⁾ 金道泰 編, 위의 책, 86쪽.

신정강을 목격했던 일본인은 개화당이 갑신정변 때 '양반의 권리를 억지하고 常民의 권리를 높인다'88》는 개혁안을 제시했었다고 기록하였다. 김옥균은 또 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방금 세계가 상업을 주로 하여 서로 생업의 많음을 경쟁하는 때를 당하여 양반을 제거하여 그 폐단의 원천을 모두 없애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국가의 폐망을 기대할 뿐이다(金玉均、〈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全集、147쪽).

이러한 사상과 관점에서 1884년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누천년 묵어 온 귀족신분제도와 양반신분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국민평등의 권리와 제도를 제정하겠다고 정책강령을 공포한 것이었다.

한편 문벌제도의 폐지는 양반신분제도의 폐지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왕조 사회와 정치의 형편은 양반문벌들이 형성되어 그들의 족친이 아니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잘 등용치 않고 있었다. 반면에 閥閥의 일원이면 무능부패한 자들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직을 주고 있었다. 특히 갑신정변 직전에는 수구파 민씨 척족과 몇 개의 문벌들이정부의 요직을 거의 모두 차지하여 나라의 발전은 막히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김옥균은 이미 갑신정변 이전에 일찍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⁸⁹⁾고 강조했었다. 김옥균은 그 후에도 문벌폐지와 인재등용의 중요성에 대해, "폐하가 이를 맹성하사 속히 무식무능하고 수구완루의 大臣輔國을 해임하여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선발"⁹⁰⁾해 등용할 것을 국왕에게 상소하였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2조를 볼 때, 만일 개화당의 정변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우리 나라 양반신분제도와 문벌의 폐지는 1894년의 갑오개 혁·동학농민운동 때보다 10년 앞서 이미 1884년의 갑신정변 때 달성되었 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한국역사에서 최초로 정부가

⁸⁸⁾ 井上角五郎、〈漢城迺殘夢〉(《風俗畵集》, 17-84 호외), 12쪽.

⁸⁹⁾ 金玉均、〈治道略論〉(全集, 3쪽)。

⁹⁰⁾ 金玉均,〈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全集, 3\).

양반신분제도와 문벌을 폐지하고 국민평등권리와 제도를 제정할 것을 공포 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다. 내각제도의 수립과 정부조직의 개편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13조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과, 제14조 '정부는 六曹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과, 제4조 '內 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등의 조항은, ① 내각제도의 수립, ② 정부조직의 개편 등의 정책 대강을 공포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전제군주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각료들의 내각회의에서 정책을 의결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에 정령을 공포하여 정사를 집행하는 내각제도를 수립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즉 ①종래의 전제군주제에서와 같이 어전회의에서 정사를 논의하여 국왕이 정책을 결정해서 대신들은 어명을 받아 정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참석 없이의정부에서 대신과 참찬들이 매일 일과로서 각료회의(대신·참찬회의)를 개최하고, ②이 회의에서 정책을 토의하여 정책과 정사를 결정한 후 다음에 국왕에게 품하여 재가를 얻으며, ③육조 이외의 종래 국왕에게 정사를 품하던기관과 불필요한 기관은 모두 폐지함으로써 육조의 '대신·참찬회의'(내각회의)에서만 모든 정책·정사를 토의·결정하도록 했고, ④ '대신·참찬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국왕의 재가 후에 '정령'으로써 집행케 한다는 것 등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입법과 행정의 토의결정은 국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6조의 대신·참찬회의(내각회의)에서 이루어지고, 국왕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어 대신·참찬회의에서 결정하여 품계한 사항에 대해 가부의 재결만 하게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로 모든 정책의 토의와 결정이 대신·참찬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왕은 대신·참찬회의의 결정사항에 동의하는 재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화하면, 종래의 전제군주권에 근본적 제한을 가하고 입헌군주제의 초기형태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내각제도'를 시행하려고 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에서 이러한 내각제도의 수립은, 《한성순보》의 논설과 같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볼 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들이 종래의 전제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는 과정의 정책과 제도개혁을 추진했음을 나 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1)

또한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중 위의 여러 조항들은 정부조직의 근대적 개편도 선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개편의 방향은, ① 정부의 부서는 6부로하고, ② 6부 이외의 모든 행정상 불필요한 부서들(특히 왕족·척족과 벌열들을위해 설치한 관직)은 모두 폐지하며, ③ 내시부와 같은 전근대적 부서와 환관제도는 폐지하고 그에 속한 자들 중에서 특히 우수한 자만 다른 부서에 임용하며, ④ 왕실사무와 국가행정사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이 선언한 내각제도의 수립과 정부조직의 근대적 개편은 한국역사에서 처음으로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의 방향으로 개혁하여 내각제도의 수립을 결정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라. 재정의 통일과 경제개혁의 단행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12조 '모든 국가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일체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과, 제3조 '전국의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재정을 유족케할 것'과, 제6조 '각 도의 還上制度는 영구히 폐지할 것'과, 제9조 '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등은, ① 재정의 호조로의 통일, ② 지세제도 개혁을 비롯한 조세제도의 개혁, ③ 환자(환곡)제도의 폐지, ④ 보부상 등 전근대적 특권상업제도의 폐지 등을 통하여 근대적 자유산업을 장려하고 재정제도와 경제제도를 근대적 방향으로 개혁하려 하였다.

당시 국가재정은 재무부처로 통일되어 체계적으로 관장되지 못하고 모든 정부부서들이 각각 조세징수권을 가져 직접 국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해서 각각 자의로 지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재정의 예산·결산제도도 없었다. 이 때문에 각 관청에 의한 과도한 조세징수와 중간착복, 재정의 낭비와 문란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은 정변 개시 이

^{91) 《}漢城旬報》 10호, 1884년 1월 3일, 〈歐米立憲政體〉.

전부터 이러한 국가재정의 문란실태를 통탄하고 '戶曹'에 의한 국가재정의 통일과 예산제도의 확립 실시를 이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가,92) 정변을 일으키자 바로 국가재정의 통일을 정강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갑신정변 당시의 개화당의 국가재정 개혁의 기본방향은, ①모든 국가재정의 호조(재무부)로의 통일, ②호조 이외의 모든 재무관청의 폐지, ③예산(및결산)제도의 실시, ④세입과 세출의 단일화 및 균형체계 수립, ⑤조세제도의 개혁, ⑥ 내외 公債모집에 의한 재정자금 부족분의 긴급 조달 등이 그 핵심을 이루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재정의 호조로의 통일이 선행적으로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혁신정강 내용 중의 지세법의 개혁은 당시 三政(田政・軍政・還政)의 문란 중에서 전정(지세제도)과 군정(군포세제도)의 문란을 교정하고 근대적 조세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정책으로 선포된 것이었다. 개화당은 지세제도와 조세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여 세율을 내려서 법제화하고 탐관오리들의 중간착취와 부정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한편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백성을 고난에서 구함과 동시에 간사한 관리들의 중간수취를 근원부터 제거함으로써 겸하여 국가재정을 유족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한편 혁신정강 가운데 하나인 還上制度의 폐지는 종래의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정의 문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아예 이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기로한 것이었다. 원래 환자제도는 흉년과 백성들의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목적으로 창설된 복지제도의 일종이었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관영 고리대부제도로 완전히 변질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컸으며,관리들의 부정착취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환자제도의폐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1862년 '진주민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도 바로 환자제도의 문란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비 수구파들은 환자제도에 의거하여 재정수입의 일부를 충당하고 사복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폐해 많은 이환자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은 백성들의 오랜 소망과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여 착취제도로 변질한 환자제도를 영

^{92) 《}尹致昊日記》, 1883년 10월 3일.

구히 폐지할 것을 혁신정강에서 과감하게 선포한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로서 는 참으로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혁신정강 중의 혜상공국의 폐지는 '보부상'을 비롯한 전근대적 특권상업제도의 폐지를 선포한 것이었다. 민비 수구파들은 종래의 특권행상들인 보부상들을 1883년 8월에 '혜상공국'이라는 이름으로 재조직하여, 혜상공국 당상에 민비 수구파의 영수 閔台鎬 등을 임명해서 보부상들의 전근대적 상업독점권을 오히려 강화시켜 줌과 동시에 전국의 보부상들을 민비 수구파의 정치폭력세력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것은 당시 자유상업의 급속한 발흥추세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시대역행적 정책이었다.

개화당들은 당시 자유상업과 '회사'형태의 자본주의적 자유기업의 설립을 장려하여 공업·철도·기선·토지 등 근대적 산업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⁹³⁾ 김옥균도 근대적 공업의 건설을 강조하고, 광업의 개발을 주장했으며, 기선 및 철도에 의한 근대적 운수와 電線에 의한 근대적 통신제도의설치를 주장하였다.⁹⁴⁾ 당시 개화당의 적극적 성원과 보호에 힘입어 1883년부터 갑신정변 직전인 1884년 11월 말까지 약 2년간에 조선왕국에서 설립된 상공업회사가 26개에 달하였다.⁹⁵⁾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혜상공국을 폐지하여 한편으로 보부상제도 등 전 근대적 특권상업제도를 폐지하면서 보부상들이 민비 수구파세력의 폭력조직 이 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회사형태의 자유 상업과 기업들을 육성하는 조건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이것은 갑신정변 이후 신정부의 경제개혁 방향이 전근대적 경제조직을 정책적으로 해체시키 고 근대 자본주의적 산업경제를 건설하려는 방향임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 군사제도의 개혁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11조 '4營을 합하여 1영으로 만들고, 영 중에서 장

^{93) 《}漢城旬報》 3호, 1883년 10월 21일, 〈會社說〉.

⁹⁴⁾ 金玉均, 〈治道略論〉(全集, 13쪽 및 4쪽).

⁹⁵⁾ 愼鏞廈, 〈初期開化政策〉(《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6, 1975), 383~392쪽.

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시급히 설치할 것(육군대장에는 왕세자를 추대할 것)' 은 군사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추구한 것이었다.

당시 군사제도는 친군영을 전·후·좌·우의 4영으로 나누어 민비 수구파의 거물들이 지휘하고 있었으며, 국방보다는 왕실 호위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친군영 전영과 후영은 서양식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친군영 좌영과 우영은 袁世凱가 설치하여 청국식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한 나라의 군대가 부대에 따라 훈련방법과 편제가 서로 달랐다. 또한 친군영 전영과 친군영 좌·우영은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 혼란과 근심을 자아내고 있었다.96)

개화당들은 이 때문에 갑신정변 이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4영의 1영으로의 통합과 하나의 통일된 방식에 의한 전체 부대들의 군사훈련 및 편제를 주장했었다.97) 당시 김옥균 등 개화당은 열강이 침략해 들어오는 추세 속에서 조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자주적 근대군대의 양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개화당은 먼저 영민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외국의 신식 무관학교에 유학시켜 현대적 사관교육을 받도록 해서 귀국시킨 다음, 그들을 교관으로 한 '士官學校'를 설립하여 신식 장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규모의 근대적 '육군'을 정예군대로서 양성하려고 계획하였다. 이미 일본에들어와 있는 서양식 현대적 사관교육을 받아 오도록 일본에 파견되었던 서재필은 이 때를 회고하여, "하루는 김옥균이 나에게 국방을 충실히 하려면 정예한 군대밖에 없는데, 현하 우리의 급무로 그 위에 나올 것이 무엇이냐고하며 일본으로 건너가 무예를 배우라고 권하였다. 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낙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15인의 다른 학생들과 일본으로 향하였다"98)고 기록하였다.

김옥균 등 개화당들은 그들이 외국에 유학시킨 14명의 사관생도들이 졸업 하고 귀국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99) 또한 개화당

^{96) 《}尹致昊日記》, 1883년 12월 4일.

^{97) 《}尹致昊日記》, 1883년 12월 21일.

⁹⁸⁾ 徐載弼, 〈回顧甲申政變〉(앞의 책), 84쪽.

은 방대한 규모의 신식(서양식) 육군을 양성함과 동시에, 서양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하여 신식 '해군'도 창설하려고 하였다. 개화당의 신문인《한성순보》가 거의 매호마다 세계 각국의 육군과 해군의 병력과 군사동태를 상세히 소개하고 해설한 사실에서도 그들이 근대적 국방과 근대적 신식 군대의 양성에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에서 ① 4영의 1영으로의 통합, ② 국방을 담당하는 육 군과 왕실 호위를 담당하는 근위대의 분리, ③ 근위대의 시급한 설치를 공포 한 것은 군사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한 최초의 것을 정강화한 것이었고, 사 실은 군사 전반의 근대적 대개혁을 추구한 것이었다. 근위대의 육군대장에 왕세자(당시 유아)를 추대한 것은 군주국가에서 의례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들이 실제로 추구한 것은 신식 장교가 지휘하는 강력한 정예의 신식 육군과 해군이었다.

바. 규장각의 폐지와 근대문화의 수립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7조 '奎章閣을 폐지할 것'은, ① 전근대적 양반귀족 문화의 제도인 규장각을 폐지하고, ② 일반 국민이 중심인 신교육제도를 기 본으로 한 근대문화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하려 한 개화당의 정 책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혁신정강의 규장각폐지의 조항은 피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나, 이것은 규장각이 갖고 있던 민족문화 정수의 측면을 폐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규장각이 갖고 있던 다른 하나의 측면인 전근대적 양반귀족문화의 제도적 측면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민중의 신교육에 의거한 근대문화 수립을 추구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주체세력의 하나였던 서재필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김옥균은 나라의 빈약함이 전연히 일반 민중의 기술적 교육이 없는 것과 상 류계급 인사의 무지와 몰각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우리 나라를 구

^{99) 《}尹致昊日記》, 1884년 6월 19일.

하자면 민중을 교육시키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는 입버릇같이 나에게 가끔 말하던 것을 나는 이제 와서 기억한다. 이미 노후한 자는 교육시킬 도리가 없어 청년에게 실을 같은 희망을 비끄러맸던 것이다(徐載弼,〈回顧甲申政變〉, 앞의 책, 83쪽).

김옥균 등은 그 당시 양반귀족들의 낡은 구지식은 당시의 민족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는 무지·몰각과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나라를 구하려면 오직 청년들과 일반 민중들에게 신교육을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김옥균은 백성을 교육하되 신문명의 방도로써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널리 學校를 설립하여' 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100) 정무에 관한 일을 언문(국문)으로 번역 간행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01)

개화당이 혁신정강에서 양반귀족만의 구지식기관인 규장각을 폐지하려 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민중교육을 위한 학교를 널리 설립하여 신교육을 실 시하고 근대문화를 수립하는 방향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 경찰제도와 형사정책의 근대적 개혁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8조 '순사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과 제10조 '그 동안 유배·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은 경찰제도와 형사정책을 긴급히 개혁하려 한 것이었다. 그 개혁의 방향은, ① 순사제도의 긴급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의 근대화, ② 가혹한 전근대적 행형제도의 의해 억울하게 유배되고 금고된 사람들의 재조사와 석방·사면, ③ 근대적 형무제도의 실시 등을 추구한 것이었다.

김옥균은 이미 갑신정변 이전에 근대적 경찰제도의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¹⁰²⁾ 또한 개화당들은 박영효가 한성판윤으로 있던 1883년에 서울 시내에서는 근대적 경찰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기도 했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 이전에 당시의 전근대적 형정의 가혹성에 대해 신랄하

¹⁰⁰⁾ 金玉均, 〈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全集, 146~147\).

¹⁰¹⁾ 金玉均、〈治道略論〉(全集, 16~17쪽)。

¹⁰²⁾ 金玉均, 〈治道略論〉(全集, 15~16쪽).

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현재 시행되는 刑政을 논하건대, 법이 오래되어 문란해져서 생명을 겁박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등 그 폐해가 전국에 미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허물치 않는다. 하나의 못과 송곳을 훔치거나 한 강호에게 욕을 해도 먼 곳에 귀양을 보내니, 인명을 초개같이 경시하므로 和氣를 손상함이 극에 달하였다(金玉均、〈治道略論〉、全集、14~15쪽).

김옥균은 그 개정의 방향으로, 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刑政을 개혁할 것, ② 중벌주의·중형주의를 폐지할 것, ③ 유배제도는 가혹하니 폐지하고 새로이 가벼운 징역제도를 실시할 것, ④ 경범자는 징역 대신에 노역이나 벌금으로 속죄케 할 것 등의 행형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주장하였다.103)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의 이 조항들은 시급히 순사제도를 설치하여 근대적 경찰제도를 수립해서 민생치안을 튼튼히 강화해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동안 가혹한 전근대적 형사정책과 행형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된 사람들 을 석방·사면하여 인심을 수렴하려 한 것이었다. 이것은 가혹한 전근대적 경찰제도와 형정을 새로운 근대적 경찰제도와 형정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신 정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 국가에 해독을 끼친 자에 대한 처벌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5조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은, ① 종래 민비 수구파정권하에서 부정부패와 백성착 취의 도가 지나친 탐관오리들은 숙청하여 처벌하되, ② 그 기준은 국가에 얼 마나 해독을 끼쳤는가에 의거하겠다고 공포한 것이었다.

이 조항은 개화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민비 수 구파와 관리들 중에서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한 탐관오리들을 색출하여 처벌 숙청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서, 신정권으로서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었다 고 볼 수 있다.

갑신정변 신정부의 혁신정강은 이상과 같이 국가제도와 국정 전반을 전근

¹⁰³⁾ 金玉均, 〈治道略論〉(全集, 14~15\).

대적 체제로부터 새로이 근대적 체제의 방향으로 개혁하여 근대국가체제를 건설하려 한 것이었다.

또한 이 혁신정강은 개화당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직후 집행할 정책들의 대정강으로 제정한 것이었으므로 사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당장 실 행・실시될 정책의 골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갑신정변의 혁 신정강은 개화사상이 아니라 개화정책이었으며 집행되기 시작한 개화정책의 골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4) 청국 및 일본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

김옥균 등 개화당은 10월 9일 오전 9시 신정부의 혁신정강을 공포한 직후에 청군의 공격을 예견하여 신무기로 방어력을 긴급히 강화하려고 하였다. 지난밤에 일대의 청군이 宣仁門 닫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 공격 준비와 관련이 있지 않나 추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신정부는 우선 전날 밤 청군의 무리가선인문 닫는 것을 방해한 데 대해 원세개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앞으로 다시이러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요지의 항의문을 보내었다. 신정부는 또한 각 병영의 무기고에서 신무기를 꺼내어 정변에 참가한 조선군의무장을 긴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개월 전에 이전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최신식 소총 3,000정을 구입해다가 사용하지 않고 각 영의 무기고에 보관해둔 것이 있었다. 개화당은 이 최신식 소총을 꺼내어 무장을 강화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기고의 최신식 소총들을 꺼내어 보니 거의 모두 녹쓸어 있었다. 이를 모두 분해소제하고 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일본공사 다케조에(竹添)는 본국의 사전 승인없이 개화당의 정변에 참가 협조한 것이 걱정되었는지, 또는 다가오는 사태에 겁을 먹었던 것인지 일본 군의 사정으로 보아 궁궐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일본군을 철병시키 겠다고 통고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전투를 예견하고 개화당과의 약속을 배신 한 비겁한 행위였다. 우리들의 자립태세가 조금이라도 서 있다면 구태여 공사의 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나, 지금 각 영의 무기를 조사해 보니 모두 녹이 슬어 있어 이를 수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 공사가 철병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3일 동안만 기다려 철수하면 그 사이에 우리들도 준비를 하겠다(〈甲申日錄〉, 1884년 12월 6일, 全集, 97~98쪽).

김옥균 등이 내심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간곡히 만류하여 설득하자 다 케조에도 이에 승복하였다.

개화당의 신정부는 이 날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대개혁을 실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 날 오후 3시에 국왕은 '大政維新의 詔書'를 내려 혁신 정강을 기본으로 해서 신정부가 대개혁을 단행한다고 반포하였다.

그러나 청국군측은 같은 시각인 10월 19일(양력 12월 6일) 오후 3시경에 작전을 시작하여 약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돈화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하여 궁궐을 침범해 들어왔다.

마침 이 때에 조선-일본 사이의 우편선 千歲丸이 입항하여 일본 외무대신의 일본공사에 대한 훈령이 전달되었다. 훈령을 받아 읽은 다케조에의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다.104) 일본 외무대신의 훈령 내용은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의 일본군을 조선 개화당의 정변에 절대로 가담시키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그 사이 청・불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청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정책을 급히 바꾸어서다시 조선 개화당에 대한 적대적 방향의 정책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었다.

청군 1,500명의 양면으로의 공격에 대항하여 외위를 담당한 조선군은 아직 응전태세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 모두 최신식 소총의 분해소제와 수리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친군영 전영·후영의 조선군은 구식 무기로도 용감히 응전하였다. 특히 친군영 전영 500명의 조선군은 치열하게 응전하여 전투하다가 수십 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결국 조선군은 중과부적과 무기의 열세로 패퇴하여 흩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중위를 담당한 일본군의 응전차례였으나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¹⁰⁴⁾ 朴泳孝, 앞의 글, 16쪽 참조.

철병을 시작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을 독려하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왕비(민비)와 세자 및 세자빈은 창덕궁의 북산으로 향하였고, 왕대비·대왕대비도 뒤이어 궁문으로 탈출하고 있었다. 김옥균 등이이 보고를 받고 급히 후문으로 뒤따라가 보니 국왕도 무감과 4·5명의 병정들에게 호위되어 민비가 가 있는 북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옥균·서광범 등은 국왕을 발견하자 큰 소리로 어가를 정지시키고 국왕의 북산행차를 만류하여 다시 궁궐 안으로 모셔왔다. 개화당 장사들로 구성된 내위로 하여금 국왕을 호위케 한 후, 개화당 요인들은 긴급대책을 숙의한결과 국왕을 보호하여 처음에는 인천을 거쳐 강화도로 가서 신정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이 말을 듣고 "나는 결코 인천으로 가지 않겠다. 죽더라도 대왕대비가 계신 곳으로 가서 자리를 같이하겠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105)

청국군이 이 때 국왕과 개화당 요인들이 있는 처소를 공격해 왔으므로 일행은 뒤쪽 언덕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이 곳도 안전하지 못하여 안전한 곳을 찾다가 창덕궁 동북 궁문까지 가게 되었다. 이 때 북산에 가 있던 민비가사람을 보내어 국왕에게 북산으로 오기를 청하였다. 국왕이 나서서 북산 쪽을 바라보니 민비는 멀리서 이를 예견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오라는 뜻의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다.

김옥균 등 개화당 요인들이 국왕에게 인천으로 피신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왕은 단호히 이를 뿌리치고 그를 업은 무감의 등을 두드리며 북산에 있는 민비 쪽으로 갈 것을 명하였다. 박영효가 나서서 무감을 위협하여 이를 저지 하려 했으나, 김옥균은 국왕의 뜻이 확고한 것을 짐작하고 이를 만류하였다. 개화당은 할 수 없이 국왕과 함께 개화파 장사들과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북산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궁궐 건물 멀리서 기다리던 청군들이 일본군 복색을 보고 함성을 지르며 무차별 난사를 가하였으므로 국왕 옆에 있던 무감한 사람이 손에 총

^{105) 〈}甲申日錄〉, 1884년 12월 6일(全集, 102쪽).

을 맞았다. 김옥균은 이에 무감을 시켜 큰 소리로 "대군주께서 여기 계시는데 어찌 감히 총을 쏘느냐"고 크게 꾸짖게 하니 총성이 그치었다.

일본공사 다케조에는 이러한 상황을 관찰하더니, 일본군이 조선국왕을 호위하는 것이 더 위험하니 일본군을 철수시킨 후 선후책을 강구하겠다고 개화당에게 통고하였다. 김옥균 등이 크게 놀라서 다케조에의 신의 없음을 힐책하고 만류했으나 다케조에는 완강하게 일본군 철수를 고집하며 강행하려하였다.106)

개화당 요인들은 청군의 포위 속에서 일본군이 철수하여 국왕을 보호하지 못하게 됨은 곧 정변의 붕괴를 의미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군주제하에서 는 어느 정파가 국왕을 보호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집권이 좌우되는 경 우가 대부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이에 대책을 숙의하고 정변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에 개화당 요인 중에서 홍영식은 신정부의 개화당 대표(좌의정)일 뿐 아니라 정변 직후에도 병정을 보내어 민비 수구파의 거물 민영익을 보호해 주었었고 청군사령 원세개와도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화는 면할 수 있다고 보고 도승지 박영교와 함께 사관생도 일부를 데리고 국왕을 호종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개화당 요인인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은 다른 개화당 인사들 및 사관생도 일부를 데리고 다케조에와 함께 일본에 망명키로 하였다.107이에 갑신정변에 의한 개화당의 신정부는 10월 19일 밤 붕괴되어 김옥균 등의 개화당의 집권은 '三日天下'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

홍영식·박영교·신복모와 사관생도 박응학·정행정·윤영관·하응선·이병호·이건영·백낙운 등 7명은 국왕을 모시고 북묘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청군측이 국왕을 청군의 군영에 옮긴 후, 재판도 없이 홍영식·박영교·신복모 등과 7명의 사관생도들을 처참하게 살해하여 버렸다.108)

한편 국왕과 이별한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변수·유혁로·신응 희·이규완·정난교 등 9명은 다케조에를 따라 일본공사관에 10월 19일 9시

^{106) 〈}甲申日錄〉, 1884년 12월 6일(全集, 103쪽).

¹⁰⁷⁾ 위의 글(全集, 104~105쪽).

^{108) 《}甲申事變案》 중의〈變亂事實〉 및 위의 글(全集, 104쪽).

경에 도착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의 일부도 일본공사관 안으로 피난해 들어와서 일본공사관 안의 분위기는 소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김옥균 일행이 머물러 있던 이튿날인 10월 20일에는 재집권한 민비 수구파정부의 신임 외무독판 김홍집이 일본군의 정변 가담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오고, 청군과그 선동을 받은 수십 명의 군중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본공사관을 습격하려고 일본군 보초병과 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김옥균 등 개화당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인천으로 출발하는 다 케조에를 비롯한 일본공사관의 모든 직원과 일본군을 따라 나섰다. 우편선 천세환이 인천에 정박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공사관 직원들은 기밀문서 를 태우다가 공사관 건물에 불이 번지는 것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청군과 일부 본국인들에게 추격당하면서 다케조에를 따라 인천으로 향했으며, 김옥 균 일행도 그들과 함께 인천으로 떠났다.

조선 개화당이 청국의 속방화정책을 타도하고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 일으킨 '갑신정변'은 이렇게 하여 3일 만에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다.

5) 갑신정변 실패의 요인

갑신정변 실패의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특히 다음의 요 인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청군의 불법적 범궐과 군사적 공격이다. 청군은 국왕의 요청도 없고 조선정부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주둔시킨 1,500명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조선왕국의 궁궐을 침범해서 군사적 공격을 자행함으로써 개화당의 신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켰다. 이것은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으며, 전적으로 불법적 궁궐침입이었고, 군사적 만행이었다.

둘째는 개화당의 일본군 차용과 일본군의 철병이다. 개화당은 일본공사관의 호위병력 150명을 빌려다 개화당의 부족한 무력을 보충하려 하여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호위하라"109)는 국왕의 친필 명령서까지 받아다가 합법적으로 일본군을 정변에 끌어들였다. 김옥균 등 개화당은 당시의 국제적 모순

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차용해서 청군의 공격에 대해서는 일본군으로 이를 견제하여 막고, 국내 수구파는 국내 개화당이 맡는다는 전술을 택했으나 이 것은 적중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일본군 무력은 결정적 순간에 개화당의 기 대를 배신하여 국왕을 호위하지 않고 철병해 버림으로써 정변 전체를 와해 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일본측이 정변 직전에 조선 개화당에 추파를 던져 온 것은 개화당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화당을 침략의 통로로 이용하려 한 것 뿐이었고, 정작 개화당이 집권하여 조선이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지 않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측은 征韓論 이래 침략의 기회를 기다리던 대상인 조선이 강대한 근대국가가 되면 침략이 불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또 하나의 근대국가가 건설되어 그들의 경쟁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개화당이 정변을 자기 힘으로서만 하지 않고 침략의도를 가진 외국 특히 일본의 무력을 빌린 것은 개화당의 큰 실책이었다. 이것은 정변 그 자체를 실패케 한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되었고, 조선 백성들에게도 개화당은 친일 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비난을 자초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백성들로부터 지지의 결여이다. 당시 조선 백성들은 왜 정변까지일으켜 가면서 시급히 '개화'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으므로 개화당의정변에 냉담하였다. 당시 청군의 무장력은 근대적 소총 수준의 것이었으므로, 만일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만 있었다면 서울 시내의 청·장년들만 개화당을 지지하여 함께 봉기해도 청군의 군사개입은 저지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백성들은 개화당의 정변에 시종일관 냉담하였다. 백성들은 오히려 갑신정변을 양반귀족들 사이의 권력쟁탈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일부 개화당을 친일파로 오인한 백성들은 개화당을 공격하는데 가담하기도 하였다.

갑신정변같이 체제를 변혁하려는 급격한 운동은 그에 앞서 지지해 줄 민 중을 계몽하는 운동을 선행시켜야 하는데, 계몽운동을 선행시키지 않은 정변 이 민중의 지지를 얻어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9) 〈}甲申日錄〉, 1884년 12월 4일(全集, 84쪽).

넷째는 시민층의 미성숙이다. 개화당 신정부의 혁신정강과 개화정책은 근대 시민적인 것이었으며, 시민계층의 이해관계에 가장 잘 합치하고, 시민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적인 내용의 것이었다. 따라서 시민계층만 성장해 있었으면 정변은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사회의 근대 시민층은 대두하기 시작하고 있기는 했으나아직 미성숙하여 개화당의 지지세력을 형성하기는 전혀 불가능하였다.110) 개화당의 신정부가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정변 실패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개화당의 준비 부족과 정변 기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정변은 군사무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개화당은 청군 1,500명을 압도할 수 있는 조선군 무력 준비가 부족하였다. 친군영 전·후·좌·우의 4영 중에서 전영만 확고하게 장악하였고, 후영은 북청병정 외에는 충분하게 장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화당은 친군영 좌영과 우영은 전혀 장악하지 못한 결과, 정변도중 대세가 청군에게 유리하게 기울자 좌영과 우영 조선군 병사들은 원세개의 지휘를 받는 형편이었다. 조선군을 비밀리에 사전 장악하는 준비가 크게 미흡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변이 성공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개화당은 민비의 동태를 잘 감시하지 못하였고, 경기관찰사 심상훈에 게는 속아 넘어가서 그를 개화파 동정자로 오해하여 궁궐 무상출입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심상훈은 청군측과 민비 사이에 연락을 담당해서 국왕의 처소를 방어가 쉬운 경우궁으로부터 방어가 어려운 창덕궁으로 옮기게 작용했으며, 개화당의 통신과 연락을 방해하는데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화당의 정변 준비와 기술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조선의 선진 개화독립당 청년들이 조선왕국에 대하여 청국이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속방화정책을 끊어버리고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은 일단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신정부를 수립한 지 3일 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愼鏞廈〉

¹¹⁰⁾ 愼鏞廈, 앞의 글(1997) 참조.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1) 갑신정변의 영향

(1) 수구파정권의 재수립

갑신정변의 실패의 결과 친청 수구파가 재집권하게 되었다. 국왕은 19일 저녁 청군에 인계된 후 그 날 밤은 청장 吳兆有의 군영에서 보내고, 이튿날 인 10월 20일에는 袁世凱의 군영으로 옮겼다. 국왕은 이 곳에서 3일간 체류 하면서 친청 수구파의 신정부를 편성하였다. 국왕이 원세개의 군영에서 환궁 한 10월 23일까지 편성한 정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領議政:沈舜澤 左議政:金弘集(兼外務督辦)

右議政:金炳始 東曹判書:李載元 禮曹判書:金晚植 戶曹判書:金永壽 兵曹判書兼江華留守:金允植 刑曹判書:洪澈周

工曹判書:金有淵 前營使兼惠商公局堂上:李敎獻

後營使兼右捕盜大將:李鳳九 左營使:李奎奭 右營使:閔泳翊 左捕盜大將:申奭熙 宣惠廳提調:魚允中 漢城判尹:閔種默 開城留守:趙準永 戶曹參判:南廷哲 海防摠管:李奎遠 外務督辦:趙秉鎬

外務協辦:金允植・習렌도르프(穆麟德)

外務參議:徐相雨

(《高宗實錄》, 고종 21년 10월 20일~10월 23일)

위의 정부개편을 보면 정부수반과 군사권 및 재정권은 처음부터 친청 수구파가 장악하고 수도와 그 방위 역시 친청 수구파가 장악하도록 하는 한편, 종친으로서 개화당이 포섭하려 했던 李載元(국왕의 사촌형)과 친청적 성향의 온건 개화파들을 그 밖의 직책에 임용하였다. 독일인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외무협판에 임명하여 중용한 것은 이례적 특색이었다.

친청 수구파정부에 일시 임용되었던 온건개화파들은 얼마 후에 대부분 해임되었을 뿐 아니라 개화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각종 구실이 붙여져서 유배당하였다. 청군측의 강력한 영향하에 친청적 수구파정부가 수립되어 국정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

(2) 개화당의 몰락과 숙청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친청적 수구파 대신들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개화당 요인들에 대한 추적과 살해·숙청이 가혹하게 시작되었다.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갑신정변의 주도세력인 개화당 요인 중에서 국왕을 청군진영에 모셔 보내는데 호종한 홍영식·박영교·신복모 등 개화당 요인과 사관생도 출신 중심의 박응학·정행징·윤영관·하응선·이병호·이건영·백낙운 등 개화당 장사 7명은 국왕 인계 직후 재판도 없이 청군에 의해 10월 28일(양력 12월 6일) 밤 참살당하였다.1)

또한 재집권한 친청 수구파정권은 10월 21일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 재필을 '4凶'으로 규정하고, 외무독판 조병호와 협판 묄렌도르프 및 仁川監理 洪淳學에 명하여 일본망명차 인천에 가 있는 4흉을 체포해 오도록 하였다. 묄렌도르프는 김옥균에게 사적 증오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1대의 기마병대를 인솔하고 신속하게 김옥균 등을 인천까지 추격했으나 김옥균·박영효·서광 범·서재필 등과 변수·유혁로·이규완·정난교·신응희 등 9명은 이미 천 세환에 승선한 이후였다.

묄렌도르프는 다케조에에게 김옥균·박영효 등은 조선왕국의 역적으로 규정되어 체포하러 왔으니 즉각 하선시켜 인도하지 않으면 중대한 국제문제가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개화당 9명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다케조에에는 비열하게도 김옥균 일행의 하선을 요구했다. 이것은 바로 김옥균 등 9명의 참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케조에의 비겁성과 배신으로 김옥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때, 천세환 선장이 나서서 묄렌도르프에게 선박 안의 모든 것은 선장의 책임과 지휘를 따르는 것인데, 자기 배에는 김옥균 등과 같은 조선인은

¹⁾ 李光麟, 《開化黨研究》, 175쪽 참조.

승선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으므로 김옥균 등 개화당 요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일본으로 망명하였다.²⁾

재집권한 친청 수구파정부의 잔존한 개화당들에 대한 추적은 가열하여, 1884년 말까지 李喜貞・金奉均・申重模・李倉奎・李允相・吳昌模・徐載昌・車 弘植・南興喆・高興宗・李點乭・崔英植 등 12명이 곧 체포되어 가혹한 국문을 받고 처형되었다.3) 수구파정부는 1886년에도 개화파 잔당이라고 하여 尹景純・李應浩・全興龍・尹啓完・全昌基・閔昌洙・崔聖郁・李相祿・申興模・李禹石 등을 체포하여 잔혹한 고문을 가하면서 조사한 후 처형하였다.4) 갑신정 변 실패 후 재집권한 친청 수구파정권이 개화당이라고 하여 처형한 희생자수는 약 1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5)

갑신정변 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편집한《甲申事略》의 부록에서는 갑신정변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해 수구당 요인이 민태호·조영하 등 7인, 개화당 요인이 홍영식·박영교 등 9인, 조선군 전사자 38명, 조선인 피해백성 88인, 조선인 피해여인 7명 등 조선인 사망자를 모두 149명으로 들었다. 한편 중국인 사망자는 10명, 일본인 피해자는 사망자 35명, 행방불명 3명 등 38명이라고 하였다.6)

수구파정부는 행방불명된 李寅鍾·李圭完·黃龍澤·崔殷童·高永石·朴齊綱·朴三龍·劉鴻基·白學鎭·李熙德·雲伊·李殷鍾·張明煥·浪昌寬·張聖寬·車壽鉉·申錫模·任鎭奎 등에 대해서는 체포령을 내려 계속 추적케 하였다.7) 갑신정변 실패의 영향으로 개화당 가담자들은 국내에서 처참하게 몰락하여 친청 수구파정권과 청군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였다. 국민들과 진

^{2)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10월 24일.

[《]高宗實錄》, 고종 21년 10월 24일.

^{3)《}推案及鞫案》,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亞細亞文化社 영인판 30책). 李光麟, 앞의 책 176쪽.

^{4)《}推案及鞫案》326³⁴,謀反大逆不道罪人景純等鞫案. 李光麟, 위의 책,177~178쪽 참조.

⁵⁾ 李光麟, 위의 책, 181쪽 참조.

⁶⁾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編,《甲申事略》,附錄死亡者人名錄. 李光麟, 위의 책, 174~175季 참조.

^{7) 《}備邊司謄錄》, 고종 22년 12월 22일 참조.

신들 사이에도 이제는 신변안전을 생각하여 감히 '開化'를 말하는 사람이 없 게 되었고 나라의 개화정책은 자연히 침체하게 되었다.⁸⁾

(3) 조선 · 일본의 교섭과 〈한성조약〉의 체결

갑신정변은 조선·일본·청국의 삼국관계에도,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갑신정변의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조야 에서는 일본인 38명(일설 40명)이 살해된 사실을 들어 청국에 대한 성토 여론 이 일어났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청국을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 용하여 조선의 민비 수구파정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해서 조선정부를 굴복시 켜 침략을 강화하고 배상금까지 받아 내려 획책하여, 1884년 10월 27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동방침을 논의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일본정부는 외무대신 이노우에(井上馨)를 특파전권대사로 임명했으며, 이노우에는 군함 7척에 육군 2개 대대와 회담에 필요한 수행원을 거느리고 1884년 11월 14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조선측에서는 김홍집을 전권대사로 임명하고 조병호와 묄렌도르프가 보좌하여 대응케 하였다. 이노우에는제1차 회담에서는 일본인 피해를 모두 조선측에 전가시키는 일방적 주장을하더니, 11월 23일의 제2차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본측이 작성해온 무리한 요구의 조약 초안을 제출하였다.

- ① 조선정부가 정식으로 일본에 사과할 것.
- ②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
- ③ 이소바야시(磯林) 일본군 대위를 살해한 자를 색출하여 처형할 것.
- ④ 일본공사관을 건축해 줄 것.
- ⑤ 일본공사관에 호위병을 배치할 것.
-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11월 23일)

이노우에는 조선정부가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힘으로 처리하겠다고 노 골적으로 위협하였다. 조선측은 일본인들이 다수 청군과 충돌하여 사망한 것 이며, 일본공사관이 불탄 것은 일본공사관 직원들이 기밀문서를 소각하다

⁸⁾ 朴殷植,《韓國痛史》(《朴殷植全書》, 98~100쪽 참조).

가 일어난 것임을 들어 반박하였다. 그러나 군함 7척과 2개 대대 일본군의 무력 위협에 눌려 1884년 11월 24일(양력 이듬해 1월 9일) 초안을 거의 그대 로 수용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漢城條約〉이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1조 조선국은 國書를 보내어 일본에 사의를 표명할 것.

제2조 이번 일본국 피해인민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또 상 인의 재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변상하기 위해 朝鮮國은 11萬圓을 지불할 것.

제3조 이소바야시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조사 체포하여 중형에 처할 것.

제4조 일본공사관은 新基地로 옮겨 지을 것을 요하는 바, 마땅히 朝鮮國이 그 기지를 제공하여 공사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함에 족하도록 할 것이요, 그건축에는 朝鮮國이 다시 2萬圓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할 것.

제5조 일본호위병의 營舍는 공사관의 부근 토지에서 택정하되 제물포조약 제 5조에 비추어 시행할 것.

[별 단]

- ① 조약 제2·제4조의 금액은 日本銀貨로 계산할 것이며, 3개월 이내에 인천에서 완불할 것.
 - ② 제3조의 흉도를 처단함은 이 조약이 성립된 이후 20일을 기한으로 할 것. (《高宗實錄》, 고종 21년 11월 24일)

일본측이 갑신정변에 개입한 것은 조선 수구파정부가 일본측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인데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갑신정변에의 일본측 개입 책임을 조선 수구파정부에 전가하고, 또한 주로 청군에게 살해당한 일본인의 가족부양비 11만 원과 일본인들 스스로가 불지른 일본공사관의 부지와 건축비 2만원 등 13만 원을 약탈하는 조약에 조선 수구파정권이 굴복하여 서명했으니, 무력위협에 눌려 완전히 부당한 굴욕외교를 한 것이었다. 한편 이노우에는 일본공사관을 호위한다는 구실로 일본군 1개 대대를 서울에 남겨 놓고 1884년 1월 26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조선 수구파정부는 이 조약을 지킨다고 이소바야시대위 살해범으로 12월 13일 金大興·元漢甲을 처형하고, 12월 20일에는 徐相雨를 특파전권대신, 묄렌도르프를 특파전권 부대신으로 圖書를 갖고 일본에 파견하여 사과를 했으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과를 한 통탄할 굴욕외교를

한 것이었다. 〈한성조약〉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정부를 매우 깔보게 되었으며 침략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4) 청국·일본의 교섭과 〈천진조약〉의 체결

한편 청국정부는 갑신정변의 보고를 받자, 안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사건처리의 책임을 맡기었다.

이홍장은 吳大澂을 조선에 급파하여 진상을 조사케 하는 한편, 丁汝昌에게 군함 2척을 이끌고 조선에 출동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청국주재 일본공사에게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청국측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정여창은 11월 6일에 군함 2척에 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양만馬山浦에 도착하여 11월 8일 서울에 들어왔고, 오대징은 11월 13일에 마산포에 도착하여 11월 17일에 서울에 들어왔다. 청국측은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여 조선 수구파정부가 굴욕적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청국세력을 한반도에서 내보내기 위해 청국과 전쟁을 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한성조약으로 조서에서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어 냈으므로 당분간 청국과 타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청국주재 영국전권공사 파아크스(Harry S. Parks, 巴夏禮)를 중재로 청국에게 청・일양국군의 한반도로부터의 철수를 제의하니, 청국측도 동의하였다.》이에 청국측 수석전권대신 이홍장과 일본측의 특과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1885년 3월 4일(양력 4월 18일) 중국 천진에서 이른바〈天津條約〉이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① 청국은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하여 조선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키로 한다. 조약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국은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여 서로의 염려를 없애도록 한다.

^{9) 《}日本外交文書》18刊, 문서번호 130, 日清ノ衝突ヲ避クル爲メ清國へ撤兵ヲ乞ヒ國王保護ノ爲メ英兵ヲ依賴ノ件, 208~210癸 참조.

중국군은 馬山浦로부터 철수하고 일본군은 仁川港으로부터 철수한다.

- ② 양국은 함께 조선국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해서 치안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조선국왕이 다른 외국 무관 1인이나 수인을 초빙하여 교련의 일을 위임토록 하되, 청국·일본 양국은 자국인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해서 교련하는일이 없도록 하다.
- ③ 장래 조선에 만약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어 청국・일본의 두 나라 또는 한 나라가 파병을 요할 때에는 응당 그에 앞서 상호 (外交)文書를 보내어 알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日本外交文書》18권, 문서번호 162, 伊藤大使・李鴻章天津談判/件(6), 290쪽 참조)
- 이 천진조약의 내용은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있을 때 주인인 조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국과 일본이 '균등하게 간섭과 파병의 권리'를 갖는다는 침략적 국제조약이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략에 이어서 청국과일본이 야합하여 침략자로서의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규정한 침략적 조약이었다.
- 이 조약대로, 1885년 6월 10일 일군은 인천항, 청군은 마산포에서 각각 동시에 물러갔다. 이후 청·일양국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의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며 조선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2)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

갑신정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정권을 장악하여 개화당의 신정부를 수립하고 혁신정강을 선포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신정권을 3일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갑신정변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운동이었다.

첫째, 갑신정변은 세계사적으로 한국민족이 대개혁을 단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권을 장악해서 '위로부터의 자주근대화의 대개혁'을 단행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전근대적 국가체제를 청산하고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과감한 자주근대화운동이었다.10)

¹⁰⁾ 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全集, 109~111零).

세계근대사와 동아시아근대사를 보면 '정한론' 이후 한국침략을 노리던 일본제국주의가 실제로 이웃 나라를 식민지화할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빨리 잡아보면 청·일전쟁(1894~1895) 무렵이고 늦게 잡아보면 러·일전쟁(1904~1905) 무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경우를 취해 보면, 갑신정변(1884)의 10년 후에는 일본이 제국주의 실력을 확립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침략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개화당의 영민한 청년들이 청국의 시대착오적인 속방화 간섭정책과 근대화 저지정책을 일거에 타도하고 자기 조국의 자주독립과 자주근대화를 위해 10년의 급속한 근대국가 건설기간을 가지려고 시도한 것은 역사적으로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화당은 당시 외세의 침략 압력의 급박성과 개항 직후 한국정치사회의 상대적 낙후성의 큰 격차 때문에, 국민대중의 성숙을 기다려 '아래로부터의 자주근대화'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먼저 정변의 방법으로 정 권을 장악하여 독립과 근대화를 저지하고 있는 청국세력을 몰아내고 국민을 교육하면서 '위로부터의 자주근대화'를 단기간에 수행하려고 한 것이었다.¹¹⁾

세계사에서 늦게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들 중의 성공한 나라들이 모두 단 기간에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유형을 실행한 나라들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갑 신정변의 급속한 위로부터의 자주근대화운동은 세계사에서의 성공한 근대화 유형의 하나를 추구한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갑신정변은 한국근대사상 개화운동에 일정 방향을 정립해 주었다.

갑신정변은 정치적으로는 청국의 종주권 주장과 내정간섭을 단호히 철폐하여 완전 자주독립을 실현하고 전근대적 전제군주제도를 입헌군주제의 방향으로 개혁하여 근대국가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양반신분제도와 문벌제도를 폐지하고 국민평등권리의 제도를 제정하여 신분사회를 근대시민사회로 변혁시키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중세적 경제조직과 특권상업제도를 폐지하고 회사형태의 상 공업 자유기업에 의한 근대자본주의적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문화적으로는 양반중심의 귀족문화를 철폐하고 일반 국민중심의 근대문화

¹¹⁾ 徐載弼, 〈回顧甲申政變〉(앞의 책, 82쪽 참조).

와 신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전근대적 군사제도를 개혁해서 사관학교와 근위대와 신식 육군·해군을 창설하여 국방을 자기 무력으로 실행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낙후한 전근대적 국가와 사회체제를 선진적인 근대적 국가와 사회로 개혁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의 국가개혁은 그 이후의 모든 개화운동이 계승하여 추구한 것이었으며, 10년 후의 갑오개혁은 갑신정변의 개혁안을 다른 상황에서 계승 하여 실행한 측면이 많은 것이었다.

셋째, 갑신정변은 한국의 반침략 독립운동에도 하나의 근대적 기원을 정립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은 당시 청국의 시대착오적인 對朝鮮 '屬邦化'정책과적극 간섭정책을 타도하고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과감한운동이었지만, 이 운동의 내부 성격은 비단 청국의 침략만이 아니라 모든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추구가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朴殷植이 그의 고전적 저서《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제1장을〈甲申獨立黨의 革命失敗〉로부터 시작한 것은 갑신정변을 한국독립운동의 근대적 시작으로 본 때문이었다.12)

넷째, 갑신정변은 한국의 근대민족주의 사상과 운동의 형성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운동이었다. 한국근대사에서 모든 근대민족주의 운동은 갑신 정변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그것을 반성하고 발전시킨 것이 매우 많았다. 그 후의 갑오개혁의 자주적 부문,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 애국계몽운동은 직접적으로 갑신정변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운동이었다고 볼수 있다.

〈愼鏞廈〉

¹²⁾ 朴殷植,《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全集》 상, 451쪽 참조).

찾 아 보 기

$[\neg]$

《각국세칙》 《各國稅則》 116 《각국조약》《各國條約》 116 〈각군문변통절목〉 〈各軍門變通節目〉 153 각료회의 閣僚會議 412 116 감생청 減省廳 43, 44, 92, 95, 151, 152 《갑신사략》 《甲申事略》 429 〈갑신일록〉 〈甲申日錄〉 9, 351, 374, 406 갑신정강 甲申政綱 9,10,68,158,406, 407, 411, 413, 420 갑신정변 甲申政變 $7,9 \sim 11,24,38,43,$ 54.68 갑오개혁 甲午改革 435 갑오경장 甲午更張 39, 43 강문형 姜文馨 106, 115, 123, 164 강위 姜瑋 23, 355, 357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21,125,166, 224, 301 강화도주전소 江華島鑄錢所 182 개국론 開國論 79 개국연호 開國年號 142 개국통상 開國通商 44, 45, 226, 234, 247 개국통상론 開國通商論 234 개량서당 改良書堂 46 개항장 開港場 개항정책 開港政策 235 개혁운동 改革運動 392 개혁정치 改革政治 9

개화 開化 18,35,62 개화당 開化黨 $7 \sim 11, 22, 25, 28, 44,$ 241, 333, 337~339, 341, 347, 349, 357, 375, 377, 379~396 개화당 요인 開化黨 要人 372 개화사상 開化思想 $2\sim6, 10, 15\sim20$ $22 \sim 24, 28, 52 \sim 54, 57, 61, 64, 73 \sim 76$ 개화사상가 開化思想家 개화상소운동 開化上疏運動 124 개화세력 開化勢力 개화운동 開化運動 7, 10, 64, 74, 146, 339, 377, 435 개화유생 開化儒生 124 개화의식 開化意識 54 개화정책 開化政策 $5\sim7, 11, 21, 29, 43,$ 61, 64, 75, 117, 124, 152, 186, 188, 224, 243, 287, 292, 342, 344, 345, 349, 420 개화과 開化派 $4, 15, 19 \sim 34, 36 \sim 40,$ $42 \sim 49, 51, 54, 62, 71, 75, 144, 340, 345,$ 375 개화파관료 開化派官僚 47, 284 객주 客主 $177 \sim 181$ 객주도중 客主都中 177, 178, 180 객주분장읍 客主分掌邑 181 《거류조례》 《居留條例》 116 거제도 巨濟島 300 건청궁 乾淸宮 195 견직물시장 絹織物市場 163 결사영상 結社營商 180 결자영상 結資營商 180 경강상인 京江商人 274 경군 京軍 269 경군4영 京軍四營 154 〈경성농상회장정〉 〈京城農桑會章程〉

438 개화와 수구의 갈등

159 국민주권론 國民主權論 74 경신학교 儆新學校 193 국민주권사상 國民主權思想 74 경우궁 景祐宮 8,398 국민참정권사상 國民參政權思想 경응의숙 慶應義塾 112,353 국서제정식 國書提呈式 140,142 경중5부 京中五部 263 국안 鞫案 368 경찰제도 수립 警察制度 樹立 국제통상 國際通商 183 418 계동궁 桂洞宮 405 국제통화 國際通貨 183 계사조직 稧社組織 178 국채모집 國債募集 342 고대수 顧大嫂 20, 23, 374, 397 국채위임장 國債委任狀 392 고덕철 高德哲 군계선함사차정 참획관 軍械船艦事差定 275 고영문 高潁聞 59,60,179,250 參劃官 107 고영석 高永錫(石) 365 군계학습 軍械學習 128 고흥종 高興宗 24,373 군계학조사 軍械學造事 125, 130, 134, 곡물수출 穀物輸出 232 320 《공보초략》 《公報抄略》 59,185 군국기무아문 軍國機務衙門 47 《공부성》 《工部省》 115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 43 공장 工匠 129 군국아문 軍國衙門 175 곽기락 郭基洛 55,86,248 군무사 軍務司 38 군물사 軍物司 38 관세권 회복 關稅權 回復 172 관세설정 關稅設定 45,46 군병집단 저항사건 軍兵集團 抵抗事件 관세자주권 關稅自主權 46, 168, 171 277 관청 말단직책 官廳 末端職責 266~ 군함 도입 軍艦 導入 417 268 궁궐침입사건 宮闕侵入事件 273 관허문빙 官許文憑 181 규장각 폐지 奎章閣 廢止 407,417 광동수사제독 廣東水師提督 135 균세 均勢 333 광인사 廣印社 188 균세외교론 均勢外交論 87 광혜원 廣惠院 196 균세정책 均稅政策 44,45 교련소 敎鍊所 균세지법 均勢之法 381 333 교린사 交隣司 균역청 고지기 均役廳 庫直 38 268 교육개혁론 敎育改革論 194 균평회사 均平會社 180 교하농상사 交河農桑社 160 근대교육 近代敎育 194 구로다 黑田淸隆 235 근대국가 近代國家 379, 380 국권회복운동 國權回復運動 근대문화 近代文化 253 417, 434 국기 사용 國旗 使用 345 근대시민사회 近代市民社會 434 근대자본주의 近代資本主義 국문자모호마타법 國文字母號碼打法 근대화정책 近代化政策 232,380 195 국민교육 國民敎育 194 《근세조선정감》 《近世朝鮮政鑑》 355 국민국가 國民國家 76,166 근위대 설치 近衛隊 設置 407,416 124 금위영 禁衛營 269 국민국가수립론 國民國家樹立論 국민자유권사상 國民自由權思想 74 금은화폐 金銀貨幣 183

급보제 給保制 269 김홍집 金弘集 19, 29, 34, 43, 45, 46, 급진개화파 急進開化派 7, 29, 36, 37, 57, 81, 82, 91, 117, 119, 168, 170, 224, 243, 247, 320, 399, 424 $54, 55, 61 \sim 64, 68 \sim 73, 75, 122$ 368 급진과 急進派 32 김흥룡 金興龍 기계사 機械司 38 기기창 機器廠 42, 136, 153 [L] 기무처 機務處 43, 95, 151, 307 기선건조론 汽船建造論 249 낙농업 酪農業 161 기선회사 汽船會社 난전 亂廛 271 기술교육론 技術教育論 남녀평등론 男女平等論 74 249 기연사 譏沿司 39 남로전선 南路電線 195 남별궁 南別宮 기연해방영 畿沿海防營 297 101 기우만 寄宇萬 253 남양부 南陽府 135 《기화근사》《箕和近事》 59 남한교련병대 南漢教鍊兵隊 154, 353,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 〈吉林朝 370 鮮商民隨時貿易章程〉 남한산성군 南漢山城軍 368 330 남흥철 南興喆 길모어 G. W. Gilmore 191 김가진 金嘉鎭 납세의무 納稅義務 102 181 김경수 金景遂 59, 185 당창환(관) 浪昌煥(寬) 368 김기수 金綺秀 내각제도 內閣制度 80, 117, 185 413 김만식 金晩植 내각회의 內閣會議 185, 190 412 김명균 金明均 153 내무부 內務府 102.151 내수외양(론) 內修外攘(論) 김병시 金炳始 43 208, 211. 김보현 金輔鉉 46, 285 214, 216, 217, 219 김봉균 金奉(鳳)均 24, 365 내시부 폐지 內侍府 廢止 407, 412 김양한 金亮漢 112 내아문 內衙門 151,308 김옥균 金玉均 $5,7 \sim 9,17 \sim 28,33,34,$ 노사 기정진 蘆沙 奇正鎭 6, 52, 207, $51, 53, 59, 61, 63, 68, 69, 71 \sim 73, 88, 97 \sim$ $213 \sim 217, 253$ 99, 101, 112, 117, 119, 122, 144, 333, 334, 노응규 盧應奎 253 노인계 老人契 336, 340~343, 347, 351, 352, 356, 360, 361, 275 365, 376, 377, 379, 382, 385, 386, 390~396 농목국 農牧局 162 김용원 金鏞元 107 농무목축시험장 農務牧畜試驗場 50, 김윤식 金允植 18, 19, 34, 43, 44, 58, 51, 103, 161 63, 64, 67, 86, 92, 96, 102, 124, 129, 133~ 농상공사 農桑公司 50 135, 153, 158, 170, 187, 188, 295 《농상무성직장사무》 《農商務省職掌事 김인식 金寅植 48 務》 114 김장손 金長孫 농상소 農桑所 280, 282 103 김창기 金昌基 24, 368 농업시험장 農業試驗場 50, 51 김평묵 金平默 6, 207, 212, 217, 230, 247 《농정신편》《農政新編》 50, 59, 112, 김학우 金鶴羽 160.164 102

《농정촬요》 《農政撮要》 164 농촌수공업 農村手工業 164

[=]

다이 William McEntvre Dve 茶伊 155 다케조에 竹添進一郎 8, 171, 337, 340, 343, 386, 392, 393, 398, 401, 405 단발 제1호 短髮 第一號 단천금광 端川金鑛 341 당경성 唐景星 134 당소위 唐紹威 190 당오전 當五錢 $181 \sim 184,342$ 대개혁정치 大改革政治 404 대경장개혁 大更張改革 $10,34 \sim 36,$ 69, 71, 380 대고 大考 192 대군주 大君主 137,142 대동지심 大同之心 216 《대동학회월보》 《大東學會月報》 67 대신・참찬회의 大臣・參贊會議 407, 412 대외통상정책 對外通商政策 319 대원군 2차정권 大院君 二次政權 288 대원군 납치(사건) 大院君 拉致(事件) 297, 305, 345 대원군정권 大院君政權 $278.290 \sim 292.$ 297, 316 대일무관세무역 對日無關稅貿易 319 대정유신 조서 大政維新 詔書 〈대조선국 국서〉 〈大朝鮮國 國書〉 140 대조선열국입약책 對朝鮮列國立約策 126 대치 유홍기 大致 劉鴻(洪)基 $15 \sim 17, 19, 22, 23, 28, 53, 54, 63, 88, 89, 119$ 337, 352, 354, 355, 357 대한독립국정책 對韓獨立國政策 137 대한속방정책 對韓屬邦政策 137 대한종주권 對韓宗主權 339 데니 O. N. Denny 德尼 102

도객주 都客主 179 도고 都賈 178 도봉소사건 都捧所事件 278, 280, 316 도상 都相 149 도임방 都任房 174 도접장 都接長 $173 \sim 175$ 독립국가 獨立國家 385 《독립신문》 《獨立新聞》 독립협회 獨立協會 $11,73\sim75$ 독전자주지국 獨全自主之國 379, 408 동남제도개척사겸관포경사 東南諸島開 99, 342, 356 拓使兼管捕鯨事 동도서기 東道西器 213, 256 동도서기론 東道西器論 $35,54 \sim 62,$ 75, 84, 124, 251 동래암행어사 東萊暗行御史 39.106 동문사 同文司 150 동문학 同文學 47, 185, 186, 190, 191, 193 동별영 東別營 282, 283, 286 동순태 同順泰 163, 341 〈동정선후육책〉 〈東征善後六策〉 30 동학사상 東學思想 2,52 두모진 豆毛鎭 167 두묘제조법 痘苗製造法 196 등소 等訴 282, 316 뚝섬주민 저항사건 纛島住民 抵抗事件 275

[ㄹ]

로우엘 Percival Rowell 魯越 139

[口]

마건상 馬建常 346 마건충 馬建忠 87, 134, 190, 325, 345 《만국공법》 《萬國公法》 57, 70, 87, 333 만민공동회운동 萬民共同會運動 11

만인소 萬人疏 226, 243, 247 망곡처소 望哭處所 289 《매일신문》 《每日新聞》 67 맥케이 Willam Mckay 195 맥클레이 R. S. Maclav 72 메르덴스 A. H. Maertens 麥登司 164, 165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54,68 모반대역부도죄 謀反大逆不道罪 366 모범농장 模範農場 160, 161 모오스 James R. Morse 343, 344 목방 木房 276 목수동업조합 木手同業組合 276 목수집단 저항사건 木手集團 抵抗事件 276 묄렌도로프 Paul G. von Möllendorff. 30, 46, 96, 99, 136, 139, 171, 穆麟德 172, 183, 190, 307, 342, 345, 346, 377, 399, 427, 428 무관세무역 無關稅貿易 264, 320 무력행사 武力行事 35, 381, 395 무뢰지류 無賴之類 272 무명잡세 無名雜稅 178 무불 탁정식 無不 卓挺埴 23, 83, 90 무비자강책 武備自强策 125, 148, 319 《무역장정》 《貿易章程》 116 《무역칙류》 《貿易則類》 116 무예학습 武藝學習 128 무위소 武衛所 153, 174, 271 무위영 武衛營 154, 272, 283 무항지배 無恒之輩 272 문벌제도 폐지 門閥制度 廢止 409, 411 《문부성》《文部省》 115 문은차관 紋銀借款 345 문호개방론 門戶開放論 249 미곡객주 米穀客主 177 미곡상 米穀商 274 《미구회람실기》 《米歐回覽實記》 116, 117

미국무역상사 American Trading Company 米國貿易商社 343 미야모토 고이치 宮本少一 110 민결호 閔謙鎬 279, 282 민병석 閔丙蘋 399 민본・위민사상 民本・爲民思想 209 민비 국상 閔妃 國喪 288, 291 민비 수구파 閔妃 守舊派 7, 10, 30, 37, 378, 380, 381, 383~389, 392, 408 민비 수구파정권(정부) 閔妃 守舊派政權 (政府) 11, 378, 424, 430 민생안정책 民生安定策 158 민영목 閔泳穆 8,368 민영익 閔泳翊 $44,68,98 \sim 101,106,$ $108, 139 \sim 141, 144 \sim 146, 183, 333, 347,$ 348, 351, 361, 399, 400, 402 민영환 閔泳煥 102 민응식 閔應植 287 민족운동 民族運動 252 민족자주운동 民族自主運動 212 민족주의사상 民族主義思想 207 민종묵 閔種默 106, 116, 164 민종식 閔宗植 253 민창수 閔昌洙 24, 367, 368, 372 민치상 閔致庠 234 민태원 閔泰瑗 민태호 閔台鎬 8, 182, 284, 415

[日]

박규수 朴珪壽 $2 \sim 5, 15 \sim 22, 53 \sim 55,$ 63, 88, 89, 119, 234 박기종 朴淇鍾 59, 249 박문국 博文局 $32.48.185 \sim 188$ 박영교 朴泳教 17, 18, 59, 88, 432 박영창 朴永昌 23 박영효 朴泳孝 $17, 24 \sim 26, 48, 51, 70,$ 72, 88, 97, 98, 112, 117, 119, 122, 185, 186, $302, 308, 334, 341, 342, 352, 358, 362 \sim 365,$ $370 \sim 373, 380, 381, 391 \sim 393, 399 \sim 402$

442 개화와 수구의 갈등

박영효〈건백서〉 朴泳孝〈建白書〉 117 박응학 朴應學 23, 359 박정양 朴定陽 106, 111, 113, 123, 164 박제가 朴齊家 3, 54 박제경 朴齊絅 355, 399 박지원 朴趾源 3, 16, 53, 54 방곡령 放穀令 172 배재학당 培材學堂 193 백계창 白季昌 276 백낙관 白樂寬 284 23 백낙운 白樂雲 백춘배 白春培 22, 356, 357 번상 番上 269 벙커 D. A. Bunker 193 **増**사위정 闢邪衛正 245 변수 邊緣(樹) 23, 44, 94, 161, 333, 338, 355, 399 변원규 卞元圭 81, 126, 127, 133, 320 변정사 邊政司 38 별궁 別宮 363, 397, 399, 400 별기군 別技軍 6, 42, 43, 86, 105, 150, 153, 154, 241, 272, 316 별기군 폐지 別技軍 廢止 병인〈척사소〉 丙寅〈斥邪疏〉 214 병인양요 丙寅洋擾 207, 209, 232, 234 병자수호조약 丙子修好條約 166, 235, 236 보부상 褓負商 172, 173, 175, 415 보부상단 褓負商團 173 보빙사 報聘使 44, 68, 100, 161, 338, 347, $351 \sim 353$ 보상객주 褓商客主 177 보스턴박람회 보스턴博覽會 160 보정부 保定府 68, 132, 377, 408 보행객주 步行客主 177 〈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 〈奉天與朝 鮮邊民交易章程〉 306, 330 부랑자 浮浪者 266, 268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 釜山口設海底電

線條款 195 《부산원산반년수출입표》 《釜山元山半年 輸出入表》 111 부산 제생의원 釜山 濟生醫院 196 부산해관 釜山海關 172, 341 부산해관 수세사건 釜山海關 收稅事件 168 부상 負商 174, 370 부상객주 負商客主 177 〈부상청절목〉 〈負商廳節目〉 174 부상 통령 負商 統領 366 북로전선 北路電線 195 북산행차 北山行次 422 북양수사제독 北洋水師提督 135 북창 北倉 136 북청 北靑 308 북청군대 北靑軍隊 $384,387 \sim 391$ 북청양병 北靑養兵 383, 384 북촌 北村 16, 17 북학과 北學派 54 분장권 分掌權 181 불평등조약 不平等條約 169 불평등조약개정 不平等條約改正 168. 171 빙표 憑標 181 빙햄 John A. Bingham 101, 139, 344

[人]

사관교육 士官敎育 416 사관학교 士官學校 416 사교 邪敎 244, 249 사단칠정 四端七情 203 사대교린 事大交隣 80 사대사 事大司 사대외교 事大外交 136 사림 士林 200 사문난적 斯文亂賊 200 사상 私商 173 4영체제 四營體制 308

사학 邪學 206, 210 선여각주인 船旅閣主人 176 《사화기략》《使和記略》 선여객주인 船旅客主人 176 117 산업진흥책 産業振興策 선함사 船艦司 249 38 삼군부 三軍府 287 선혜청 宣惠廳 279 삼일천하 三日天下 350,423 선후사의육조 善後事宜六條 325 상공업회사 商工業會社 설관수세 設關收稅 415 167 상리국 商理局 176 〈설금조목〉 〈設禁條目〉 167 상리소 商理所 174 성인묵 成仁默 281 《세관규례》 《稅關規例》 상미전 上米廛 274 116 상법회사 商法會社 180 《세관사례》 《稅關事例》 111 상설 조폐기관 常設 造幣機關 《세관사무》《稅關事務》 116 181 상소운동 上疏運動 세궁민 細窮民 235, 316 269 상업 商業 175 세창양행 世昌洋行 195 상업독점권 商業獨占權 소상인 小商人 266, 312 415 상업세 商業稅 178 속방론 屬邦論 137 상업수세 商業收稅 173, 180 속방(화)정책 屬邦(化)政策 346, 379, 상업작물 재배 商業作物 裁培 164 380, 409 상의소 商議所 손봉구 孫鵬九 180 112 송병선 宋秉璿 상전 床廛 271 231 상점개설권 商店開設權 송헌빈 宋憲斌 309 111, 112 상품작물 上品作物 쇄국양이정책 鎖國攘夷政策 312 136 상호 商號 180 수구당 守舊黨 26 수구과 守舊派 상회 商會 180, 181 6, 8, 26, 28, 37, 48, 71, 상회사 商會社 $179 \sim 181$ 389 서광범 徐光範 17, 18, 24, 36, 44, 89, 수구파 영수 守舊派 領袖 139, 146, 334, 338, 353, 399, 401 수사학당 水師學堂 130 서구문화 수용론 西歐文化 受容論 124 수신사 修信使 80~82, 112, 168, 169, 서기이용책 西器利用策 249 341, 342, 345, 365, 371 서로전선 西路電線 195 《수신사일기》 《修信使日記》 117 서세동점 西勢東漸 205, 225, 229 수신사행 修信使行 105 서울 263 〈순보서〉 〈旬報序〉 187 서울주민 서울住民 265 순사제도(설치) 巡査制度(設置) 407, 《서유견문》 《西遊見聞》 65, 75, 117 418 서재창 徐載昌 23, 160, 354 슈미트 Schmidt 斯米德 서재필 徐載弼 23, 33~35, 73, 156, 348, 슈펠트 Robert W. Shufeldt 薛斐爾 82. 353, 357~360, 366, 376, 379, 387, 400, 409, 87, 137, 170 410 스커더 Charles L. Scudder 서학 西學 53,205 스크랜턴부인 M. E. Scranton부인 193 서학금단책 西學禁斷策 승호법 陞戶法 211 270 선상객주 船商客主 176 시마무라 島村久 399

안경수 安駒壽 184

시부자와 에이치 澁澤榮一 안변 安邊 344 300 〈시폐(재)소〉 〈時弊(再)疏〉 127 안종수 安宗洙 50, 59, 112, 160, 164 신건친군 新建親軍 알렌 Horace N. Allen 安連 154 196 신교육 新敎育 76, 418, 435 압구정 鴨鷗亭 365 애국계몽사상 愛國啓蒙思想 신기선 申箕善 55 75 신문구독 新聞購讀 애국계몽운동 愛國啓蒙運動 188 11, 75 신문화운동 新文化運動 75 애스턴 William George Aston 阿順頓 신복모 申福模 23, 86, 359, 368, 370~ 335, 339, 398 양무론 洋務論 372, 381, 397, 400 92 양무운동 洋務運動 신사상 新思想 54, 63 19 신사신의해관세칙 辛巳新擬海關稅則 양물금단론 洋物禁斷論 214, 217, 222 양물금단책 洋物禁斷策 170 211 233 신사(위정)척사운동 辛巳(衛正)斥邪運動 양물배척론 洋物排斥論 224, 246 양반신분제도 폐지 兩班身分制度 廢止 신사유람단 紳士遊覽團 57, 105, 150, 409, 411 160, 185, 186, 241, 352 〈양상규칙〉〈養桑規則〉 164 신서(적) 新書(籍) 2, 3, 15, 18, 20, 53 양잠산업 養蠶産業 162, 164, 165 신수통상장정초안 新修通商章程草案 양홍재 梁鴻在 356 양화진 楊花津 170 286, 309 신식 학교 新式 學校 어양척사론 禦洋斥邪論 46, 47 217, 218 신식 화폐 新式 貨幣 $183 \sim 184$ 어영청 御營廳 269 신응희 申應熙 23 어용독점행상 御用獨占行商 175 신정부구성 新政府構成 403 어윤중 魚允中 26, 34, 43, 44, 47, 51, 신중모 申重模 23, 33, 359, 360, 366, 64, 85, 87, 91, 95, 102, 106, 108, 109, 112 379, 385 \sim 114, 119 \sim 122, 132, 135, 294, 295, 324, 신채호 申采浩 328 신표 信標 175 어학사 語學司 39 언더우드 H. G. Underwood 신헌 申櫶 170 193 신흥촌락 新興村落 엄세영 嚴世永 106, 114 263 실학 實學 여객객주 旅客客主 53 177 실학사상 實學思想 20, 54 연무공원 鍊武公院 103, 156, 157 심상학 沈相學 106, 116, 119 〈연무공원직제절목〉 〈鍊武公院職制節 심상훈 沈相薰 405, 426 目> 156 쌀폭동 쌀暴動 274 《연암집》 《燕巖集》 5.53 연합정부 聯合政府 쓰다 센 津田仙 112 404 열국입약권도책 列國立約勸導策 [0] 영남만인소 嶺南萬人疏 6, 29, 86, 169, 224 영사재판권 領事裁判權 326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193

영선사 領選使

29, 41, 42, 57, 58, 82,

51, 194, 352,

336

 $206 \sim 208$,

6, 39,

86, 105, 128, 130, 150, 241 우정국 개국(낙성)식 축하연 郵征局 開 〈영선행중절목〉 〈領選行中節目〉 130 國(落成)式 祝賀宴 8,194,398 영세소상인 零細小商人 266 우정사 郵征司 194 영세수공업자 零細手工業者 266, 267 우정(총)국 郵征(總)局 영어학교 英語學校 47 363, 389, 397, 399, 400, 402 영업세 營業稅 180 〈우정총국장정〉 〈郵征總局章程〉 194 《영환지략》《瀛環志略》 3, 20, 53, 57, 운양호 雲揚號 153 63 운양호사건 雲揚號事件 80,148,224 오감 吳鑑 23, 354 운이 雲伊 373 오경석 吳慶錫 2~5,15~17,19~22, 운현궁 雲峴宮 282 울릉도 鬱陵島 150, 300, 356 53, 54, 89 오불가론 五不可論 238 울릉도 삼림채벌권 鬱陵島 森林採伐權 오세창 吳世昌 15, 19, 20, 23 343 오장경 吳長慶 30, 31, 135, 154, 295, 원산학사 元山學舍 46, 47, 193 297, 298, 346, 377 원산해관 元山海關 172 오중현 吳仲賢 190 원세개 袁世凱 30, 96, 102, 154, 185, 오창모 吳昌模 307, 346, 349, 377, 395, 405 364 온건개화파 穩健開化派 7,36,54,55, 원영찬 袁榮燦 136 원용팔 元容八 $62 \sim 65, 67, 75, 251$ 253 온건파 穩健派 32 월코트모범농장 Wolcott Farm 월코트 완전 자주독립국가 完全 自主獨立國家 模範農場 160 409 웨베르 K. I. Waeber 韋貝 완전 자주독립정치 完全 自主獨立政治 위원함 威遠艦 135 위정척사 衛正斥邪 29 410 왕도정치 王道政治 200 위정척사론 衛正斥邪論 왕십리 往十里 298 212, 217, 218, 223, 224, 230, 255~257 왕십리지역 往十里地域 279, 280, 298, 위정척사사상 衛正斥邪思想 311 199, 206, 207, 213, 227, 252~258 왜별기 倭別技 289 위정척사소 衛正斥邪疏 169 왜양분리론 倭洋分離論 237, 240, 251 위정척사운동 衛正斥邪運動 왜양일체론 倭洋一體論 125, 223, 240, 223~232, 236, 251, 252, 257, 258 248, 251 위정척사파 衛正斥邪派 6,7,28,29, 외국 양잠법 外國 養蠶法 62, 67, 251 164 《외무성》 《外務省》 116 유개 流丐 268.272 외아문 外衙門 151, 308 유길준 兪吉濬 18, 19, 44, 62, $64 \sim 66$, 용병제 傭兵制 269 98, 106, 109, 112, 117, 143, 158, 186 용호영 龍虎營 269 유리론 唯理論 213, 217 우두국 牛痘局 195, 196 유림 儒林 229 우두법 牛痘法 유문권주인 有文券主人 179 195 《우두신설》《牛痘新說》 196 유상오 柳相五 23, 24, 356

유신환 兪莘煥 56,92	이노우에 카오루 井上馨 293,300
유완수 柳完秀 249	이동인 李東仁 23, 25, 26, 28, 44, 82, 90,
유인석 柳麟錫 253	106, 120, 149
유재현 柳在(載)賢 8, 23, 349, 389, 390,	이만손 李晚孫 6, 226, 243~247
401, 402	이병호 李秉虎 23
유정수 柳定秀 85,112	이상록 李上祿 368
유중교 柳重敎 212, 224, 230	이상재 李商在 109
유춘만 柳春萬 280, 282	이석이 李錫伊 374
유혁로 柳赫魯 23, 356, 399	이소응 李昭應 253
《육개항장》 《六開港場》 116	《이언》 《易言》 57
육교시사 六橋詩社 355, 357	이와쿠라사절단 岩倉使節團 116
육군호산학교 陸軍戶山學校 23,94,	이용사 理用司 39
98, 111, 156, 353, 358, 366, 368, 375, 384	이용숙 李容肅 81, 83, 125, 170, 190
육영공원 育英公院 191~193	이용후생론 利用厚生論 249
〈육영공원설학절목〉 〈育英公院設學節	3 A 1.27
目〉 191	이우석 李禹石 23,374
윤경순 尹景純(慶淳) 365	이의히 本示命 106 111 115
윤경완 尹景完 23,401	이유원 李裕元 126, 304, 319
윤계완 尹啓完 368	이윤상 李允相 24,351,373
윤선학 尹善學 60,250	이은돌 李銀(殷)乭(石) 23,86,370,371
윤영관 尹泳觀 23,359	이응준 李應俊 133
윤웅렬 尹雄烈 23, 42, 308, 349, 382~	이응호 李應浩 23,368
384, 387	이이제이 以夷制夷 334, 394
윤치호 尹致昊 23, 108, 112, 333, 334,	이인종 李寅鍾 364, 365, 400
337, 338, 349, 361, 384, 389, 390, 399	이재긍 李載兢 23,89
윤치화 尹致和 167	이재면 李載冕 283
윤태준 尹泰駿 8, 133, 154, 286, 402	이재원 李載元 402,405
은표 銀標 182	이점돌 李點(占)乭 24,373
을사조약 乙巳條約 227	이제마 李濟馬 149
읍주인 邑主人 181	이조연 李祖淵 8, 132, 154, 399, 402
의려제도 義旅制度 211, 253	이준선 李駿善 127
의무교육제도 義務敎育制度 194	이창규 李昌奎 366
의병운동 義兵運動 201, 225, 252, 253	이최응 李最應 83,286
의정부 보상도소 議政府 褓商都所 174	이태원 梨泰院 298
의주 義州 130	이항로 李恒老 6,52,205,207,230,233,
의회설립론 議會設立論 74	240
이건영 李建英 23	이헌영 李 永 106, 107, 111, 118, 123
이규완 李圭完 23, 359, 366	이홍장 李鴻章 30, 44, 81, 83, 87, 92,
이근필 李根弼 234	96, 125, 137, 170, 242, 294, 304, 319, 328,
이노우에 井上角五郎 48, 186~188	334, 335, 345
•	•

이화학당 梨花學堂 자강 自强 62 193 이희정 李喜貞 364 자유기업의 설립 自由企業의 設立 인천개항 仁川開港 자유민권사상 自由民權思想 169 74, 75 인천전환국 仁川典圜局 184 자유상업 自由商業 415 자주개화사상 自主開化思想 인천해관 仁川海關 172 《일동기유》 《日東記遊》 117, 185 자주근대화운동 自主近代化運動 433, 《일본국내무성각국규칙》 《日本國內務省 434 各局規則》 114 자주독립국(가) 自主獨立國(家) 136, 《일본국내무성직장사무》 《日本國內務省 137, 142, 225, 241, 345, 380 자책교지 自責敎旨 職掌事務》 114 287 일본국정조사단 日本國政調查團 잠상공사 蠶桑公司 26, 164, 165 《잠상집요》 《蠶桑輯要》 28, 39, 44 164 《일본국제조례목록》 《日本國際條例目 《잠상촬요》《蠶桑撮要》 50, 164 錄》 116 잠업진흥정책 蠶業振興政策 165 《일본농상무성각국규칙》 《日本農商務省 잡곡전 雜穀廛 274 各局規則》 114 잡기지류 雜技之類 장건 張謇 《일본대장성직제사무장정》 《日本大藏省 306 장수성 張樹成 職制事務章程》 114 294 《일본문견사건》 《日本聞見事件》 185 장어영 壯禦營 272, 283 《일본사법성시찰기》 《日本司法省視察 장호원 長湖院 298 《재정견문》《財政見聞》 記》 114 113 일본시찰단 日本視察團 재프리 R. Jaffray 84 162 전관지역주인 專管地域主人 《일본육군조전》 《日本陸軍操典》 115 179 《일본육군총제》 《日本陸軍總制》 115 전매권 專賣權 174 일본 제일은행 日本 第一銀行 344 전선사 典選司 39 임(금)노동자 賃金勞動者 266, 267, 311 전수론 戰守論 210 전영교장 前營敎長 368 임방 任房 174 〈임술의책〉 〈壬戌擬策〉 전환국 典園局 181, 183, 184 216 임오군란 壬午軍亂 6,7,30~32,34, 전흥룡 全興龍 24 42, 43, 62, 133, 268, 278, 314 절영도 絶影島 150 임오군변 壬午軍變→임오군란 壬午軍亂 접장 接長 173 임은명 林殷明 23, 359 정군론 正軍論 220 임자무역 任自貿易 정난교 鄭蘭敎 179 23 임한수 林翰洙 383 정병하 鄭秉夏 22, 86, 109, 164 임헌회 任憲晦 56 정약용 丁若鏞 정여창 丁汝昌 입헌군주(정)체 立憲君主(政)體 76, 135, 294 정영조 鄭暎朝 413 249 정종진 鄭鍾振 23 [ㅈ] 정학 正學 205, 228

정한론 征韓論

299, 425

정행징 鄭行徵 23 395 정헌시 鄭憲時 47 〈조선국원변래학제조조련장정〉 〈朝鮮國 정현석 鄭顯奭 46, 47, 193 員弁來學製造操練章程〉 126, 130 제물포 濟物浦 296, 300, 302 조선대국론 朝鮮大局論 102 제물포조약 濟物浦條約 301, 341 조선보빙사 朝鮮報聘使 138~140. 제4차 보정부회담 第四次 保定府會談 $142 \sim 145$ 133 조선상무위원 朝鮮商務委員 제3차 수신사 第三次 修信使 116 〈조선선후육책〉 〈朝鮮善後六策〉 306 제2차 수신사 第二次 修信使 117 《조선신보》 《朝鮮新報》 26 제1차 수신사 第一次 修信使 조선전보총국 朝鮮電報總局 117 195 제1차 조러밀약 第一次 朝露條約 102 조선전선조약 朝鮮電線條約 195 《제영신편》 《濟嬰新編》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朝(鮮) 196 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 31,163,305, 제중원 濟衆院 196 조독수호통상조약 朝獨修好涌商條約 306, 309, 325, 329, 330, 345, 378 335 《조선책략》《朝鮮策略》 29, 45, 57, 조런국 操鍊局 156 $68, 82, 224, 226, 242 \sim 245, 317 \sim 319, 334$ 조로수호통상조약 朝露修好通商條約 336 336 조성교 趙聲敎 249 조문 趙汶 249 조세제도의 개혁 租稅制度의 改革 413 조미수호조약체결 朝美修好條約締結 《조야신문》《朝野新聞》 119 《조약유찬》 《條約類纂》 136, 248 111 조미수호통상조약 朝美修好通商條約 조영・조독수호통상조약 朝英・朝獨修好 44, 87, 146, 170, 334 通商條約 335 조병직 趙秉稷 조영하 趙寧夏 43, 345 106, 112 조병호 趙秉鎬 45, 86, 116, 170, 371 조용호 趙龍鎬 128 《조보》 《朝報》 185 〈조일선후조약〉 〈朝日善後條約〉 301 조・일수호조구 朝・日修好條規 5,21, 조사 朝士 39,123,352 조사시찰단 朝士視察團 105~110,112, 22, 45, 240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120 조선・독일수호조규 朝鮮・獨逸修好條 166 規 45 조일수호조약 朝日修好條約 301 조선・러시아수호조규 朝鮮・露西亞修好 〈조일수호조약속약〉〈朝日修好條約續約〉 條規 45 301 조선・미국수호조규 朝鮮・美國修好條 조준영 趙準永 106, 115, 123, 185 規 46 존중화양이적 尊中華攘夷狄 조선・영국수호조규 朝鮮・英國修好條 존화양이론 尊華攘夷論 211,212 44 《종두귀감》《種痘龜鑑》 196 조선・이태리수호조규 朝鮮・伊太利修好 종주권 宗主權 7,305~307 좌상 坐商 271,312 條規 45 〈조선개혁의견서〉 〈朝鮮改革意見書〉 《좌우포도청등록》《左右捕盜廳謄錄》

235

척사상소 斥邪上疏

친서의 밀칙 親書의 密勅

친청 수구파(정부) 親淸 守舊派(政府)

친위대 親衛隊 157

친일파 親日派 425

396

주복 周馥 294,324 척사정책 斥邪政策 241 주인례 主人例 177 척왜론 斥倭論 125 주전소 鑄錢所 181, 182 척화론 斥和論 209, 241 주전척화론 主戰斥和論 209 척화비 斥和碑 58, 302 《중동기》 《中東紀》 93,122 척화주전론 斥和主戰論 233 중암 重菴 218~220,224 천부인권설 天賦人權說 73 중체서용론 中體西用論 56 천세환 千歲丸 428 천주교 天主敎 중추원 中樞院 74 205, 249 천진기기국 天津機器局 41,92,127, 〈중추원신관제〉 〈中樞院新官制〉 74 《지구도경》 《地球圖經》 59 153, 155 지구의 地球儀 천진기기창 天津機器廠 57 18, 53 《지구전요》 《地球典要》 53 〈천진조약〉 〈天津條約〉 11,432,433 지도이념 指導理念 200 철물잠매 鐵物潛賣 276 지도 智島 368 청시절략 請示節略 318, 319, 321 지방장시 地方場市 172 초상국 招商局 172.322 지부복궐 持斧伏闕 226 초용함 超勇艦 135 〈지부복궐척화의소〉 〈持斧伏闕斥和議 총관기연해방사무 總管畿沿海防事務 368 疏〉 224, 236 지석영 池錫永 58,59,117,196 총세무사 總稅務司 172 지세법의 개혁 地稅法의 改革 414 총융청 總戎廳 269 지세제도 개혁 地稅制度 改革 413 최경석 崔景錫 51, 161, 162 지정불고죄 知情不告罪 366 최남선 崔南善 22 지조개정 地租改正 158,159 최성욱 崔聖郁 24, 368 지조법 개혁 地租法 改革 407,413 최영식 崔英植 373 진무영 鎭撫營 152 최은동 崔恩同(殷童) 365 진수당 陳樹棠 30, 31, 377, 393, 399 최익현 崔益鉉 224, 227, 230, 236~238, 240, 253 [ㅊ] 최한기 崔漢綺 53~55 최혜국조관 最惠國條款 309 차관교섭 借款交涉 356, 360, 370 《추안급국안》 《推案及鞫案》 310 차관도입 借款導入 341~343, 344, 345 춘당대 春塘臺 382 차홍식 車弘植 23, 366 충의계 忠義契 382, 385, 397, 398 참용서법 參用西法 321 〈치도약론〉 〈治道略論〉 72.99.117 친군 親軍 참정권 參政權 74 308 창덕궁 昌德宮 405 친군영제 親軍營制 348

310

채서론 採西論

척사 斥邪 62

척사론 斥邪論 125, 217, 223

척사론자 斥邪論者 215

 $251 \sim 252$

393, 428

[7]

쿠메 쿠니타케 久米邦武 116

[≡]

탁기환 卓琦桓 277 태극기 太極旗 142 태안함 泰安艦 135, 136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 務衙門 39, 151, 308, 333 통리군국사무아문 統理軍國事務衙門 39, 151, 308 통리기무아문 統理機務衙門 6, 32, 38, $39, 45, 47 \sim 49, 51, 83, 105, 107, 128, 148$ \sim 150, 172, 241, 287 통리내무아문 統理內務衙門 39, 308 통리아문 統理衙門 39, 308 통문 通文 280 통상사 通商司 38 〈통상장정〉 〈通商章程〉 166 〈통호규칙〉 〈通好規則〉 159 트렌턴호 Trenton號 143, 145 특권상업제도의 폐지 特權商業制度의 廢止 413, 415 특권행상 特權行商 415

[亚]

파사주경 派使駐京 320, 323, 324 파아크스 Harry S. Parkes 巴夏禮 334, 335, 432 평등사상 平等思想 18 평화행사 平和行事 35, 380, 395 포경권 捕鮑權 343 포삼관리 包蔘管理 150 포크 George C. Foulk 福久 140, 145,
 巫하군 標下軍
 269

 푸트 Lucius H. Foote 福徳
 44, 100, 137, 138, 145, 191, 335~338, 348, 350, 398

[8]

하급 군병 下級 軍兵 266, 268 하나부사 요시타다 花房義質 120, 171, 285, 295, 296, 300 하단엄궁상회사 下端嚴弓商會社 180 하도감 下都監 284 하미전 下米廛 274 하여장 何如璋 82 하응선 河應善 23 한국개혁당 韓國改革黨 25 《한국독립운동지혈사》 《韓國獨立運動之 血史》 11 한규직 韓圭稷 8, 308, 371, 389, 399, 402 한글전용 기사 한글專用 記事 188 한성개잔 漢城開棧 $326 \sim 327$ 〈한성부신문국장정〉 〈漢城府新聞局章 程〉 48, 186 《한성순보》《漢城旬報》 31, 32, 48, 63, 64, 71, 159, 188, 341, 378, 413, 417 《한성순보》 창간호 《漢城旬報》 創刊號 187 한성외국어학교 漢城外國語學校 193 한성전보총국 漢城電報總局 195 〈한성조약〉 〈漢城條約〉 11, 431 《한성주보》 《漢城周報》 64, 75, 103, 188 한의 漢醫 354 한종호 韓宗浩 275 항일구국운동 抗日救國運動 해관설립 海關設立 172 해관설치 海關設置 45, 46, 167 해관 총세무사 海關 總稅務司 《해국도지》 《海國圖志》 3,19,20,53, 57, 63

해군무관학교 海軍武官學校 193 89, 106, 115, 119~121, 139, 144, 146, 333, 해군 창설 海軍 創設 417 해당루 海棠樓 355,357 핼리팩스 T. E. Hallifax 奚來百士 47, 191, 193, 195 행상 行商 173, 271, 312 행상권 行商權 175 행형제도 개혁 行刑制度 改革 419 향헌비 鄕憲碑 383 허욱 許煜 282, 312 허원식 許元栻 127 허위 許薦 253 허치슨 W. du F. Hutchison 許見士 헐버트 Homer B. Hulbert 轄甫 191 험첩 驗帖 173 험표 驗標 174 혁명당 革命黨 25 현석운 玄昔運 109 현양사 玄洋社 299 혜상공국 惠商公局 71, 173, 175, 176, 413, 415 〈혜상공국절목〉 〈惠商公局節目〉 175 혜상공국 폐지 惠商公局 廢止 407. 415 호리모토 掘本禮造 23, 153, 154, 272, 284 홍삼 紅蔘 327 홍순목 洪淳穆 182, 183 홍시중 洪時中 $245 \sim 247$ 280 홍영식 洪英植 8, 17, 18, 43, 44, 68, 85,

350, 352, 397, 399, 423 홍재귀 洪在龜 226,235 홍재학 洪在鶴 86, 224, 225, 230, 247 화계사 華溪寺 366 화물객주 貨物客主 176,177 화서 華西 208~212, 217 화유국 華裕局 화이의식 華夷意識 258 화폐정책 貨幣政策 185 화폐주조 貨幣鑄造 181 화폐주조권 貨幣鑄造權 182 화폐주조사업 貨幣鑄造事業 184 화풍국 和豊局 134 화혼양재론 和魂洋才論 56 화자제도 폐지 還上制度 廢止 413, 414 환전객주 換錢客主 177 《황성신문》 《皇城新聞》 67 황준헌 黃遵憲 29, 45, 57, 82, 224, 242, 245, 336 회사 會社 48,415 회사 설립 會社 設立 회사제도 會社制度 71 횡빈정금은행 橫濱正金銀行 341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 25, 26, 28, 65, 90, 93, 118, 121, 122, 185, 334 훈련도감 訓鍊都監 269, 270, 315 훈련도감 군병 訓鍊都監 軍兵 279, 흥업지사 興業之事 164

집 필 자

개 요	신	용하
I . 개호	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과 활동 ···································	
	Ⅱ. 개화정책의 추진	
 개화정책의 추장 신문명의 도입 	진세력서	영희
2) 청국유학생(약3) 미국시찰단의	파견 ······ 허 영선사)의 파견 ····· 권 파견 ····· 김	석봉 원모
	Ⅲ. 위정척사운동	
2. 위정척사운동의	대두이 전개문. 영향과 의의이	소정

IV.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1.	임오군란	······ 조성윤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ㆍ청관계의	변질 구선희

V. 갑신정변

1.	갑신정변의	배경	윤병희
2.	갑신정변의	주도세력	윤병희
3.	갑신정변의	전개	신용하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신용하

한 국 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

1999년 12월 15일 인쇄 1999년 12월 20일 발행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값 7,600 원